議　政　報　告

第1代 議會 閉院에 즈음하여



石 鎭 厚 議長

親愛하는 12萬 郡民 여러분!

그리고 本郡 議會發展과 眞情한 地方自治 實現을 爲하여 많은 關心과 聲援를 보내 주신 各級 機關團體長님과 貴賓여러분!

온 國民의 關心과 期待속에 民意의 殿堂인 基礎議會가 地方自治時代의 序幕을 열고 出帆한지 어언 4年이 지나 오늘 뜻깊은 閉院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眞實로 郡民의 福利增進과 우리郡 地域發展을 爲해 全心全力을 기울이면서 郡民여러분의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默過하지 않고 이를 解決하기 爲하여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4年이란 歲月이 흘러 第1代議會가 오늘로써 幕을 내리는 閉院式을 가지게 되어 그 感懷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지난 4年의 議政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憲政史에 中斷되었던 地方自治制度가 온 國民의 期待속에서 30年만에 復活되어 우리 政治史에 새로운 章을 열고, 民意의 殿堂인 基礎議會가 全國的으로 그 門을 활짝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地方行政은 中央에 依存하고 隷屬되어 硬直된 官僚形態와 劃一的인 中央指示에 의하여 民意 보다는 統治慣行속에서 能率과 全國的 總量的 成果만을 重視하고 中央의 判斷과 決定에 服從함은 勿論, 批判이 省略되고 參與가 斷絶됨으로써 眞情한 自治機能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事實입니다.

이러한 權威主義와 中央執權的인 政治文化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는 完全히 벗어나야 할 時期입니다.

그 地方의 特殊性을 살려 住民의 要求에 바탕을 둔 事業을 計劃하고 地域의 具體的 實情에 適應되는 行政을 펴 나감으로써 地方이 자기 스스로 判斷하고, 決定하고, 處理하는 自主性과 獨創性을 가질때 비로소 眞情한 地方自治가 可能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郡議會는 眞情한 住民의 代辯者요, 代議 議決機關으로서 郡民의 期待에 副應하는 議政活動을 펼치기 爲하여 無限히 努力하였습니다.

不毛地와 다름없던 自治環境속에서 先例도 經驗도 없었고, 專門知識도 不足하여 開院 初期의 心情은 그야말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地域發展과 郡民의 眞情한 欲求를 充足시키기 爲한 一念 하나만으로 늘 工夫하고, 硏究하고, 苦惱하면서 郡民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呼吸을 같이 하면서 輿論을 收斂하고 隘路·不便事項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이를 모두 郡政에 反映시키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結果, 矛盾속에서 굴러온 地方自治가 本來의 모습을 되찾기 始作했고, 住民不滿이 조금씩 解消되면서 조금은 無關心했던 地域住民들도 소리없이 그 熱氣가 달아 오르기 始作했습니다.

議會를 中心으로 智慧을 모으고 地域問題를 解決하는 主人意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地方議會 議員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報告에 앞서, 지난 4年間 오로지 地域發展과 郡民福利增進을 爲하여 心血을 기울였던 事項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上水道 汚染事件 發生時 즉각 行政事務調査權을 發動하여 原因을 徹底히 糾明하

고, 大邱市 上水道를 早期 供給토록 促求하는 建議, 本郡 面積의 45%가 開發制限區域으로 묶여 있어 該當住民이 莫大한 被害를 보고 있어 開發制限區域의 管理費負擔改善 建議, 行政區域 統合促求 決議, 學群制 廢止要求 決議, 開發負擔金制度改善 建議 等 住民生活과 密接한 모든 部分에 對하여 그들의 隘路·不便·被害事項을 早速히 看破하여, 決議 또는 建議案이 議員 滿場一致로 採擇되어 該當中央部處에 까지 날카로운 質責과 應分의 要求를 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要求 또는 建議가 大部分 受容되어 貫徹될 때, 우리 議員 모두는 더없이 큰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中央執權에서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官僚主義, 法令이나 制度上의 制約, 地方財政의 限界 等으로 郡民의 完全한 欲求를 充足시키기엔 未洽한 部分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難關에 逢着하였을때 우리 議員 모두는 아픔을 같이하고 이를 조금이라고 解決하기 위하여 焦心苦慮 努力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4年間 저희 初代議會의 主要議政活動實績을 時間 關係上 槪略的으로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郡議會는 開院이래 마흔여섯차례의 臨時會와 定期會를 열어 모두 287件의 案件을 處理하였습니다.

이러한 會期는 法定會期 日數를 最大한 活用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會議를 召集하여 議會 運營의 繼續性을 維持하고 迅速한 議案處理로 郡政推進에 圓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處理한 議案을 內容別로 말씀드리면, 條例案이 137件으로 가장 많고 豫算 決算

案 20件, 決議·建議案 採擇 16件, 請願 5件, 郡政報告 聽取 14回, 都市計劃案 12件,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 5回, 其他 一般案件 72件, 郡政質問 여섯차례 等 모두 287件을 處理하여 한 會期當 平均 6件의 案件을 處理하였습니다.

그리고 會期 外의 院外議政活動으로 本郡議會는 議員定數가 10名으로, 地方自治法上 議員定數가 13名以上일때 設置할 수 있도록 規定하는 常任委員會를 둘 수가 없어 이를 補完하기 爲하여 每週 金曜日마다 議政懇談會를 開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郡政主要業務를 協議하고 議案의 事前檢討와 審査, 會期運營事項 協議, 그리고 關聯機關과의 事前 意見 交涉 等 多樣하고 폭넓은 議政活動의 場으로 活用하였습니다.

이러한 議政懇談會를 모두 158차례 開催하여 郡民의 福利增進과 地域發展 方案을 多角度로 摸索하였습니다.

議政活動 期間中 處理한 重要事項은 무엇보다 豫算案 議決일 것입니다.

劣惡한 地方財政 與件속에서 行政能率을 沮害하지 않도록 하면서 郡民의 피와 땀으로 꾸려진 財政을 審議·議決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限定된 財源을 우리郡 實情에 맞게 效率的으로 調整하여 投資效果를 높이는 한편, 不要不急한 事業은 뒤로 미루고 地域間의 不均衡이 있는 偏重된 事業은 고르게 나눔으로써 均衡있는 地域開發을 圖謀하고 福祉·社會·文化·産業·環境·建設 等 郡政 全分野에 골고루 投資가 되도록 하여 調和있는 地域社會發展을 誘導하였습니다.

한편, 浪費的 性格을 띤 施策推進費, 一過性 消耗經費 等은 果敢히 削減措置하여 執行部로 하여금 알뜰한 財政을 運營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議會가 通過시킨 豫算을 올바르게 執行하였는지를 事後에 確認하고 執行의 責任을 묻는 決算承認 過程에서는 細密한 檢査를 通하여 違法·不當하게 豫算을 執行한 關係公務員에 對하여 問責을 要求하는 한편, 此後 이와같은 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이를 是正토록 要求함으로써 合理性에 바탕을 둔 健全한 財政이 運營되도록 하였습니다.

議會의 權限中 豫算案 다음으로 自治立法인 條例의 制定 및 改正·廢止過程에서는, 住民利害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條例는 平素 폭넓게 收斂한 住民意見을 基礎로 하여 郡民에게 實質的인 受惠가 가도록 議決을 留保시키고 修正案을 再審議 上程하여 處理하는 한편, 上水道料金, 廢棄物 收去手數料의 引上으로 郡民에게 直接 負擔이 되는 條例案의 審議時에는 恪別한 關心과 細心한 注意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地域開發 促進을 위한 宅地開發豫定地區 指定案, 地域發展의 特定事項인 都市計劃案 處理時에는 地域發展에 큰 影響을 미치는 重要案件인 만큼, 充分한 期間을 두고 수차례 現場을 踏査하여 地域 特性과 土地利用度, 將來 地域發展에 미치는 影響 等 妥當性 調査는 勿論, 理解 關係人의 意見을 폭넓게 收斂하는 等 案件審議에 心血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國家가 執行한 事項에 對하여, 國民이 被害를 보게될 境遇 議會에 救濟를 要請하는 制度인 請願도 開發制限區域 規制緩和 등 5件이 接受되어 議會에서도 깊은 關心을 가지고 關係部處에 建議와 改善을 要求하는 等 問題解決에 積極 努力해 왔습니다.

또한, 議會의 議事를 對外的으로 標榜하기 爲하여 쌀輸入 開放反對決議, 學群制廢止要求 決議案 等을 議員 滿場一致로 採擇하여 中央政府에 强力히 促求·建議함으로써 住民權益保護를 爲한 對辯者 役割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每年 定期會 期間中에 實施하는 네차례의 行政事務監査時에는 보다 冷徹

하고 透明한 視覺으로 細密한 監査를 實施하여 違法不當한 事項을 指摘, 이를 是正토록 要求함으로써 行政의 여러부분에서 잘못된 점은 고쳐지고 不合理한 점은 改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郡政을 詳細히 把握하기 爲한 郡政報告를 年初·年中·年末 이렇게 세번에 걸쳐 聽取하여 圓滑한 議政活動을 爲한 基礎資料確保는 勿論, 行政의 牽制·監視라는 議會의 本質的 機能 遂行에도 萬全을 기하였습니다.

郡政全般에 對하여 執行部의 所信이나 見解를 묻는 郡政質問도 깊이 있고 폭넓게 펼침으로써 郡民들의 알權利를 獲得하는 한편, 未洽한 部分에 對하여는 質責을 가하고 올바른 郡政方向을 提示함으로써 郡民을 爲한 行政이 推進되도록 努力하였습니다.

院外 議定活動事項으로써는 事業場 現地確認, 住民意見收斂 및 苦衷處理, 邑面訪問, 議員研修, 不遇施設慰問, 他機關과의 交涉, 各種資料 및 情報蒐集 等 발로 뛰는 議政活動을 펼쳤습니다.

住民의 利害와 直結되는 案件審議時에는 반드시 現地確認을 實施하였으며, 主要事業場에 對하여는 着工段階와 完工狀態를 直接 確認하였습니다.

議會는 住民을 代表하는 議決機關으로서 住民이 主人이 되는 점을 恒常 念頭에 두고 里長 또는 住民 建議·要求事項을 收斂하여 議案審議時 重要資料로 活用하였습니다.

또한, 每年 年初에는 邑面을 訪問, 各界各層의 地域指導層 人士를 招請하여 主要懸案事項을 論議하는 한편, 建議事項을 收斂하여 時急하고 당장 解決이 可能한 事項은 모두 解決하였으며, 大部分의 建議도 執行部와 協議하여, 年次的으로 解決하였습니다.

그리고, 郡單位 面邑單位의 크고 작은 行事에도 全議員이 빠짐없이 參席하여 郡民과 얼굴을 맞대며 住民과 더욱 가까운 議會가 될 수 있도록 住民 本位의 議政活動에도 注力하였습니다.

또한, 年末이나 名節뿐만 아니라 隨時로 養老院, 敬老堂, 不遇零細民을 찾아 疎外되고 苦痛받는 그들에게 따뜻한 情을 나누며 勇氣를 북돋아 주는데도 疏忽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第1代 議會는 劣惡하고 어려운 諸般與件과 風土속에서 議員 모두가 더 工夫하고, 專門知識을 넓혀 住民을 爲한 議政이 되도록 獻身·努力해 왔다고 自負합니다.

4年前 荒蕪地나 다름없던 地方自治가 郡民과 議會가 한마음이 되어 밭을 갈고 일구는 心情으로 함께 努力해 왔기에 보다 기름지고 潤澤한 地方自治가 實現되었다고 저는 아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活潑하고 多樣한 議政活動事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時間關係上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以上과 같이 4年동안의 議政活動狀況을 槪略的으로 報告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未洽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第1代 議會가 4年間의 議政을 無事히 마치고 오늘 이처럼 부끄럼없는 報告를 드리게 되어 저를 비롯한 議員 모두는 더없이 큰 榮光과 보람으로 생각하며, 本郡 議會가 全國의 어느 議會보다 앞서가는 模範 議會像을 定立하였다고 自負해 봅니다.

앞으로, 곧 第2代 議會가 開院되겠습니다마는 저희 初代議會가 갈고 닦아온 기

틀을 발판으로 더욱 跳躍하고 發展하는 達城郡議會가 될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機關團體長님과 貴賓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郡民 여러분의 家庭과 職場에 萬福이 充滿하시길 祈願하면서 以上으로 第1代 達城郡議會 閉院式에 따른 議政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995. 6. 30

達城郡議會 議長 石 鎭 厚

報 告 順 序

- 議員 및 議會一般現況
- 議政畫報
- 議政活動實績
- 臨時會・定期會運營狀況
- 行政事務監査・調査
- 決算檢査
- 主要 決議・建議文
- 主要議政活動 日誌

議員 및 議會 一般現況

의 원 현 황

의장 석 진 후

주 소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77번지
생년월일	1928. 3. 4
전 화	629 - 3311



부의장 고 용 덕

주 소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845번지
생년월일	1927. 4. 24
전 화	611 - 9772



의원 이 경 식	
주 소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39-7번지
생년월일	1943. 5. 10
전 화	631 - 8841



의원 서 칠 수	
주 소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376번지
생년월일	1941. 7. 15
전 화	767 - 8871



의원 윤 도 현	
주 소	달성군 다사면 부곡리 585번지
생년월일	1934. 9. 7
전 화	582 - 0205



의원 송 태 환	
주 소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199번지
생년월일	1946. 9. 28
전 화	621 - 5268



의원 김 수 영	
주 소	달성군 현풍면 중리 335-1번지 학산아파트 101동 417호
생년월일	1951. 11. 22
전 화	614 - 2139



의원 이 팔 호	
주 소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891번지
생년월일	1942. 3. 26
전 화	614 - 5065



의원 이 철 웅	
주 소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54-5번지
생년월일	1942. 2. 25
전 화	633-6289

※ '95. 3. 28일자 사직



의원 이 수 환	
주 소	달성군 논공면 삼리리 709번지
생년월일	1931. 6. 19
전 화	611-2837

※ '95. 3. 29일자 사직



議會 一般現況

■ 沿　　革

- ○ 1990. 12. 31　地方自治法 改正 (法律 第4310號)
- ○ 1991. 3. 26　郡議員 選擧 (9個選擧區)
- ○ 1991. 4. 15　第1代 達城郡議會 開院
- ○ 1995. 6. 27　第2代 郡議員 選擧
- ○ 1995. 6. 30　第1代 達城郡議會 閉院

■ 議員現況

- ○ 議員數 : 10名
 - · 選擧區當 2名 : 花園邑(2)
 - · 選擧區當 1名 : 8個面 (8)
- ○ 任期 : 4年('91. 4. 15 ~ '95. 6. 30)
 - ※ 地方自治法 改正으로 77日間 任期 延長
- ○ 議長團

期別	議　長	副 議 長
1期	石　鎭　厚	高　龍　德
2期	石　鎭　厚	高　龍　德

※ 任期延長期間 包含

■ 郡　　勢

- ○ 面　　積 : 427.05㎢
- ○ 人　　口 : 114,689名
- ○ 財政 規模 : 996億원
- ○ 財政自立度 : 45%

■ 議會事務機構

- ○ 11名 (5級 2, 6級 1, 7級 2, 機能6)

■ 議會住所 : 大邱廣域市 南區 大明11洞 1583番地(☎654-0978)

議　政　畫　報



▲ 군의회는 개원이래 46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열어 예산안을 비롯한 총 28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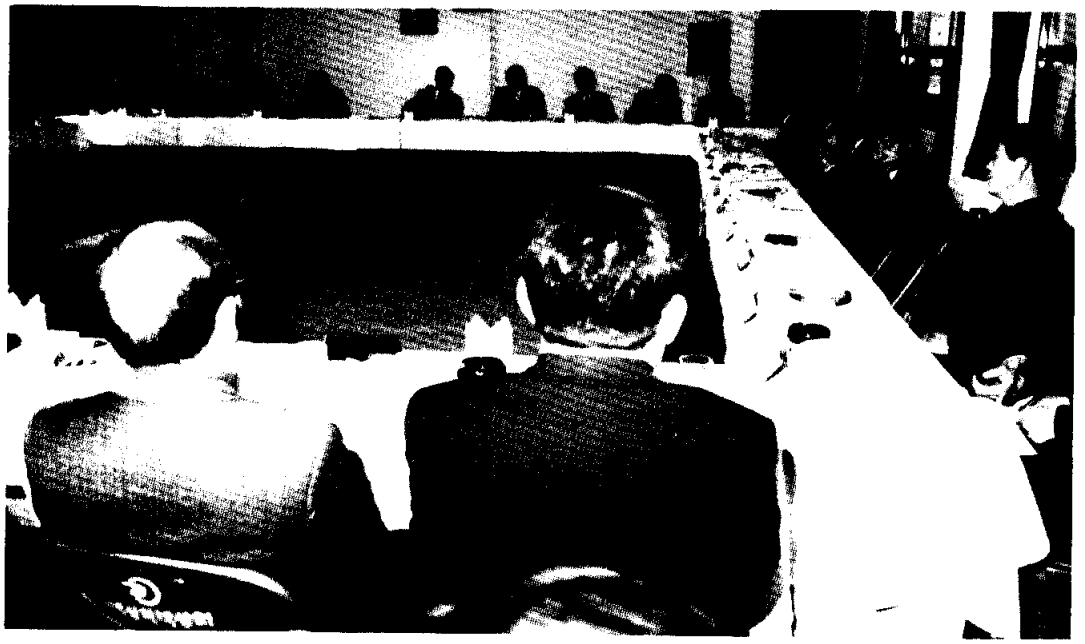
▲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였다.



▲ 매년 군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지도층인사를 초청하여 의정 활동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 집행기관의 소신이나 견해를 묻는 군정질문도 폭넓고 심도있게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획득하였다.



▲ 매년 연초에는 9개 읍면을 방문하여 지역지도층 인사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주민생활속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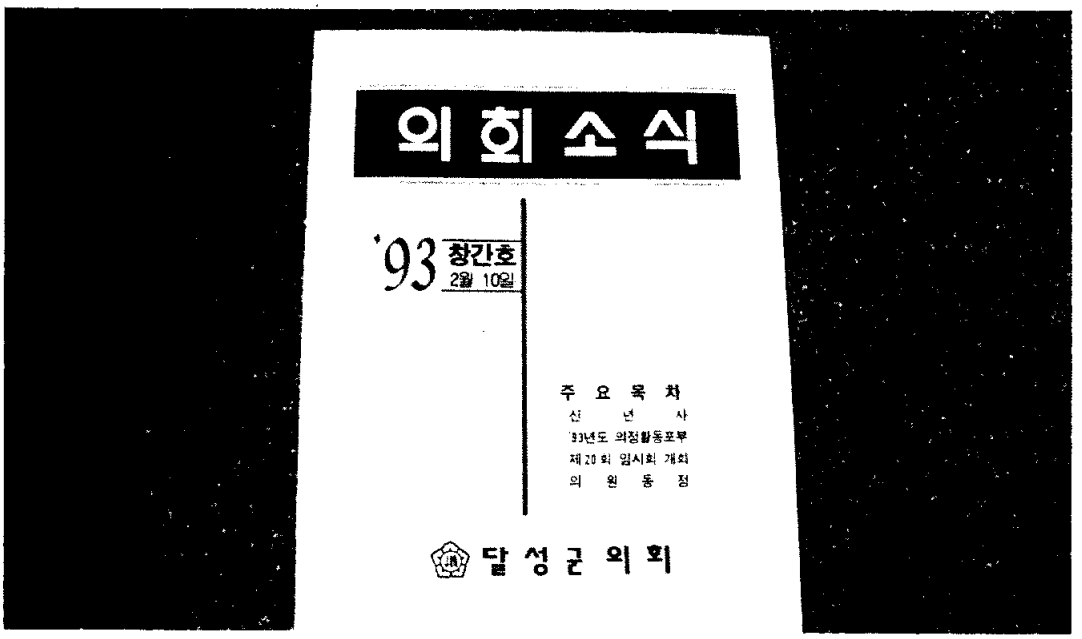
▲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발전시키도록 주력하였다.



▲ 지방재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결산검사도 매년 세밀하게 실시하였다.



▲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각종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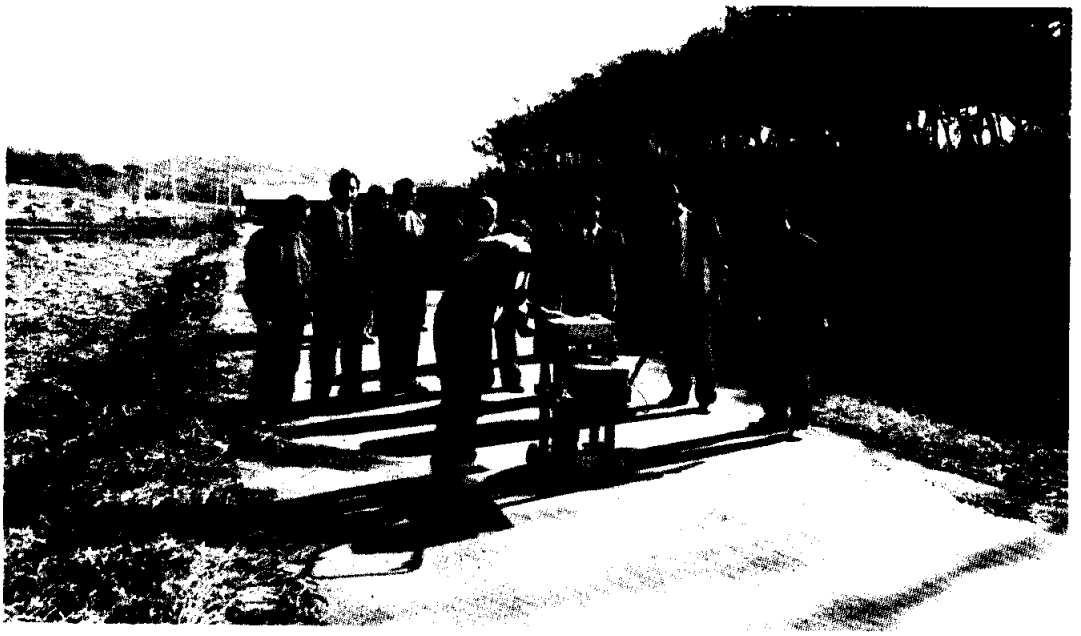
▲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여 리·반장에게까지 배포하였다.



▲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각종 세미나, 연찬회 등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본군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광역시 편입이 주민투표, 의회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95년 3월 1일자로 이루어졌다.

議政活動實績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상황

회기별		기간	회기 일수	본회의 일수	처리안건												
					계	예산 결산	조례			동의안	결의안	청원	군정 질문	보고 청취	도시계획안	감사·조사	일반안기타
							제정	개정	폐지								
합계		46회	279	119	287	20	31	86	20	6	10	5	6	14	12	5	72
91	소계	7회	58	27	49	4	4	15	1	2		1	3	2	3	1	13
	제 1회임시회	4.15~ 4.16	2	2	1									1			
	제 2회 〃	5.29~ 5.30	2	2	6								1	1	1		3
	제 3회 〃	7.19~ 7.23	5	3	9			2		1			1		1		4
	제 4회 〃	10. 2~10. 8	7	5	6		1	3					1				1
	제 5회 〃	10.29~11. 5	8	3	2	1											1
	제 6회 〃	11.18~11.22	5	3	2												2
	제 7회정기회	12. 2~12.30	29	9	23	3	3	10	1	1		1			1	1	2
92	소계	12회	60	28	71	5	6	15	4	3	2	2		4	6	1	23
	제 8회임시회	1.22~ 1.24	3	3	5		2	1						1			1
	제 9회 〃	2.21~ 2.22	2	2	6			3		2							1
	제10회 〃	4.13~ 4.13	1	1	1						1						
	제11회 〃	4.15~ 4.16	2	2	11		1	3	2								5
	제12회 〃	5.19~ 5.19	1	1	5				1						3		1
	제13회 〃	5.27~ 5.29	3	3	2									1			1
	제14회 〃	7. 9~ 7.14	6	3	6	1						1		1			3
	제15회 〃	8.28~ 8.29	2	2	4		1	1							1		1
	제16회 〃	9.25~ 9.26	2	2	6		1	4							1		
	제17회 〃	11. 2~11. 6	5	2	7	1	1	1				1			1		2
	제18회 〃	11.19~11.21	3	1	1												1
	제19회정기회	11.25~12.24	30	6	17	3		2	1	1	1			1		1	7
93	소계	11회	60	24	56	4	4	20	3	1	3	2	1	4	2	1	11
	제20회임시회	1.28~ 1.30	3	3	1									1			
	제21회 〃	2.16~ 2.18	3	1	1												1
	제22회 〃	3. 6~ 3. 6	1	1	1												1
	제23회 〃	4. 1~ 4. 2	2	2	4			3									1
	제24회 〃	5.17~ 5.19	3	2	12		2	4	1		1	2			2		
	제25회 〃	7. 2~ 7. 5	4	2	5	1		4									
	제26회 〃	8.10~ 8.11	2	2	4		1		1								2
	제27회 〃	9. 7~ 9.10	4	2	2			1						1			
	제28회 〃	10.25~10.28	4	2	7			3	1				1	1			1
	제29회 〃	11.16~11.19	4	2	5	1	1	1		1							1
	제30회정기회	11.25~12.24	30	5	14	2		4			2			1		1	4
94	소계	10회	80	30	67	6	14	17	1		3		1	3	1	2	19
	제31회임시회	1.10~ 1.12	3	2	5						1					1	3
	제32회 〃	2.23~ 2.26	4	3	4			3						1			
	제33회 〃	3. 2~ 3. 4	3	1	1												1
	제34회 〃	4.12~ 4.16	5	2	3		1								1		1
	제35회 〃	5.24~ 5.28	5	3	9		1	3	1		2						2
	제36회 〃	6.30~ 7. 6	7	3	7	1	2	2									2
	제37회 〃	9. 2~ 9.10	9	6	14	1	2	5					1	1			4
	제38회 〃	10.12~10.17	6	3	6	2	1	1									2
	제39회 〃	11.15~11.17	3	2	5		1	3									1
	제40회정기회	11.25~12.29	35	5	13	2	6	3						1		1	3
95	소계	6회	21	10	44	1	3	19	11		2		1	1			6
	제41회임시회	1.21~ 1.25	5	1	2									1			1
	제42회 〃	2.23~ 2.27	5	2	26		3	11	11		1						
	제43회 〃	3.27~ 3.27	1	1	1												1
	제44회 〃	4.10~ 4.15	6	3	9	1		3			1		1				3
	제45회 〃	5.29~ 5.31	3	2	5			5									
	제46회 〃	6.30~ 6.30	1	1	1												1

□ 會 期 運 營

區 分	會 期 回 數	會 議 日 數
計	46	279
臨 時 會	42	155
定 期 會	4	124

□ 議政懇談會 運營

- 回數 : 158回 (每週 金曜日)
- 主要處理內容

件 名	協議 및 處理件數	備 考
計	523件	
開發制限區域 規制緩和 交涉	26	
上水原汚染事故 發生經緯	4	
學群調整問題 對策 協議	11	
버스路線調整 및 增車	19	
大邱市 嫌惡施設 管內移轉 沮止	4	
가뭄對策 協議	7	
琴湖江汚染에 따른 上水道 水質改善	14	
坊川里 大邱쓰레기 處理場 對策	18	
決議·建議案 回示에 따른 對策 協議	16	
都市計劃案 意見調整	26	
農政施策 推進協議	18	
議案 事前檢討	261	
臨時會(定期會) 運營協議	45	
其他 主要郡政協議	54	

□ 宿願事業解決

- ◦ '91年 : 81件 72億원
- ◦ '92年 : 97件 102億원
- ◦ '93年 : 148件 87億원
- ◦ '94年 : 61件 57億원
- ◦ '95年 : 528件 361億원

※ '95年은 豫算에 反映된 事業

□ 住民建議事項 解決

年度別	件數	措置結果(計劃)			
		豫算措置	郡政反映	是正改善	處理不可
計	641	249	187	113	92
'91	87	28	35	10	14
'92	104	34	31	19	20
'93	93	33	34	12	14
'94	170	69	39	34	28
'95	187	85	48	38	16

□ 現 地 確 認

○ 主要事業場	198件
○ 都市計劃案, 請願現場踏査	25件
○ 現場確認이 必要한 案件審査	54件
○ 行政事務監査, 調査	8件
○ 水害被害視察, 其他	21件

□ 各種行事參席

○ 紀念式	78回
○ 起工·竣工式	21回
○ 體育大會·忠孝祭	6回
○ 慶祝行事	49回
○ 有關機關行事·其他	21回

□ 民願事項處理

○ 陳情, 建議, 歎願書	44件
○ 一般民願	136件

□ 其他 議政活動

○ 邑面訪問	4回
○ 議員研修, 세미나 參席	11回
○ 不遇施設 慰問	18回
○ 資料, 情報 蒐集	3,140回

臨時會・定期會運營狀況

임시회 및 정기회운영상황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1 회 임 시 회 '91. 4. 15~16 (2일간)	제 1 차 4. 15 (월)	1. 의장, 부의장 선거 2. 개원식	의 장 석진후 부의장 고용덕 당선 의원선서및개원행사
	제 2 차 4. 16 (화)	1. 군정보고 - 보고자 : 각실과소장(18)	보고청취 및 질의
제 2 회 임 시 회 '91. 5. 29~30 (2일간)	제 1 차 5. 29 (수)	1. 논공도시계획안 -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이경식, 이수환, 김수영, 고용덕, 서칠수, 이팔호) - 총 9㎢(280만평) 2.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안 - 달성지방공단내 - 부지 500평, 건평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총 소요액 : 10억 140만원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92~'96년 재정계획 - 상수도 및 농공지구조성 지방채 발행 - 보고자 : 기획실장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 보완조건으로 찬성 의견채택 가 결 보고청취 및 질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선 임 (고용덕 의원 정우석, 이재명)
	제 2 차 5. 30 (목)	1. 군정질문(25건) □ **고용덕 의원(유가면)** ○ 우리군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군정의 기본 방침은? 구지쌍용자동차 공장과 위천공단 등 많은 공장이 유치되면 멀지않은 장래에 공업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 있는데, '91년도 군정방침에 전원도시의 완벽한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전원 도시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군수 답변
		○ 유가사 주차장부지가 사찰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바 주차료는 사찰측이 징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사개요 및 주차료 징수 경위는?	지역경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김수영 의원(현풍면)**	
		○ '90년도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당해 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착공된 이유와, 도지사 연두순시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의회청사는 건평 300평 규모로 5월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군의회용으로는 160평 미만이 되며 그것도 7월말이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부군수 답변
		○ 금년들어 인사문제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상당한 물의가 야기되었는데, 이 문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소신은?	부군수 답변
		○ 현풍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상리와 천남지	도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역의 불균형개발과 관련하여, 현풍소재지에 200세대 약 200필지가 국공유지불하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국공유지 불하계획은? 또 은닉된 재산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는지?	
		□ **이경식 의원(화원면)**	
		○ 군청마당 주차장이 복잡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또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화원면에서 하므로 등록업무자체를 화원면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재 무 과 장 지역경제과장 내무과장 답변
		○ 화원면 민원실이 민원공무원의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 답변
		□ **송태환 의원(하빈면)**	
		○ '91년도 부터 현재까지 비위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그 조치결과는?	내무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또 비위공무원 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직소민원실은 운영요령과 개설후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실정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 본군은 대구시에 인접하고 있어 주거지역내 많은 공장이 산재되어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영세업자의 대부분은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허가, 허가의 차이는 무엇이며 영세업자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상부지시에 의한 지원에만 급급하여 무절제하게 보상금을 지원하	기획실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보조금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금년도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상황은?	
		○ 개발제한구역에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와 농촌간 격차 해소와 평등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정책건의할 용의는?	도시과장 답변
		□ 이팔호 의원(구지면)	
		○ 구지공단을 비롯해서 쌍용자동차공장 유치계획으로 온 면민의 가슴이 부풀어 있는 이때에 대구애락보건병원이 수리리로 이전될 움직임이 날로 가시화 되고 있는데 대하여 온면이 결사반대하고 있으므로 그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은?	사회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경영수익사업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사연두순시시 주요업무보고에 자립재정확충 방안으로 경영수익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의 실용성과 기대효과는?	건설과장 답변
		○ 농정의 기초에 활용되고 있는 농산물 통계수치는 어떤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마늘, 양파와 같이 일시적인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되어 생산비마저 충당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효성 있는 농산물유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산업과장 답변
		○ 구지면 수리지구 경지정리사업 배수로가 당초경지정리 용수로에 접해 폭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또 공사진도가 부진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건설과장 답변
		□ **서칠수 의원(가창면)**	
		○ 비슬산 군립공원은 수년전에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것으	도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로써 그간 뚜렷한 진척이 없는 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추진 상황은?	
		○ 삼산채석장 재허가 문제는 인근 주민의 결사반대로 불허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후 경북실업측이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양인데 그 내용과 패소시 재허가로 주민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은?	산림과장 답변
		○ 가창댐 공사시에 대구시에서 수몰지역은 보상하였으나 댐 상류지역은 한푼의 보상없이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은 알고 있는지? 또 지금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구실로 재산상 불이익과 사생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댐 상류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구시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이철웅 의원(화원면)**	
		○ 각면당 3천만원씩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는데 배정이 통제되어 우수기전에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또 주민숙원사업비는 면장의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재량대로 할 수 있는지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지?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균일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은?	기획실장 답변
		○ 군내에 몇개면이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 전체면적의 몇%에 해당되는지?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지정 고시 함에 있어 본군과 사전협의를 하는지 또 주민의사를 사전타진, 협의하는지와 본군에서는 대구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지 있다면 위원회의 참석후 사후처리는 어	도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떻게 하는지?	
		○ 본군의 농업진흥지역지정과 비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한 견해와 그 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며 조사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산업과장 답변
		□ **이수환 의원(논공면)**	
		○ 논공면 위천지구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또 공해업체인 염색공장이 30개업체나 유치된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인지?	도시과장 답변
		○ 논공면 남·북리에 도시계획이 변경확정된후 일부시행중 중단된 상태이므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인 도로변 상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킬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 답변
		○ 금년도 세수목표가 작년 징수실적보다 현격히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면별 과년	재무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도 세수목표실적과 금년도 세수목표 과소책정으로 인한 군정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제 3 회 임 시 회 '91. 7. 19~23 (5일간)	제 1 차 7. 19 (금)	1.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장학금 지급범위확대 : 리장수의 10% → 15%	가 결
		2.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 불균일과세대상폭 확대	〃
		3. 논공면 행정구역조정안 - 남리, 북리 경계 및 반조정	〃
		4. 과대면 읍승격 의견채택의건 - 화원면 → 읍승격	찬성의견 채택
		5. 대구도시계획의견채택의건 - 강창지역에서 다사수원지간 도로 일직선 변경(국도 30호선) - 강정공업용 정수장 신설 - 대명천유수지 신설	의견채택 유보
	제 2 차 7. 22 (월)	1. 군정질문(11건) □ **이철웅 의원(화원면)** ○ 면장 재량사업비는 면장재량	부군수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으로 시기적절하게 면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면장 재량사업비를 통제하여 군이 일괄 집행한 이유는?	
		○ 인구 2만이 넘는 화원면에 쓰레기 차가 1대로서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하여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경미화에 문제가 많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바 긴급한 조치상황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대구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 다사면 방천리 일대에 18만평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 매립중인데 이로인한 상대적인 재산상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이경식 의원(화원면)**	
		○ 폐기차량관리에 대하여 군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군 전체에 버려진 폐차가 얼마나 되는지? 또 관내 폐차장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 현행 아파트 분양조건을 대폭 수정하여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기 완공된 아파트는 물론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중이며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도시과장 답변
		□ **김수영 의원(현풍면)**	
		○ 골재채취장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청원경찰 한사람만 배치해 놓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저의는 무엇이며, 본군에서 직영하고있는 모든 골재채취장에 대해 일일 판매량과 골재판매 대금으로	건설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얻어진 수익금의 사용처리 방법과 향후 골재채취장에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 **이팔호 의원(구지면)**	
		○ 구마고속도로 지하통로는 구지면 고봉지역에 3개가 있으나, 높이가 낮아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으며 평면교차로에서는 이 고속도로 개통이후 무려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무책임한 도로행정에 주민들의 원성과 질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답변
		○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앞두고 학업을 핑계로 일과 시간에도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몇달간씩의 공석으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며 특히 야간에는 근무조차 하지않는다는 바 공중보건의 복무규정과 기강확립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보건소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송태환 의원(하빈면)**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대구시와 협의하여 우리군의 그린벨트 관리비를 대구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피해주민의 보상까지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상부의 정책건의 용의는?	도시과장 답변
		□ **이수환 의원(논공면)** ○ 매년 일어나는 이농현상으로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하여 영농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소비성향이 높아져 농가부채가 매년 늘어가고 있으므로 농가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매하려고 하나 농지매매증명 발급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선량하고 순수한 농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므로 현행 규제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도시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서칠수 의원(가창면)** ○ 각종 여름철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군에서 실시중인 방역소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역기간 중 소요되는 인력장비 약품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예방접종은 적기에 접종이 가능한지?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점 및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은? 2. 면장재량사업비환원권고동의안 - 군에서 집행한 면장재량사업비 면에 환원권고	보건소장 답변 가 결
	제 3 차 7. 23 (화)	1.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 김영환, 박인수, 서창수, 이원재, 최언호, 하구룡, 황국호	선출 : 2명 (서창수, 하구룡)
제 4 회 임 시 회 '91. 10. 2~8 (7일간)	제 1 차 10. 2 (수)	1.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10. 4 (금)	1. 군정질문(11건) □ **이경식 의원(화원면)** ○ 제2회, 3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① 군청전정 자동차 주차난 해소방안 ② 직소민원실 운영실태 ③ 삼산채석장 재허가 관계 ④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 ⑤ 가창댐 상류지역 주민피해 보상대책 ⑥ 면장재량사업비 집행관계 ⑦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원인자 부담 관계 ⑧ 폐기차량 처리문제 ⑨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군수 답변
		○ 본군에서는 현재 모든 재세공과금을 농협에만 치중하여 취급토록하고 있는데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새마을금고나 항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 답변
		○ 지난 태풍으로 인한 재해시 수해 의연금 기탁에 관하여 신문	사회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의 성금기탁자 내용을 보면 달성군수 명의로 1,000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성금기탁한 것인지, 의연금 전달을 특정 시군으로 지정 명시하여 전달한 이유는?	
		□ **서칠수 의원(가창면)**	
		○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있어 형식적인 잦은 행사에 무리한 인원 동원과 각종 홍보물 과다제작으로 주민들로 부터 예산낭비라는 호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위하여 그간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무과장 답변
		○ 가정의례준칙실천을 위한 본군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한 의지는 어떠한지?	가정복지과장 답변
		□ **이팔호 의원(구지면)**	
		○ 도시과 수도계와 수도사업소의 행정추진이 이원화되어 있	내무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으므로 행정능률화를 위해 두 부서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본군의 견해는?	
		○ 구지면 상수도 오염실태를 비롯하여 관내의 전 상수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은?	도시과장 답변
		○ 어린이집은 현재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마을회의 등 모임에 지장이 많으므로 시장부지 등 군부지를 물색하여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어린이집에 대한 실정과 대책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답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다사, 화원면의 급수탑설치와 다사, 논공면의 소방차 구입계획은? 특히 본군은 달성지방공단을 비롯해서 화원면의 도시화, 현풍공단 그리고 구지공단 설치계획 등으로 소방대상물이 급증하고 있는바, 현재의 소	민방위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방체제로는 도저히 화재방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군에서도 독자적인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 군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를 어떤방법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지적공사는 지금까지 민원사항이 없는지? 있었다면 어떤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과장 답변
		○ 다사면 서재리 소재 채석장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원상회복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현재 관내 채석장 허가를 해준 곳이 몇 곳이며 문제점이 계속 될 소지는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시과장 답변
	제 3 차 10. 5 (토)	1. 군정질문(12건) □ **송태환 의원(하빈면)**	
		○ 반상회를 관이 개입하지 않고	내무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알차게 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없는지? 매월 열리는 반상회를 주민스스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 우리군은 언제부터 대구도시계획권에 흡수되었으며 흡수되어야 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대구도시계획에만 종속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차제에 용역을 외뢰하던가 달성군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 답변
		○ 현재 설치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떠한 위원회가 있는지 또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이 극히 미미한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내무과장 답변
		□ **김수영 의원(현풍면)**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인 수박, 방울토마토, 양파, 마늘, 무공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해 쌀 등에 대하여 경제작물 지역 특화 상품성 향상에 주력하고 농산물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현풍시장 등 공설시장의 근대화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과 입주자격 요건은? 또 관내 옥포, 구지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과 가동현황 및 노동력부족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 **이철웅 의원(화원면)**	
		○ 화원유원지 도로확장이 '93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화원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도로까지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도로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 답변
		○ 관내의 낙동강 연안제방 밖의	부군수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개인사유지의 전답을 하천으로 취급해서 강제매수 국유지화하고 있다는데 그 법적근거와 화원면 구라리 지역의 토지보상가 책정방법과 그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 본군 관내 낙동강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낙동강 연안에 축조한 제방의 축조년도와 그 실태는? 또 각 제방마다 양수장과 배수장 시설이 현대식으로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제방의 높이와 낙동강물의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수용능력은? 현 제방의 대대적인 제방확장 돋우기 계획은?	부군수 답변
		□ **고용덕 의원(유가면)**	
		○ '90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방안과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재무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91년 1회 추경예산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가 16%, 세외수입 48%로 총액규모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3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더 합리적으로 과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세외수입금의 미수납금액은 '90년도말과 '91년도 9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 '91년 1회 추경시 당초예산의 12%인 56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추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정보비, 판공비를 1억2백만원이나 경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정보비, 판공비를 항목별 각각 얼마나 편성하였는지?	
	제 4 차 10. 7 (월)	1. 군정질문(3건) □ **이수환 의원(논공면)** ○ 고령군에서 현재 관리중인 논공면 위천앞 골재채취장이 골재운반차량의 과속질주로 인	부군수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한 사고위험, 분진, 소음 등 환경공해가 심할 뿐 아니라 농로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령군과 관할권을 명백히 함은 물론 본군의 피해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 논공면 노이리 산 224번지 임야 11,520평을 '76년 구마고속도로에 편입된 옥포면 교항리 일대의 무연분묘 1,000여기를 집단이장 시키기 위하여 305백만원에 매입한후 등기등록 등 공공재산으로서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답변
		□ **이철웅 의원(화원면)**	
		○ 지난 5월 안동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도민체전에 달성군에	새마을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서 35백만원의 군비를 군체육회에 지원하였는데 그 추진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본군에서는 도민체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많은데 내고장의 명예와 달성군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떳떳한 달성군민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제 5 차 10. 8 (화)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리장정수 179명(중6) - 논공면 남2리 → 남2, 3, 4, 5리로 분리 - 논공면 북리 → 북 1, 2, 3, 4리로 분리 2.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반설치수 : 814개반 → 851개반(중37) - 논공면 남리, 북리 분리로 인한 반 증가 3.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가 결 〃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의료보호법개정으로 시군구에 도 위원회 설치	
		4. 달성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회기능에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추가	가 결
		5. 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공원등급분류기준 : 삭제 - 공원입장료 인상 (대인1인 기준 400 → 900원)	부 결
		6. 대구시도시계획안 (제3회 임시회 의견채택유보안건)	의 견 채 택 · 대구 - 성주간도로 변경건 - 찬성 · 대명천유수지 신설건 ┐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 강정공업용정수장 신설건 ┘ 충족후사업 시행토록 하고 찬성 의견
제 5 회 임 시 회 '91. 10. 29~ 11. 5 (8일간)	제 1 차 10. 29 (화)	1.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추경규모 : 84억2천9백만원 (일반 70억6천4백만원, 특별 13억6천5백만원) - 비 율 : 기정예산 (469억2천9백만원)의 18%증가 - 총예산규모 : 553억5천8백만원	제안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11. 4 (월)	1.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요구 ○ 비목신설 — 9개 ○ 예산증액 — 25,620천원	자치단체장 동의
	제 3 차 11. 5 (화)	1.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수정안 제안(제안자 : 고용덕 의원 외4명) ○ 일반회계 세입 — 원안대로 ○ 일반회계 세출 — 183,148,000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특별회계 — 모두 원안대로	수정안 결의
제 6 회 임 시 회 '91. 11. 18~22 (5일간)	제 1 차 11. 18 (월)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결
	제 2 차 11. 19 (화)	1. 달성제2지방공단지정안 위치 : 논공면 위천리, 상리 일원 면적-공업단지 : 2,980,000㎡ (90만평) -주택단지 : 485,000㎡ (15만평)	현황청취, 질의
	제 3 차 11. 22 (수)	1. 달성제2지방공단지정안	의견채택 유보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7 회 정 기 회 '91. 12. 2~30 (29일간)	제 1 차 12. 2 (월)	1. '92년도 예산안 — 본 예산 ○ 총규모 : 442억8천만원 (일반 326억6천4백만원, 특별 116억1천6백만원) ○ 비 율 : '91당초예산 (412억6천7백만원)의 7.3% 증가 - 수정예산 ○ 총규모 : 505억5천5백만원 (일반 323억6천만원, 특별 181억9천5백만원) ○ 비 율 : '91당초예산 (412억6천7백만원)의 22.5% 증가	제안설명 청취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기 간 : 12. 9~11(3일간) - 대 상 : 군본청, 사업소, 면 - 감사반 : 2개반 8명 (부의장 총괄)	승 인
		3. 행정사무감사관련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업무보고 : 실과소장, 면장 - 자료제출 : 48건 - 공무원출석 : 대상기관 계장급 이상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달성제2지방공단지정안 (제6회 임시회 의견채택 유보 안건)	의 견 채 택 · 공단유치를 원칙적으로 찬성함 · 그러나 수질오염 우려 업종인 염색업 유치는 반대함
	제 2 차 12. 5 (목)	1. '90년도 결산 - 예산액 : 45, 959, 399, 000원 - 결산액 ┌세입 : 42, 122, 778, 247원 (예산대 91.6%) └세출 : 33, 572, 389, 134원 (예산대 73%)	결산안 질의
	제 3 차 12. 6 (금)	1. '90년도 결산 2.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동의안(발의 : 고용덕 의원) - 5개분야 11명	승 인 가 결
	제 4 차 12. 9 (월)	1. 행정사무감사 - 9개 실과소 26개분야	감 사 실 시
	제 5 차 12.10 (화)	1. 행정사무감사 - 9개 실과소 22개분야	감 사 실 시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6 차 12. 11 (수)	1. 행정사무감사 - 최종 종합감사	18개 실과소 48개분야 84건 감사
	제 7 차 12. 19 (금)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감사결과보고 : 서칠수 의원 - 시정요구 : 9건 - 처리요구 : 4건	채 택
	제 8 차 12. 24 (화)	1.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양여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가 결
		2.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 과세면제조례안 - 학교법인의 실습용 중기, 항공기 면제	〃
		3. 향교재단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안 - 향교소유농지에 1/1,000 세율 적용	〃
		4.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 중개정조례안 - 자동차세면제 조항 추가	〃
		5. 공공용지편입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불균일과세대상 확대 ○ 지적고시 1년이상된 토지 → 지적고시된 토지 ○ 철도법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추가	
		6. 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명 변경(농외소득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변경) - 새마을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삭제	가 결
		7.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한 사업소세감면조항삭제	〃
		8. 음성나환자소유토지, 건축물에 대한지방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세목 삭제	〃
		9.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세목 삭제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10.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과세면제 대상명칭 변경	가 결
		11.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칙 적용시한 연장 ('92. 12. 31 → 94. 12. 31)	〃
		12.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칙 적용시한 연장 ('92. 12. 31 → 94. 12. 31)	〃
		13.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 존치불필요조례 폐지	〃
		14.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일대개선 청원 - 청 원 인 : 다사 매곡 1,081 김병철 외 3,901명 - 소개의원 : 윤도현 의원	의 견 채 택 ·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규제조항대폭 개선토록 상부건의 조치
		15. '92년도 예산안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수정안 제안 (제안자 : 윤도현 의원 외4) ○ 일반회계 세입 - 원안대로 ○ 일반회계 세출 - 579,788천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 원안대로 ○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 - 2,000천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치수사업특별회계제외한 7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16.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추경규모 : 34억9천7백만원 감액 (일반 9억6백만원 증 특별 44억3백만원 감) - 비 율 : 기정예산 (553억5천8백만원)의 6.3% 감소 - 총예산규모 : 518억6천1백만원	제안설명 청취
	제 9 차 12. 23 (목)	1.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수정안 제안 (제안자 : 이경식 의원 외4) ○ 일반회계 세입 - 원안대로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일반회계 세출 — 222만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2.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 지방세법개정으로 불일치 부분 수정 - 중복규정 및 불필요규정 정비 - 소방공동시설세 도세로 전환 삭제	가 결
		3. 정수물품 취득안 - 총 41개품목 183점 -'91추경분 20개 품목 51점 -'92년도분 31개 품목 132점	〃
제 8 회 임 시 회 '92. 1. 22~24 (3일간)	제 1 차 본회의 1. 22 (수)	1. 화원읍설치 조례안 - '92. 3. 1자 화원읍 승격	가 결
		2.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면제 조례안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군세과세면제	〃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시지가 급등지구에 대한 대부료 경감	〃
		4. 군정보고 - 보고자 각실과소장 - 6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1.23 (목)	1. 군정보고 - 7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제 3 차 본회의 1.24 (금)	1. 군정보고 - 5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제 9 회 임 시 회 '92.2.21~22 (2일간)	제 1 차 본회의 2.21 (금)	1. 군수관·정보비 사용내역 제출 요구 동의안 - 김수영 의원 발의 - 대상기간 : '91.1.1~'92.2.21 - 제출기간 : '92.3.10	가 결
	제 2 차 본회의 2.22 (토)	1. 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 간사 → 사무과장으로 개정 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사무과를 설치 간사 → 사무과장으로 개정 3.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무여행때만 여비지급 → 본회의. 위원회의 출석때도 여비지급	가 결 〃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의회 면방문계획 동의안 — '92.3월중 방문 — 면업무보고 및 지도층의견 수렴	가 결
		5. '90년도 결산검사 결과 관계자 문책 및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요구 동의안 - 발 의 : 이수환 의원 - '90년도 결산검사결과 (5개 분야) -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4개 분야) - 해당 실과소장 설명	설명청취 및 질의
제10회 임 시 회 '92.4.13 (1일간)	제 1 차 본회의 4.13 (월)	1. 의회 전문위원 임명철회 권고안 - 서칠수 의원 발의 - 의회의장과 협의없이 임명한 전문위원 임명철회 권고결의	채 택
제11회 임 시 회 '92.4.15~16 (2일간)	제 1 차 본회의 4.15 (수)	※ 개원1주년 기념행사 - 의정활동보고회 및 다과회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4. 16 (목)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심의	가 결
		2.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검사위원 3명 선임에 지방의원 1명 포함 규정 삭제 - 위원여비 1일 2만원 → 3만원	〃
		3.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면세 및 불균일과세 대상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추가	〃
		4.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회 임시회 부결안) - 공원입장료 인상 개인 어 른 400원 → 900원 개인 어린이 200원 → 500원	〃
		5.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광역자치단체로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군조례 폐지	〃
		6.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광역 자치단체로 소방업무 이관에 따른 군조례 폐지	
		7. 도시계획세부과구역추가고시안 - '92. 12. 18 지적고시된 논공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세부과구역으로 추가	가 결
		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도유폐천부지를 군유재산으로 매입(반송리 916-31 하천 258㎡)	〃
		9. 대구도시계획안 -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의견채택유보
		10. 현풍도시계획안 -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
		11. 대구도시계획안 - 다사 서제리 및 화원 구라리 대구도시계획도로 확장 (35m → 50m)	〃
		12. 의회회의규칙개정안 - 의회간사 → 사무과장	가 결
		13.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 - 의회기, 의원배지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2회 임 시 회 '95. 5. 19 (1일간)	제1차 본회의 5. 19 (월)	1. 대구도시계획안 - 제11회임시회 의견채택 유보건 -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관계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찬성 의견채택
		2. 현풍도시계획안 - 제11회 임시회 의견채택 유보건 -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위와 같음
		3. 대구도시계획안 - 제11회임시회 의견채택 유보건 - 다사 서제리 및 화원 구라리 대구도시계획도로 확장 (35m→50m)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충분한 현시가보상후 사업을 시행토록하는 찬성의견 채택
		4.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 폐지조례안 - 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불균일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불균일과세조례 불필요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5.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 보고서 류 제출요구 동의안 - 윤도현 의원 발의 - 4.30까지의 군정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차기 임시회에서 보고받기 위해 보고서 제출 요구	가 결
제13회 임 시 회 '92.5.27~29 (3일간)	제 1 차 본회의 5.27 (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	가 결
	제 2 차 본회의 5.28 (목)	1. 당면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 - 각실과소장 보고(9)	보고청취 및 질의
	제 3 차 본회의 5.29 (금)	1. 당면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 - 각실과소장 보고(10)	보고청취 및 질의
제14회 임 시 회 '92.7.9~14 (6일간)	제 1 차 본회의 7. 9 (목)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92~'96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 기획실장 보고	보고청취 및 질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추경규모 43억8백만원 - 일반회계 29억8천9백만원 - 특별회계 13억1천9백만원 - 당초예산 505억5천5백만원의 8.5%증가 - 총예산규모 548억6천3백만원	제안설명 청취
	제 2 차 본회의 7. 10 (금)	1. 회기 및 의사일정변경 - 산화발생으로 의사일정 변경 - 회기연장(5일 → 6일)	가 결
	제 3 차 본 회 의 7. 14 (화)	1. 정수물품 취득처분안 - 취득 15개 품목 50점 (1회 추경분) - 처분 19개 품목 88점 (불용품)	가 결
		2. 쇠고기수입쿼타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업체 동결조치 청원 - 청원인 : 논공면 금리3리 685-3 장 태 병 - 소개의원 : 이수환 의원	쇠고기수입쿼타를 금년 수준인 66천톤으로 제한하고 직수입물량 및 업체도 현 수준으로 동결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채택
		3.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수정안 발의 이철웅 의원 외4명 -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 일반회계 세출은 222,410천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4.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매입)안 - 현풍면 하리 66-1 도로 33㎡(소유자 : 조선옥) - 가 격 : 34,650천원 - 현재 현풍파출소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군유지로 매입	가 결
제15회 임 시 회 '92. 8. 28~29 (2일간)	제 1 차 본회의 8. 28 (금)	1. 구지도시계획안 - 구지중상업고등학교 학교시설용지를 42,800㎡에서 28,466㎡로 변경하고 학교측면에 폭8m, 길이 131m의 소로1류10호선 신설	제안설명 청취
	제2차 본회의 8. 29 (토)	1. 구지도시계획안	구지중상업고등학교 학교시설용지 일부를 해제하는 구지도시계획변경안 찬성의견 채택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지급 조례안 - 생보자,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우수자 장학금 지급	가 결
		3.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의 결 유 보 (종교단체 의료업체가 세제혜택을 줄만큼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없음)
		4. 달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 -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면세대상으로 신설	가 결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경식, 윤도현, 이팔호의원 선임
제16회 임 시 회 '92. 9. 25~26 (2일간)	제1차 본회의 9. 25 (금)	1. 달성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제15회 임시회 의결유보 건	의 결 유 보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 의결 후 군세과세면제조례안 의결)
		2.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총 179명 → 188명(증 9) - 화원읍 천내 1리 → 천내 1, 7, 8, 9, 10, 11리 - 화원읍 천내 2리 → 천내 2, 12, 13리 - 현풍면 중 1리 → 중 1, 4리 - 현풍면 부 1리 → 부 1, 4리 3. 달성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총 851반 → 902반(증 51)	원 안 의 결
	제2차 본회의 9. 26 (토)	1. 논공도시계획 변경안 - 국도 5호선 구간 중 논공면 위천 삼거리에서 현풍면 경계사이 굴곡이 심한 도로 직선화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2.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 위치 : 논공면 북리 1-104 - 연건평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 공무원정원 7명 3. 달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종합사회복지관설치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범위 개정	도시계획변경 찬성의견 채택 가 결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달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여비 인상(10%)	가 결
제17회 임 시 회 '92. 11. 2~6 (5일간)	제1차 본회의 11. 2 (월)	1.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추경규모 : 1,224,000천원 - 일반회계 : 1,565,000천원 - 특별회계 : 341,000천원 - 비율 : 기정예산 54,863,000천원의 2.2%증가 - 총 예산규모 56,087,000천원	제안설명 청취
		2. 대구도시계획안 - 신천고속화도로 연장으로 대구시 경계 - 대한중석간 대로 2류 37호선 신설 (폭 30m, 길이 615m)	〃
		3. 달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안 -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 - '93. 1. 1부터 시행	〃
		4. 달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상수도요금 평균 9% 인상	〃
		5. 정수물품취득안 - 2회 추경분 6종 12점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6. 식품위생허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가창면 오리 113 김 장 석 - 가창댐 확장으로 인한 오리 김장석, 박분학에게 식품위생업 허가 부활	취 지 설 명 (서칠수 의원)
	제 2 차 본회의 11.6 (금)	1.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수정안 발의 이수환 의원 외4명 - 일반회계 ○ 세입 : 원안대로 ○ 세출 : 46,000천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수정안 의결
		2. 대구도시계획안	신설되는 대로2류37호선과 지방도 911호선의 접속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대로2류37호선을 가창 삼산리 대구도시계획 구역까지 연장하는 의견 채택
		3. 달성군 수도사업설치 조례안	가 결
		4. 달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5. 정수물품취득안	〃
		6. 식품위생업허가에 관한 청원	가창댐수몰이전부터 식품위생업을 해왔던 오리 김장석과 박분학에게 철저한 공해방지시설을 할것을 조건으로 한 부관부 영업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채택
제18회 임 시 회 '92. 11. 19~21 (3일간)	제 1 차 본회의 11. 19 (목)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안 - 연말 사업마무리 촉구 현지확인	총 368개 사업장 중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장 58개소 확인 · 미진사업독려 16건 · 부실사업 시정촉구 2건
제19회 정 기 회 '92. 11. 25~ 12. 24 (30일간)	제1차 본회의 11. 25 (수)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 00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 - 위원장, 간사선임 -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이경식의원, 이철웅의원, 서칠수의원, 윤도현의원, 송태환의원, 이수환의원, 김수영의원, 이팔호의원(8명)으로 구성 위원장 : 서칠수의원 간 사 : 이팔호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관련업무 보고 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기간 : 12.9~11(3일간) - 대상 : 20개실과소 및 9개읍면 - 감사반 : 2개반 - 감사자료요구 : 63건 - 관계인 출석요구 감사대상기관 계장급이상 공무원	승 인
	제 2 차 본회의 11.27 (금)	1. '93년도 예산안 - 본예산 - 총 규 모 : 61,315,000천원 - 일 반 회 계 : 37,824,000천원 - 지 방 공 기 업 : 5,462,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18,029,000천원 - 비율 : '92당초예산 50,555,000천원의 21.2%증가 〈수정예산안〉 - 총 규 모 : 64,271,000천원 - 일 반 회 계 : 40,080,000천원 - 지 방 공 기 업 : 5,562,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18,029,000천원 - 비율 : '92당초예산 50,555,000천원의 27.1%증가	제안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예산액 59,075,789천원 - 결산액 세입 : 56,968,538천원 (예산대 96.4%) 세출 : 47,384,530천원 (예산대 80.2%)	승 인
		3. '91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 - 발 의 : 윤도현 의원 외5명 - 5개 분야	가 결
	제 3 차 본회의 12. 4 (금)	1. '9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 간 : 12. 9~11(3일간) - 장 소 : 의회회의실, 감사대상 기관 및 현장 -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감 사 실 시 (67개 분야)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 4 차 본회의 12. 15 (화)	1.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건 - 시정요구사항 10건 - 처리요구사항 6건 - 건의요구사항 1건	채 택

<table>
<tr><th>회 기</th><th>차 수</th><th>부 의 된 안 건</th><th>심 의 결 과</th></tr>
<tr><td></td><td></td><td>2.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 일반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558천원 → 614천원

3.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 소방업무 도이관에 따른 도조례 제정으로 군조례 폐지

4. 정수물품취득안
- '93년분 28종 181점

5.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매입)안
- 대상 : 용계리 87-1 대지 321㎡
- 가격 : 194,000천원
- 용도 : 가창면사무소 부지확장

6.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입계획〉
<table><tr><th>위 치</th><th>지 목</th><th>면적(㎡)</th><th>용 도</th></tr><tr><td>논공북리 1-84</td><td>대지</td><td>990</td><td>도서관 부지</td></tr><tr><td>논공북리 1-130</td><td>대지</td><td>1,032</td><td>공단출장소 부지</td></tr><tr><td colspan="4">가격 110,160천원</td></tr></table>〈매각계획〉
- 대상 : 옥포면 기세리 210-3
- 대지 : 106㎡
- 가격 : 2,120천원</td><td>가 결

〃

〃

〃

〃</td></tr>
</table>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매수자 : 화원읍 설화리 163-2 김 영 호 - 사 유 : '81. 4. 30이전 사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제 5 차 본회의 12. 21 (월)	1. 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상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에 따른 수도사업소 관할구역 변경(옥포, 현풍, 구지상수도 추가)	가 결
		2. 정수물품취득안 - '93년도 예산요구된 정수물품중 당초 정수물품취득안에 누락된 물품 추가의결 - 6개 품목 14점	〃
		3. '93년도 예산안 - 수정안발의 이철웅 의원 외4명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1,094,484천원 삭감,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10,540천원 삭감,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기타 8개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4.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추경규모 184,000천원 ┌ 일반회계 750,000천원 └ 특별회계 △566,000천원 - 비율 : 기정예산 56,087,000천원의 0.3% 증가 - 총예산규모 56,271,000천원	제안설명 청취
	제6차 본회의 12.22 (화)	1.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 도축수수료 인상 소 20,000원 → 23,000원 돼지 4,500원 → 4,950원	부 결
		2.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원 안 의 결
		3. 쌀수입개방반대 결의안 - 김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채 택 의 결
제20회 임 시 회 '93.1.28~30 (3일간)	제1차 본회의 1.28 (목)	1.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 → 4급으로 조정	의 결 유 보
		2. '93주요업무계획보고 - 8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1.29 (금)	1. '93주요업무계획보고 - 8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제 3 차 본회의 1.30 (토)	1. '93주요업무계획보고 - 4개 실과소	보고청취 및 질의
제21회 임 시 회 '93.2.16 ~18 (3일간)	제 1 차 본회의 2.16 (화)	1. 면 방문(8개면) - 면장의 업무보고청취 및 지역 지도층 인사접견, 주민의견수렴 - 2.16 : 현풍, 유가, 구지 - 2.17 : 옥포, 논공 - 2.18 : 가창, 다사, 하빈	건 의 사 항 70건 접수
제22회 임 시 회 '93.3.6 (1일간)	제 1 차 본회의 3. 6 (토)	1. 읍 방문(1개읍) - 화원읍	건 의 사 항 24건 접수
제23회 임 시 회 '93.4.1~2 (2일간)	제 1 차 본회의 4. 1 (목)	1. 의장, 부의장 선거 - 제2기 의장단 선거	의 장 : 석진후 부의장 : 고용덕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4. 2 (금)	1.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수도사업소장의 기술직급 "지방토목기좌"를 →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	가 결
		2. 달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감면대상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추가	〃
		3.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불금상환기간 및 회수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체납시 의료보호 정리 및 체납처분규정도 완화	〃
제24회 임 시 회 '93. 5. 17～19 (3일간)	제1차 본회의 5. 17 (월)	1.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안 - 각종 법률사항과 소송업무에 자문을 얻기위하여 2인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	제안설명 청취
		2. 달성군건축조례안 - 건축법개정('92. 6. 1)으로 조례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로 정하여야할 대지안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별 건축금지와 제한규정,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등 규정	
		3.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농어촌도로인 면도, 리도, 농도를 점용하는 자에게도 도로점용료 징수토록함	제안설명 청취
		4.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중에 읍면장에게 재위임된 "광고물에관한사항"을 군으로 다시 환수함	〃
		5.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권한사무 중 생보대상자 결정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
		6.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보사부령 제666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발령으로 관련조례대체폐지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7.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영세민" → "저소득층"으로 - 융자대상자 구체화("생계곤란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 저소득주민으로 자립 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생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 융자한도액 탄력적용(1세대당 5백만원 →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과 같은 금액)	제안설명 청취
		8.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정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같이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 실시	〃
		9. 대구도시계획안(달성군수 입안) - 옥포·본리리, 구마·88고속도로와 간경천사이 개발용도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신청으로 사업시행지 결정 - 구마·88고속도로변 시설녹지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11,725㎡를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전체 준주거지역 1,345,425㎡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공원, 주차장, 하수처리장, 도로 등 144,400㎡의 시설을 신설함	
		10. 대구도시계획안(대구직할시장 입안) - 제6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 - 용도지역변경 및 신설 - 도로, 공원, 녹지등 시설 결정	제안설명 청취
		11. 입체교차로설치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 구지면 고봉리 이차익 외 13인 - 소개의원 : 이팔호 - 고속도로와 현풍남부국민학교 사이에 지방도와 구지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을 지방도가 고속도로 교차를 위해 육교로 가설될때 높아진 지방도 밑으로 지하통로(박스)를 만들어 입체교차로로 설치 요구	취지설명 청취
		12. 도시계획도로조정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 옥포면 본리리 곽원술 외 13인	취지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소개의원 : 고용덕 - 옥포면본리리 2395-3외 5필지 상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소로)를 인근의 주거용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	
	제 2 차 본회의 5. 19 (수)	1.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안	가 결
		2. 달성군건축조례안	〃
		3.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4.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달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6. 달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7.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 결 유 보
		8. 대구도시계획안 (달성군수 입안)	의 견 채 택 (옥포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결정을 위한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9. 대구도시계획안 (대구직할시장 입안)	의 견 채 택 (화원읍에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된 명곡리 60,000㎡를 포함하여 대구교도소에서 설화리까지 대로1류 12호선변을 사업지역으로 하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화원유원지 입구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하여야 하며, 화원유원지 주변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성산리와 구라리의 녹지지역 중 이번 재정비계획 안에 주거지역에 누락된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할 것이며, 대한중석에서 냉천유원지 사이 녹지지역과 가창댐입구 및 찬샘지구 녹지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사면 서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리 일원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녹지지역 역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대구-서제-칠곡간 광로 1류14호선 중 서제리 부근 도로를 구릉지산지로 선형 변경하며 용계리에서 삼산리간 대로1류33호선은 도로와 접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중로1류로 노폭조정하여 할 것임
		10. 입체교차로설치에관한청원	의 견 채 택 (지방도 1093호선과 구지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은 차천방향에서 구지농공단지로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구지면 소재지쪽에서 차천으로 직진하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향후 쌍용자동차공단이 조성완료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할 것이 우려되는 곳이므로, 고속도로 교차를 위해 지방도 1093호선이 육교로 설치되면 기왕 도로가 높아져 높아진 도로밑으로 지하통로 설치가 용이하므로 우회전 입체도로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1. 도시계획도로조정에관한청원	의 견 채 택 (옥포면 본리리2395-3번지 외 5필지상에 계획된 소로가 인접한 도로와 연결되지 않고 쓸모없게 사유지에 계획되어 인근 토지들이 자투리로 분할되어 효율성 저하로 사유재산권이 많은 침해를 받게 되므로 해당소로를 주변 주거용지쪽으로 변경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도록 대구도시계획 변경 입안시 도시계획도로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12.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 - 발 의 : 서칠수 의원 외 2인 - 국세 보통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제기획원의 계획은 국세 보통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목적세 신설을 반대함	채 택 의 결
제25회 임 시 회 '93. 7. 2~5 (4일간)	제 1 차 본회의 7. 2 (월)	1.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추 경 규 모 : 7,271,000천원 ┌ 일 반 회 계 : 4,553,000천원 ├ 공기업특별 : 684,000천원 └ 기 타 특 별 : 2,034,000천원 - 비율 : 기정예산 64,271,000천원의 11.3%증가 - 총 예산규모 : 71,542,000천원	제안설명 청취
		2.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원 성산2리 → 성산2,4리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논공 북2리 → 북2,5리 - 2개리 증가로 총 190개리	
		3.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과대반 분반 조정 - 28개반 증가로 총 922개반	제안설명 청취
		4.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상이군경"을 →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
		5.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읍면장에게 위임된 공연장, 음반비디오물 관련업무를 군으로 환원	〃
	제 2 차 본회의 7. 5 (월)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2.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달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5.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수정안 발의 : 서칠수의원 외 5명 ○ 일반회계 ┌ 세입 : 원안대로 └ 세출 : 70,000천원 삭감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수정안 의결
제26회 임 시 회 '93. 8. 10~11 (2일간)	제 1 차 본회의 8. 10 (화)	1.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인 ┌ 위원장 포함 3인 │ - 법관, 교육자 등 외부인사 └ 부위원장 포함 2인 -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 기능 : 재산등록사항 심사 심사결과 처리등	제안설명 청취
		2.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93. 1. 1)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동법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 폐지 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사유지에 건축된 군유 새마을공장을 지주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재산의 표시 : 현풍 신기리 166-10 공장및대지 336.5㎡ ○ 매수 희망자 : 서울 최종만 ○ 예정가격 : 9,675,100원	제안설명 청취
	제 2 차 본회의 8.11 (수)	1. 달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2. 달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가 결 〃 〃 이철웅, 송태환, 이수환 의원 선임
제27회 임 시 회 '93. 9. 7~10 (4일간)	제1차 본회의 9. 7 (화)	1.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층이상 건물 대부료 산정기준 완화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계약년도의 대부료 납기 연장 30일 → 60일 - 수의계약 매각기준 확대 : '81.4.30이전 사유건축물이 있는 2,000㎡이하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하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가능 2. '9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보고자 : 기획실장(일괄)	보 고 청 취
	제 2 차 본회의 9. 8 (수)	1. '9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질의(21건)
제28회 임 시 회 '93. 10. 25~ 28 (4일간)	제1차 본회의 10. 25 (월)	1. 달성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제15회 및 제16회 임시회 의결 유보건 2.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농지분야 경제행정 규제완화 - 공장시설로 농지전용시 공장과 접하고,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래가 될 수	부 결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없는 잔여농지(동일필지 면적의 50% 미만이고 전체공장 면적의 10% 미만)도 전용대상에 포함	
		3. 달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4. 1. 1자로 일반회계로 흡수, 폐지	가 결
		4.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 공유임야 특별회계설치조항삭제(폐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흡수) - '94. 1. 1자	〃
		5.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읍면으로 위임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한 조항 삭제 - 분묘이장 명령외 6건	〃
	제2차 본회의 10. 26 (화)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 건 — '93~'97(5년간) 재정계획	보 고 청 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군정질문(19건)	
		□ **이경식 의원(화원읍)**	
		○ 벼냉해 피해에 대한 군단위 대책과 조사된 피해상황은?	산업과장 답변
		○ 화원읍이 급격한 인구증가로 학교, 경찰파출소, 우체국, 상설시장등 공공시설의 추가 설치가 절실하나, 도시계획에 공공시설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시과장 답변
		○ 환경관리공단 달성사업소가 논공 남리, 북리 생활하수처리비 2억원을 군수에게 부과하게 된 경위와, 법적근거, 향후조치계획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이철웅 의원(화원읍)**	
		○ 화원읍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해 주민불편, 읍사무소에 과증설이나 직원증원 방안은?	내무과장 답변
		○ 사문진교 밑 낙동강변 버들숲이 지저분하여 미관을 해침,	건설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잔디밭을 조성하여 군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 대구 대명천과 진천천의 오폐수 낙동강 유입으로 강물오염됨. 대명천과 진천천의 오·폐수유입 단속 대책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연차적사업으로 계획된 화원 본리리 진입도로 확장을 조기에 완공할 용의는, 그리고 올해 사업을 아직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과장 답변
		○ 화원 명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기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경위와 전망은?	도시과장 답변
		○ 대구시민을 위한 그린벨트 보호, 관리에 우리군이 감시원 인건비 등 연간 2억5천만원의 그린벨트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하게 할 방안은? 아니면 그린벨트보호세를 신설, 건의하여 그린벨트 감시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하게 할 수 없는지?	군수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서칠수 의원(가창면)	
		○ 공사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여 하천관련사업이 제때 완공이 되지 않아 수해방지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며, 기타 공사도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됨. 공사착공을 계약대로 이행시킬 계약상 제재 조치는?	부군수 답변
		○ 추가로 추진할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제2회 추경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부군수 답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전산화하여 전체 골재채취장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 감시로 차량통제 및 골재반출상황을 파악, 골재장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는지?	건설과장 답변
		○ 다사 방천리의 대구시 쓰레기 처리장에 폐수, 악취, 파리, 병균 등으로 주민생활 큰 불편, 대구시에 건의로 근본대책 강구할 계획은?	군수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이수환 의원(논공면)	
		○ 달성공단내 공공시설물이 부실하여 연간 3억5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음. 공단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실한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도시과장 답변
		□ 김수영 의원(현풍면)	
		○ 관내 아파트부실시공으로 입주자 큰 피해발생, 현풍 성창2차빌라의 하자보수상황과 군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는? 그리고 부도가 난 현풍학산아파트와 다사대흥주택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금후대책은?	주택과장 답변
		○ 각 읍면에 분산된 읍면단위 쓰레기처리장은 주변환경오염 등 문제가 많고 이내 포화상태가 되버리는 문제가 있는 만큼, 군내 3개권역에 대단위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환경보호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산업쓰레기와 특정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 이팔호 의원(구지면)	
		○ 달성군 등기업무가 남대구등기소에 예속되어 대구까지 민원을 보러가는 불편야기, 관내에 등기소 유치방안은?	군수 답변
		○ 구지농공단지 미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은? 입주업체 배치시 기준을 어떻게 하여 소음, 분진, 매연이 있는 공장이 마을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
		○ 군이 관리하는 내수면 소류지 및 물주머니 등이 전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음. 군으로 이전등기하여 군유지로서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지?	건설과장 답변
제29회 임 시 회 '93. 11. 16~19 (4일간)	제 1 차 본회의 11. 16 (화)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 예산액 : 61,563,554천원 - 결산액 ○ 세입 : 61,700,024천원 (예산대 100.2%)	결산검사의견발표 (이철웅 의원)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세출 : 50,884,470천원 (예산대 82.6%)	
		2.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구성 : 달성, 고령, 성주 - 기능 : 자치단체간 일부사무 공통처리(자원개발, 도로망, 상하수도환경등) - 위원:군수 3명(회장:달성군수) - 사무소 : 본군(기획실)	제안설명 청취
		3.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제3장 "특별회계설치"조항 삭제 - 폐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흡수 - '94. 1. 1자	〃
		4.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구성 : 20인 이내(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 따로 구성) - 기능 : 기존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물가안정 관련사항 추가 - 본조례 시행으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11.19 (금)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승 인
		2.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문 책요구 동의안 - 발의 : 고용덕 의원 외5명 - 9개분야 문책요구	가 결
		3.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5.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
제30회 정 기 회 '93. 11. 25~ 12. 24 (4일간)	제 1 차 본회의 11. 25 (목)	1. '94년도 예산안 〈본예산안〉 - 총 규 모 : 67,259,000천원 ┌ 일 반 회 계 : 49,690,000천원 ├ 지방직영기업 : 4,496,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13,073,000천원 - 비율 : '93 당초예산 64,271,000천원의 4.6%증가 〈수정예산안〉 - 총 규 모 : 718억5,600만원 ┌ 일 반 회 계 : 530억5,300만원	제안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지방직영기업 : 57억3,000만원 └ 기타특별회계 : 130억7,300만원 - 비율 : '93 당초예산 64,271,000천원의 11.8%증가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행정사무감사특위 제1차회의 ○ 11월 25일 13 : 00 소회의실 ○ 위원장, 간사선임 ○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의장, 부의장 제외한 전원(8명)으로 구성 위원장 : 이수환 간 사 : 윤도현
		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제안 : 행정사무감사 특위 - 기간 : 12.6~12.8(3일간) - 대상 : 21개 실과소 및 9개 읍면 - 감사자료요구 : 65건 - 보고요구 : 제2차 본회의(11.30)시 - 관계인 출석요구 : 감사대상기관 계장급 이상 공무원	승 인
		4.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 결의안 - 발 의 : 윤도현 의원 외 2명 - 수매가 13.9%인상, 수매량 1,100만석 이상 수매	채 택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차 본회의 11.30 (화)	1. '9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 기획실장 일괄보고 (21개실과소)	보 고 청 취
	행 정 사무감사 활 동 (12.6~ 12.8)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간 : 12.6~12.8(3일간) - 장소 : 의회 회의실, 감사대상 기관 및 현장	감 사 실 시 (55개 분야)
	행 정 사무감사 특 위 제 2 차 회 의 (12.9)	1.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건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 3 차 본회의 12.10 (금)	1.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건 - 시정요구사항 : 11건 - 처리요구사항 : 9건 - 건의요구사항 : 2건 2. 달성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기존 달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채 택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운영관리 조례와 달성군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 - 융자한도액 : 가구당 200만원 → 500만원으로 - 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 신설	
		3.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산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 개정 - 공유임야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현행 1,000분의 10을 →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준용토록 개정	가 결
	제 4 차 본회의 12.20 (월)	1. '94년도 예산안 - 수정안 발의(송태환의원외5명) 〈일반회계〉 - 세입은 743,731천원 삭감 -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 〈치수사업특별회계〉 - 세입은 원안대로 - 세출은 60,000천원 삭감 -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 〈기타 5개 특별회계〉 - 모두 원안대로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추 경 규 모 : 30억1,600만원 ┌ 일 반 회 계 : 31억9,700만원 ├ 공기업특별 : 1,400만원 └ 기 타 특 별 : △1억9,500만원 - 비율 : 기정예산 715억4,200만원의 0.4%증가 - 총예산규모 : 745억5,800만원	제안설명 청취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거부 결의안 - 발의 : 이철웅 의원 외 3명 - 대구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리비(연간 4억정도)를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대구시 및 국고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사권으로 '94년 하반기분 관리비부터 예산 삭감, 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	채 택
	제 5 차 본회의 12.22 (수)	1.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군유지에 건립된 사유건물을 군으로 기부채납(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4동 907.6㎡)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군으로 기부채납(화원 대백아파트 앞 도로 570㎡)	
		2.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매입계획 :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 6,051㎡(강창교 - 다사중고사이 국도변) - 대부계획 : 109필 21,114㎡ 2.943만원	가 결
		3. 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고문 변호사 수당 월 10만원을 → 월20만원으로	〃
		4. 달성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 13명을 → 25명으로 (읍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증원)	〃
		5.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수정안 발의 : 김수영 의원 외4명 ○ 일반회계 - 세입 : 원안대로 - 세출 : 2억1,921만원삭감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제31회 임 시 회 '94. 1. 10~12 (3일간)	제1차 본회의 1. 10 (월)	1. 달성공단상수도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 - '93. 1. 3~1. 5사이 발생한 달성공단 상수도 원수오염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요구 - 발의자 : 이수환 의원 외 4명 2.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조사를 위한 조사특위 구성 3.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조사계획 승인의건 - 제 안 : 조사특위 - 조사기간 : '94. 1. 10~11(2일간) - 조사범위 : 낙동강 수계에 있는 대구시 하천 및 주요폐수처리시설	가 결 구 성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 8명) 승 인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1. 12 (수)	1.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조사결과채택의 건 - 제 안 : 조사특위 - 대구시 쓰레기 처리장, 분뇨종말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공단 폐수처리 등에 대한 대구시의 소홀한 폐수관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	채 택
		2.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한 결의안 ○ 내 용 - 환경처에 낙동강에 대한 수질보존 대책강구 건의 - 대구시에 피해방지대책 및 폐수관리대책강구 및 피해보상 차원에서 대구시상수도 달성공단지역 조기공급 건의 - 경상북도에 대구시 상수도조기공급에 따른 급수시설비 부족분 도비보조 요구	〃
제32회 임 시 회 '94. 2. 23~26 (4일간)	제 1 차 본회의 2. 23 (수)	1.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11개 실과소	보 고 청 취

<table>
<tr><th>회 기</th><th>차 수</th><th>부 의 된 안 건</th><th>심 의 결 과</th></tr>
<tr><td></td><td>제 2 차
본회의
2. 24
(목)</td><td>1.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 10개 실과소</td><td>보 고 청 취</td></tr>
<tr><td></td><td>제 3 차
본회의
2. 26
(토)</td><td>1. 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93. 12. 31)으로 령에 의하여 지급되던 시체화장,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급토록 함
<table>
<tr><th>수 당 구 분</th><th>현 행 (령)</th><th>개정(조례)</th></tr>
<tr><td>시 체 화 장</td><td>월 5 만원</td><td>월 18 만원</td></tr>
<tr><td>분 뇨 처 리</td><td>〃</td><td>월 15 만원</td></tr>
<tr><td>하 수
쓰 레 기 처 리</td><td>〃</td><td>월 12 만원</td></tr>
</table>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세법 개정('93. 12. 27)으로 관련 조항 개정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조항 삽입 및 "중기" → "건설기계"로 용어 변경)

3.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td><td>가 결

〃

〃</td></tr>
</table>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도로법시행령개정('93. 8. 14)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조정 - 토지가격을 "과세싯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함 -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일시적 점용은 토지가격을 정액화 4. '9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건 - 9명의원 19건질의	질의 및 답변
제33회 임 시 회 '94. 3. 2~4 (3일간)	제1차 본회의 3. 2 (수)	1. 읍면방문의건 - 면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지도층 인사접견, 주민의견 수렴 - 3월2일 : 화원, 옥포, 논공 - 3월3일 : 가창, 다사, 하빈 - 3월4일 : 현풍, 유가, 구지	건 의 사 항 170건 접수
제34회 임 시 회 '94. 4. 12~16 (5일간)	제1차 본회의 4. 12 (화)	1. 찝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찝형 자동차세 50~60% 감면 2.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3. 논공도시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2 차 본회의 4. 16 (토)	1. 찝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찝형 자동차세 50~60% 감면	가 결
		2.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다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
		3. 논공도시계획변경안 - 발의 : 이팔호 의원	의 견 채 택 금포 제1지구 및 금포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결정을 위한 논공도시계획 결정은 첫째, 신축건물이 있어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기존건물이 모두 존치될 수 있도록 시설 결정하고, 둘째,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사업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토지이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이상과 같은 사항을 논공도시계획 결정에 모두 반영하여 사업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제 35 회 임 시 회 '94. 5. 24~28 (5일간)	제 1 차 본회의 5. 24 (화)	1. 경상북도, 대구직할시행정구역 통합촉구건의안 - 발의 : 이팔호 의원 외 4인	건의안 채택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불필요하게 분리되었던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를 1981년 7월 1일 이전 상태로 행정구역 통합함으로써 현재의 두 광역자치 단체가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발전과 시역확장 등 현안문제를 상호해결하여 궁극적인 국가발전에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며, 시역확장이라는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대구직할시 일방만을 위한 경상북도 일부지역의 선별적 대구직할시 부분 편입은, 일부편입된 경상북도 해당시군에게 막대한 재정적 결손과 함께 시군세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므로 자치단체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 달성 제2지방공단조성촉구결의안 - 발의 : 이수환 의원 외 4인	건의안 채택 지방공단조성을 위하여 결정된 논공도시계획 구역에 달성제2지방공단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공단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국토의 개발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공단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 영향평가에 있을 경우, 염색공단이 아닌 일반 공단으로 전환하여 조기에 공단지정 및 조성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제 2 차 본회의 5. 25 (수)	1.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의회근무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 징계 등 임용권과 6급 이하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과로 위임	제안설명 청취
		2.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국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학식, 경험 풍부한자 15명이내 군수가 위촉 등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3.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 → 수수료 징수	제안설명 청취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료부조 용어 삭제	〃
		5.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에 대구시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건축규제 일부완화 등	〃
		6.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다사 강창 동서APT내 도로부지를 군으로 기부채납 - 유가사도로 미편입토지 당시 소유자에게 환원	〃
	제 3 차 본회의 5. 28 (토)	1.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결 유 보
		2.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가 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3.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4.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5.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6.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학군제폐지요구결의안 - 발의 : 송태환 의원 외 4인	결의안 채택 현행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군제 실시는 국민의 자유로운 입학의 제한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전학및 편입학의 제한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군간의 교육수준격차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들의 국민평등권을 저해하고 있어 학군제실시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는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받을 권리와 거주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법정신에 어긋나고, 학군선택을 위한 불필요한 거주이전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장전출과 이농 및 농촌인구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현상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현행중고등학교입학, 전학및 편입학에 대한 학군제실시를 폐지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36회 임 시 회 '94. 6. 30~ 7. 6 (7일간)	제 1 차 본회의 6. 30 (목)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추 경 규 모 : 10,297백만원 ┌ 일 반 회 계 : 6,777백만원 └ 특 별 회 계 : 3,520백만원 - 총예산규모 : 82,153백만원 2.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자율	제안설명 청취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경조사에도 휴가허용	
		3.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 수수료 평균 10% 인상 - 폐기물 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아파트에 대한 청소대행 및 수수료 별도 규정	제안설명 청취
		4.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22%인상 - 정화조청소 수수료 10% 인상	〃
		5.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상수도사용료 평균 14% 인상	〃
		6. 결산검사위원 선임(3명) - 서칠수, 김수영, 이팔호 의원	가 결
	제 2 차 본회의 7. 4 (월)	1.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
		3.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제 3 차 본회의 7. 6 (수)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개발제한구역관리비부담개선대책촉구건의안 - 발의 : 서칠수 의원 외 4인	가 결 건의안 채택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국가가 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비용은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가 행한 도시계획인 개발제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하면서, 관리경비일체를 국고가 부담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으며, 개발제한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해당 도시가 수혜자 경비부담원칙에 의거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이치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실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첫째,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등 부처간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부담없이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경제기획원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시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94년도 하반기분부터 예산조치바라며, 셋째,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산하 시, 군이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모순을 직시하고 대구직할시 및 건설부 내무부 등과 다각 교섭하여, 개발제한의 피해에 추가하여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피해가 없도록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넷째, 대구직할시는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를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성실한 개선노력의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7회 임 시 회 '94. 9. 2~10 (9일간)	제 1 차 본회의 9. 2 (금)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발의 : 이팔호 의원 외 1인	가 결
		2.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결산검사위원수 : 3인이내 → 3인이상 5인이하 -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⅓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발의 : 윤도현 의원 외 1인	제안설명 청취
		3.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사무감사 기간 : 3일이내 → 7일이내 -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발의 : 윤도현 의원 외 1인	〃
		4.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의회 의원일비 및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현실화 - 일비 : 1일 30,000원 → 50,000원 - 국내외여비 : 갑·을지 구분폐지 - 발의 : 윤도현 의원 외 1인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5.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농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 - 대부료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 인하 : 년 17.5% → 15%	제안설명 청취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보건소건물 이전 : 축협우시장부지(현풍) - 축산폐수장설치 부지취득 : 5,550㎡ - 현풍보건지소 부지매각 : 760평	〃
		7.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 면적 : 201,000㎡ - 신청자 : 대한주택공사	〃
		8.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 면적 : 106,000㎡ - 신청자 : 대한주택공사	〃
	제 2 차 본회의 9. 5 (월)	1. 군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11개 실과소	보 고 청 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3 차 본회의 9. 6 (화)	1. 군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10개 실과소	보 고 청 취
	제 4 차 본회의 9. 8 (목)	1. 군정추진 상황보고에 대한질문의 건(21건) □ **서칠수 의원(가창면)** ○ 5천만원 이상 공사의 64%에 해당하는 사업을 설계변경하고 막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각종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만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 시·군통합과 관련한 타시군 공무원들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기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과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대처할 방안은? □ **이경식 의원(화원읍)** ○ 행정소송사건 중 승소건수와 패소건수는 얼마이며 군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활용도는?	부군수 답변 기획실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공해배출업소 관장부서가 삼원화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방법과 대응책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군청내 민원인 차량 진입에 대한 안내와 주차시설 확충등 종합적인 주차문제해결 방안은?	부군수 답변
		○ 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과 대책은?	기획실장 답변
		□ 이철웅 의원(화원읍)	
		○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충실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용과 성질에 따라 운영의 묘를 기할 용의는?	재무과장 답변
		○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진압대책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군수지도 감독권한과 내용은?	민방위과장 답변
		□ 송태환 의원(하빈면)	
		○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의 진도와 동절기부실공사방지 대응책은?	사회진흥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그리고 꽃길조성사업과 공원화 사업 및 도계정비사업의 연계성과 차이점은?	
		○ 육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방법과 가격안정 방안은?	축산과장 답변
		□ **이수환 의원(논공면)**	
		○ 노인들의 무료한 일과를 경로당에서 바둑, 장기, 화투등으로 소일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가정복지과장 답변
		□ **김수영 의원(현풍면)**	
		○ 군내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변태,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사회과장 답변
		○ 금년도 조림사업 집행내역과 수종, 산불발생 지역에 식재한 장기수종과 기초육림 사업은?	산림과장 답변
		○ 하빈면 하산리 양수장에 중장비를 동원한 물막이 작업은 뭠	건설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질식 가뭄극복이라고 보는데 향후 골재채취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은?	
		○ 관내 도축장 도축물량과 시설 개선비 마련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민관공동출자 수익사업 설립 용의는?	축산과장 답변
		○ 농공단지 오폐수로 인한 영농피해는 없는지 밝히고 옥포, 구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조경공사 추진내역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 고용덕 의원(유가면)	
		○ 조림, 육림사업, 임도개설사업 등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부당하도급 여부와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사업진도 및 개장시기는?	산림과장 답변
		○ 농토배양, 시범대회, 풀베기대회, 병충해방제대회 등의 참석대상자 분류와 향후 폐지 용의는?	산업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이팔호 의원(구지면)**	
		○ 문화재 감시원의 감시체계와 현지 근무상황과 문화재 현황은? 그리고 본군의 주요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문화공보실장 답변
		○ 성주대교, 사문진교, 고령대교, 박석진교 등 군내 낙동강 4대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은?	건설과장 답변
		○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일 환자수는 얼마이며, 이에 따른 대처방안과 군민 보건대책은?	보건소장 답변
	제 5 차 본회의 9. 9 (금)	1. 군정추진상황보고에대한 질문의건 (20건)	
		□ **이철웅 의원(화원읍)**	
		○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상부로부터 자료요구 또는 의견개진 및 공식적인 논의 여부는? 그리고 군전체가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점은?	군수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지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대응책은?	산업과장 답변
		□ 이경식 의원(화원읍)	
		○ 한해대책의 항구적인 방안과 저수지 준설공사에 도비를 배정받은 현황, 향후 추진대책은? 그리고 화원 명곡지구경지 20ha에 대하여 농조와 협의해서 몽리지역으로 편입할 용의는? 또한 달성중학교와 설화리사이 국도 5호선에는 아직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설치 시기는?	건설과장 답변
		□ 이팔호 의원(구지면)	
		○ 달성 제2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구지 쌍용자동차공단 조성 경위는? 또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군수 답변
		○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	기획실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하여 신규사업 발굴방안은?	
		□ 서칠수 의원(가창면)	
		○ 지난 혹서기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직원교육실시 여부와 향후 에너지절약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 겨울영농교육 참석실태 파악 여부와 연령 및 성질분포에 대한 설명과 현실성에 맞는 전문교육실시 용의는?	농촌지도소장 답변
		□ 송태환 의원(하빈면)	
		○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된 건축조례안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지원실적과 우선 순위 결정 및 선정방법 그리고 금년도 추진진도는?	주택과장 답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매년 삭감시키는 이유는?	내무과장 답변
		○ 불친절한 민원공무원에 대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여 향후 조치계획은?	
		□ 이수환 의원(논공면)	
		○ 취업정보센타의 운영실적과 취업후의 실태 조사여부 및 향후 운영계획은?	사회과장 답변
		○ 공단지역 부녀자 기능교육과 근로여성 취미교육 내용 및 실적은? 교육후 평가 실시여부와 효과는?	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
		□ 김수영 의원(현풍면)	
		○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과 장비 수질검정시설 활용내역과 시설보호를 위한 경비체계와 실태는?	수도사업소장 답변
		○ 새마을 중앙교육 등 각종 새마을 관련 교육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도록 교육과정과 내용 등 전반적인 개선운영 도모 용의는?	사회진흥과장 답변
		○ 군민체육관 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발판을 마련할 용의는?	
		○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율은 지난해 대비 몇 % 인상되었으며, 적정노임단가를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였는지?	재무과장 답변
		○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장치마련이 시급한데 개선처리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재무과장 답변
		○ 유가사 도로 확포장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대책은?	건설과장 답변
		☑ **고용덕 의원(유가면)**	
		○ 비슬산 군립공원을 '86년 2월에 지정하여 각종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있음에도 미개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과장 답변
		○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필하면, 군청 각종 공부에 명의변경 등 정리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지적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6 차 본회의 9. 10 (토)	1.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2.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의 견 채 택
		7.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달성 본리지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현장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볼때, 주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는 범위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내에서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1. 대상지역은 화원읍 요충지역으로 무한한 개발잠재력이 있고, 인근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 신청자인 주택공사가 시행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을 반대하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소유자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3.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수용지주에게 택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 원가로 공급하여야 할 것임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8.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35회 임시회시 의결유보 안건	가 결
제38회 임 시 회 '94. 10. 12~17 (6일간)		1.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회의견 - 발의 : 이경식 의원	제한설명청취 및 의견채택 본군의회에서는 지난 '94년 5월 24일 제3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토록 건의문을 채택하고,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으나 '94년 9월 13일 중앙정부 차원 당정협의회에서 본군 전체를 대구직할시에 편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94년 10월 7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주민의견조사결과, 총 35,353세대중 58%가 참여하여 79%인 16,083세대가 편입을 찬성함에 따라 민의 대표기관인 본군의회도 군민의 의사를 십분수렴하여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편입을 찬성하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1. 본군의 면적은 기존 대구직할시와 맞먹는 430㎢의 광활한 면적으로 농업인구가 30%에 해당하는 미도시화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 있어 기존의 혜택과 지역개발분야에도 국비 지원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 2.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기본권을 하위법령인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군제라는 명목으로 균등교육기회를 규제하여 본군 주민의 오랜 숙원인 학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군문제를 대구직할시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수정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3. 교통분야에 있어서 버스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시공중인 지하철 노선을 유가, 구지면까지 연장하여 편입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른수혜가 가도록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4. 도시 외곽지라는 이유로 기존의 혐오시설(각종 집단수용시설, 쓰레기매립장, 분뇨·하수종말처리장 등)이 본군 지역으로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5. 예로부터 충효의 얼이 깃든 고장인 점을 감안하여 향토의 문화전통을 계속 전승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제 2 차 본회의 10. 13 (목)	1.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예 산 액 : 79,644,180천원 · 세입결산액 : 80,474,035천원 · 세출결산액 : 64,119,730천원 · 지 적 사 항 : 22건	결산검사의견 발표 (서칠수 의원)
		2.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예 산 규 모 : 3,870백만원 ┌일 반 회 계 : 1,573백만원 └특 별 회 계 : 2,207백만원 · 총예산규모 : 85,933백만원	제안설명 청취
		3.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미관지구신설로 지구내건축 허가 규정 신설 - 건축선 및 인접대지 및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완화	제안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해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제안설명 청취
	제 3 차 본회의 10. 17 (월)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	승 인
		2.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 : 원안대로 세출 : 2,000만원 삭감 ※ 삭감액 예비비로 증액 · 특별회계 - 세입, 세출 : 원안대로 · 수정안발의 : 윤도현 의원외 4인	수정안 가결
		3.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36회임시회시 의결유보 안건임	가 결
		4.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	〃
제39회 임 시 회 '94. 11. 15~17 (3일간)	제 1 차 본회의 11. 15 (화)	1.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1년이상 터미널용도에 사용하	제안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100경감	
		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세이상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2,0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제안설명 청취
		3.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불용품 감정기준액 인상 - 3백만원이상 → 1천만원이상 · 비품구분 기준 - 취득단가 5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달성우체국 신축부지매각 : 299㎡ · 보건소편입부지 매입 : 195㎡	〃
	제 2 차 본회의 11. 17 (목)	1.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가 결
		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3.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보건소장 직급 상향 조정 - 의무직 : 5급 → 4급 - 보건직 : 인구10만명 이상 시군에 한하여 5급 → 4급 ※ 제20회 임시회시 의결유보 안건	〃
제40회 정 기 회 '94. 11. 25~ 12. 29 (35일간)	제 1 차 본회의 11. 25 (금)	1. '95년도 예산안 · 총 규 모 : 76,177,000천원 - 일 반 회 계 : 58,660,000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5,950,000천원 - 기타 특별 회계 : 11,567,000천원 ※ '94년도 당초예산의 6%증가	제안설명 청취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행정사무감사특위 제1차 회의 · 11. 25(금) 11 : 30(소회의실) · 위원장, 간사 선임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8명)으로 구성 위원장 : 이팔호 간 사 : 송태호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제안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기간 : 12.6~12.12(7일간) - 대상 : 21개실과소 및 9개읍면 - 감사자료 요구 : 71건 - 관계인출석요구 : 감사대상 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승 인
	제 2 차 본회의 11.30 (수)	1.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부군수 일괄보고(21개실과소)	보 고 청 취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안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선 - 쓰레기 배출자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 - 쓰레기 분리수거 이행	제안설명 청취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규정	제안설명 청취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공중화장실관리를 조례로 규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규정	제안설명 청취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 군세감면을 내용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 대상 : 15건 · 정비 : 13건 · 제정 : 2건	〃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 녹지지역내분할허가면적 한도 규정 · 보존 녹지지역 : 350㎡이상 · 생산 녹지지역 : 150㎡이상 · 자연 녹지지역 : 350㎡이상	〃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인원 : 10인 이내 [위 원 장 : 부군수 [부위원장 : 위원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 면 적 : 565천평 - 신 청 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안설명 청취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용도지역 : 주거, 자연녹지, 준농림지역 - 면 적 : 220천평 - 신 청 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
	행정사무감사특위 활 동 12.6~1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간 : 12.6~12.12(7일간) - 장소 : 의회회의실, 감사대상기관 및 현지	감 사 실 시 (66개분야)
	행정사무감사특위 제 2 차 회 의 12.12 (월)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채택의 건	특별위원회안으로 채 택
	제 3 차 본회의 12.13 (화)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처리요구사항 : 10건 - 시정요구사항 : 14건	채 택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건의요구사항 : 6건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안	가 결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	〃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 례안	〃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의 견 채 택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제 4 차 본회의 12. 20 (화)	1. '95년도 예산안 - 수정안 · 총 규 모 : 86,822,000천원 · 일 반 회 계 : 67,355,000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6,500,000천원 · 기타 특별 회계 : 12,967,000천원 ※ 비율 : '94당초예산 71,856,000천원의 20.8% 증가	수정안 의결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2.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추 경 규 모 : 4,006,000천원 · 일 반 회 계 : 2,757,000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320,000천원 · 기타 특별 회계 : △71,000천원 ※ 비율 : 기정예산 85,933,000천원의 4.6%증가 - 총예산규모 : 89,939,000 천원	제안설명 청취
	제 5 차 본회의 12.23 (금)	1.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규모 : 40억600만원 ※ '94년도 총예산규모 : 899억3,900만원	가 결
제41회 임 시 회 '95.1.21~25 (5일간)	제 1 차 본회의 1.21 (토)	1. 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보고자 : 군수 2. 읍면방문의 건 - 읍면장의 업무보고청취 및 지역 지도층인사 접견, 주민의견 수렴 ┌ 1월 23일 : 화원, 옥포, 논공 ├ 1월 24일 : 가창, 다사, 하빈 └ 1월 25일 : 현풍, 유가, 구지	보 고 청 취 건 의 사 항 178건 수렴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2회 임 시 회 '95. 2. 23~27 (5일)	제 1 차 본회의 2. 23 (목)	1.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	제안설명 청취
		2.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 현행 군의 모든 조례중 지방자치 단체 및 장 등의 명칭변경 · 달 성 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달 성 군 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3.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달성군 직제규칙 및 달성군실과직제 규칙을 폐지하고 동조례 제정	〃
		4.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달성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동조례 제정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5.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달성군의회 사무과장의 직급·직렬을 조례에서 삭제	제안설명 청취
		6.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보건소장 직급·직렬을 조례에서 삭제	〃
		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직급·직렬을 조례에서 삭제	〃
		8.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	〃
		9.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부합되게 조정 · 주민세 개인균등할 800 → 1,000원 · 종군자등의 감면규정 삭제 등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10.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군의회에 제출	제안설명 청취
		11.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사용자제 - 숙박업소 및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자제 등	〃
		1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스치로폴 등의 쓰레기는 60㎏ P.P포대 1매당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 - 이사, 집수리, 화재 등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톤당 50,830원의 수수료 납부	〃
		13.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 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달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동조례폐지	
		14.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양곡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동조례 폐지	제안설명 청취
		15.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현풍도축장 허가 취소에 따라 동조례 폐지	〃
		16.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축산과 신설로 동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명 변경 · 부위원장 : 산업과장 → 축산과장 · 간 사 : 축산계장 → 초지사료계장	〃
		17.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산림조합법이 폐지되고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동조례 폐지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18. 달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 폐지	제안설명 청취
		19.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 달성군 상수도사업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통합됨에 따라 동조례 폐지	〃
		20. 달성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앞 조례 폐지 사유와 같음	〃
		21.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앞 조례 폐지사유와 같음	〃
		22.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앞 조례 폐지사유와 같음	〃
		23.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앞 조례 폐지사유와 같음	〃
		2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와 내용이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중복된 7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수정 및 조항순서 변경	
		25.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경상북도 조례에 따르는 규정 삭제	제안설명 청취
	제 2 차 본회의 2.27 (월)	1.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가 결
		2.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
		3.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4.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5.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9.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10.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
		1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 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4.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5.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16.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
		17.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8. 달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19.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가 결
		20. 달성군공동급수설치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21. 달성군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2.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3.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5.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6. 개발부담금제도개선건의안 - 발의 : 송태환 의원 외 4인	건의안 채택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있음에도 개발이익 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수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부과대상사업에 있어 대상면적을 규정할 뿐 아니라, 동법 제5조제1항 제10호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농촌지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해당됨으로 개발이익의 정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미도시화 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유휴농지활용의 불가로 말미암아 이농현상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본 제도의 기본목적이 위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 부담금 제도의 개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선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을 규정 면적초과분부터 적용하여 개발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둘째, 본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군형태의 부과대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셋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 동법 제5조제1항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제43회 임 시 회 '95. 3. 27 (1일간)	제 1 차 본회의 3. 27 (화)	1.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 - 행정구역 경계조정(화원읍 구라리 일부지역의 달서구 편입)에 대한 의회의견 : 찬성	제안설명 청취 의 견 채 택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44회 임 시 회 '95. 4. 10~15 (6일간)	제 1 차 본회의 4. 10 (월)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의 : 이팔호의원 외1인 2.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추경규모 : 192억7,700만원 ┌ 일반회계 : 162억5,700만원 └ 특별회계 : 30억2,000만원 ※ 총예산규모 : 995억9,900만원 3.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소송사례 가능 - 법률고문을 수임한 소송사건비용 :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4.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공무원이 공무로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시에 현장여비지급가능토록 규정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관할사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가 결 제안설명 청취 〃 〃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	
	제 2 차 본회의 4. 14 (금)	1. 군정질문의 건(11건) □ **이경식 의원(화원읍)** ○ 두성아파트 허가경위와 절차상 적법·타당하게 처리하였는지,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전망은? □ **윤도현 의원(다사면)** ○ 지하철 기지창설치 예정지 변경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 다사면 지역에 2개의 취수장이 있음에도 문산리 취수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다사면 일대에 6개 주택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소음·먼지 등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 회사에 대한 지도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은?	부군수 답변 〃 〃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김수영 의원(현풍면)**	
		○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불법·타락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내무과장 답변
		○ 국도5호선 확·포장구간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고사하였는데 조경수식재 추진경위와 앞으로 조치계획은?	사회진흥과장 답변
		□ **송태환 의원(하빈면)**	
		○ 하빈면 대평리 등 180여 농가가 불량종묘 구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에서 조치한 실적과 보상가능 여부는?	산업과장 답변
		○ 농협에서 불량비닐을 공급하여 특작농가가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이며, 보상가능 여부는?	〃
		○ 하빈면 하산2리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장 조사결과와 조치실적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 서칠수 의원(가창면) ○ 가창면 정대마을까지 운행하는 10번 버스가 하루에 8회운행하여야 함에도 4회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회사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 이팔호 의원(구지면) ○ 가뭄대책으로 현재까지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개발 등 추진상황과 앞으로 영농은 가능한지?	건설과장 답변
		○ 의장 임기연장의 건 - 현행 의장의 임기를 '95.6.30일까지 연장	가 결 (의장 : 석진후)
		○ 부의장 임기연장의 건 - 현행 부의장의 임기를 '95.6.30까지 연장	가 결 (부의장 : 고용덕)
	제 3 차 본회의 4.15 (토)	1.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가 결
		5. 지하철노선및상수도확대공급 촉구건의안 - 발의 : 이팔호 의원 외 4인	건의안 채택 달성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함은 물론, 달성군 전역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해당주민에게 고른 수혜가 갈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최남단에 위치한 구지면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하철 1호선의 노선연장과 대구시 상수도를 조속히 공급토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82만평의 구지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향후 수많은 근로자들과 구지면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있도록 지하철 1호선 노선을 현행 현풍면에서 구지면까지 연장하고, 둘째, 탁도와 오염도가 심한 농업용수를 여과시켜 구지면민의 식수로 공급함으로써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조속한 상수도 여과시설의 보완 대책마련과 대구시 상수도를 구지면까지 확대 공급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제45회 임 시 회 '95. 5. 29~31 (3일간)	제 1 차 본회의 5. 29 (월)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화원읍 구라 1, 2, 3리의 관할구역 일부조정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앞 조례안 내용과 같음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소방업무가 대구광역시소방본	제안설명 청취 〃 〃

회 기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부로 흡수됨에 따라 민방위과 분장사무에서 삭제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면출장소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함	제안설명 청취
		5.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일시에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수수료 규정이 대구광역시조례와 중복됨으로 삭제	〃
	제 2 차 본회의 5. 31 (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결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行政事務監査・調査

행 정 사 무 감 사

'91 행정사무감사

□총 평

지난 12월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아왔던 업무감사와는 달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둔 감사였음.

따라서 감사대상 업무도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환경보호, 상하수도, 농사행정 등이 많았고, 감사의 방향도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한 지적보다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 처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음.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행하여졌으며, 총 85건의 감사대상 업무를 사전 선정하여 심도있게 질의 · 추궁한 결과 행정의 여러부분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집행기관 일부 부서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회피성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업무현황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감사에 응하는 등 의원을 경시한 수감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광범위한 군정을 3일간 짧은 감사일정으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으나 전의원이 사전에 풍부한 감사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업무를 연찬하는 등 비교적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됨.

[잘 된 점]

감사대상업무를 미리 선정하여, 집행부서에 사전통지함으로써 처벌보다 예방 위주의 확인감사가 되도록 한 점.

[잘 못 된 점]

실무자인 계장급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실, 과, 소에서는 실무자 보조없이 실과소장이 단독으로 감사를 받음으로써 감사의 방향을 흐리게 한 점.

[문 제 점]

○ 의회감사가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이 주가된 회의식 감사인 관계로 자료와 답변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서류감사처럼 세밀한 감사가 곤란했음.

○ 감사대상업무에 비하여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였음.

[개 선 방 안]

○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업무숙지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개정시 감사기간을 현행 3일에서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5일간으로 연장토록 건의하여야 할 것임.

□ 감사실적

○ 부서별 감사실적

부 서 별	건 수	부 서 별	건 수
계	85건		
기 획 실	2	지역경제과	4
문화공보실	2	산 업 과	13
내 무 과	11	산 림 과	2
새 마 을 과	5	도 시 과	12
재 무 과	9	건 설 과	7
지 적 과	2	민 방 위 과	2
사 회 과	4	보 건 소	1
가정복지과	2	농촌지도소	3
환경보호과	3	수도사업소	1

○ 의원별 감사실적

감 사 의 원	건 수	비 고
계	85건	
서 철 수	10	
윤 도 현	11	
송 태 환	9	
이 경 식	11	
이 철 웅	12	
이 수 환	11	
김 수 영	9	
이 팔 호	12	

□ 결과처리

○ 시정 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해 당 부 서
계	9 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단속 소홀〉 부동산 투기등 나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자가 상당수에 이르나 이의 단속을 소홀히 하여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군정 수행에 차질	리장, 반장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	내 무 과
〈공사 준공검사 소홀〉 수리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수리지구 진입도로 포장, 유가사 도로확·포장, 달성공단 도로포장보수, 군영주택건립 등 대부분 건설공사가 같은계에서 직원이 공사감독하고 계장이 준공검사하는 사례가 있어 준공검사의 객관성을 상실한 불건전한 준공검사가 된 사실이 있음	준공검사자를 타실소 및 타계의 해당 기술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시정	도 시 과 건 설 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소홀〉 대구시 인근인 다사면 서제, 세천리에 야음을 이용 쓰레기불법투기 행위가 심함에도 이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아 생활주변의 환경을 해치고 있음	쓰레기투기 단속반을 편성,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	환경보호과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해 당 부 서
〈영농 후계자 부실관리〉 영농후계자 자금을 지원 받고도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타직종에 종사하는 등 영농후계자 관리가 소홀	영농후계자 선정시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로 명실공히 농촌 근대화의 기수로 양성토록 할 것	산 업 과
〈군내 미등록 무허가 공장에 대한 조치 미흡〉 군내 무허가 공장이 약 350여개가 있으며 또한 3년이내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한 업체가 약 300여개 있는바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	무허가 영세공장의 확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기존 무허가 공장과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에 대한 대책 수립	지 역 경 제 과
〈공시지가 지정 불합리〉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각종 세금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현시세의 1/10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음	지가 조사에 적정을 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강구	시 도 시 과
〈토지거래허가신고서 작성 불합리〉 토지거래 허가지역(규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공시지가의 120%이상이면 허가가 되지 않아 매매인 다수가 허가신청서에 매매가액을 허위기재	불합리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법 제도 개선건의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문제점 보완	도 시 과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해 당 부 서
〈특산물 직판장 설치의 부적정〉 특산품 직판장 설치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관외인 대구시내에 직판장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이용도 저조	군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면소재지 또는 공단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강구	농 촌 지 도 소
〈군민체육관 이용실태 저조〉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군민 체육관을 모든 주민이 널리 활용토록 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건강향상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용가치를 높여야 함에도,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군민체육관 활용실적을 보면 총 21회 사용으로 한달에 평균2.6일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	군민체육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할 것	새 마 을 과

○ 처리 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해 당 부 서
계	4 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관리소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자 중 일부 농가가 해당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일제 조사하여 융자금 타용도 사용자 자금 회수조치	새 마 을 과
〈자동차세 누락〉 등록된 자동차 중 상당 댓수가 과세 누락되어 있음	자동차 등록대장과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대조하여 자동차세 누락차량 추징 조치	재 무 과
〈자체감사 미흡〉 상부기관 감사나 의회감사에 앞서 수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예방차원의 자체감사가 미흡하였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체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문책 조치	내 무 과
〈군유재산 관리소홀〉 '76년 구마고속도로 정화사업때 무연분묘 이장을 위해 매입한 논공면 노이리 산224번지 11,520평에 대하여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 소홀	군유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할 것	재 무 과

'92 행정사무감사

□총 평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63건의 풍부한 감사자료 확보와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감사개시 5일전에 군정보고를 받음으로써 능률적인 감사가 되게 하였음.

작년에 이어 두번째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상부기관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로서,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었으며, 행정내부사항보다 대주민관심사항에 치중하여 비교적 심도있게 감사가 이루어졌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군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되었던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권장하여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감사의 방향도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그 잘못된 행위가 있게 된 동기와 배경, 그리고 제도적 구조적 모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촉구하고 잘못된 사항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감사실시 과정에서 집행부의 밀실행정과 공무원의 지나친 보신주의, 지방자치의 인식부족 그리고 관치행정의 잔재 등으로 의회의 감사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축적된 경험으로 심도 있는 질의 → 추궁 → 답변과정에서 많은 위법 · 부당한 사항이 적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시정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회피성 답변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견강부회하는 억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감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음.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광범위한 군정을 모두 살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사전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그리고 전위원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대체로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됨.

○ 부서별 감사실시현황

부 서 별	건 명
계	62건
기 획 실	○ 경상비 예산집행 ○ 지도방문 조정 통제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 자치법규집 정비 계 4건
문화공보실	○ 송담서원 보수공사 ○ 예연서원 설계변경 ○ 홍보기자재 관리 계 3건
내 무 과	○ 전산장비 물품관리 ○ 일용인부 근무처 ○ 이동군청 운영 ○ 사회복지회관 운영요원 발령 ○ 지방행정 10대시책 추진 계 5건
새 마 을 과	○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 ○ 새마을사업 공사 감독 계 2건
재 무 과	○ 세출예산 월별자금 배정계획 ○ 출납사무검사 ○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 체납자 재산 압류 ○ 저가심의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읍면장 권한 위임공사 ○ 예정가격 보완 계 7건

부 서 별	건 명
지 적 과	○ 일용인부 사역 ○ 지목변경 절차 계 2건
사 회 과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 종합사회복지회관 개관 계 2건
가정복지과	○ 드레스 임차료 ○ 사설묘지 설치허가 계 2건
산 업 과	○ 농어촌 발전계획심의 ○ 농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 ○ 불허가 민원서류 ○ 위탁 영농회사 격납고 ○ 농지전용토지 전용목적 사용여부 ○ 영농후계자 사후 관리 계 6건
축 산 과	○ 가축사육 금지지역 고시 ○ 소아까바네병 퇴치 방안 ○ 축산물 가격조정 협의회 운영 계 3건
산 림 과	○ 산림훼손허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산림조합 위탁사업 관리 계 2건
지역경제과	○ 시장옥 정비 ○ 공영주차장 수탁사용료 징수 ○ 설계변경 공사 ○ 조건부 이전공장에 대한 조치 계 4건

부 서 별	건 명
건 설 과	○ 경지정리 환지청산 ○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운영 ○ 묘리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 오설지 확장공사 설계변경 계 4건
도 시 과	○ 수질감시위원 구성 ○ 상리 도시계획도로공사 ○ 수도요금 인상안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계 3건
주 택 과	○ 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과태료 징수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군영주택 건립 ○ 화원 구라리 무허가 건물 계 4건
민 방 위 과	○ 병무심사 동원위원회 ○ LPG가스 화재예방 계 2건
보 건 소	○ 연말 여비 집행 ○ 의약품 구입 단가계약 계 2건
농 촌 지 도 소	○ 농기계 무료수리봉사 ○ 비닐하우스 생력화 시범사업장 관리 계 2건
수 도 사 업 소	○ 정수약품구입 단가계약 ○ 급속여과지 지붕설치 ○ 남양금속 분진의 정수지 침전 계 3건

□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민원서류처리 부당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토석채취허가, 사설묘지설치허가 등 복합민원과 불허가민원인 주유소불허가 처리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였음	달성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14, 15호에 의거 복합민원서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임.
물품구입수의 계약처리부당	보건소 의약품과 수도사업소 정수약품은 연중 계속하여 구입하는 물품임에도, 연초에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 일괄구입하던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구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분할집행 하였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연초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 연중 수시로 구입하던가 일괄구입하여야 할 것임
설계변경부당	구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신축공사에 예산잔액이 발생되자 별개의 공사인 마당포장공사를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지 않고 동공사를 설계변경하여 추가시공함으로써 사업비를 부당집행하였음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본공사를 완공할 수 없거나, 전체공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토록 시정하여야 할것임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읍면장권한위임 공사 군 집행부당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이하의 공사집행은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되었음에도 새마을과 소관 7개 공사는 2천만원 이하임에도 본청예산으로 편성하여 군에서 시행하였음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예산으로 예산요구 및 편성하여 읍면장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공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지연제출	계산증명 규칙에 의거 매월분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수개월씩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음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제출하고 있는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공사지연발주	'91당초예산에 편성된 송담서원 보수공사와 상리 도시계획 도로공사를 1년여 기간 방치하였다가 '91년 12월 30일과 12월 27일에 각각 계약하여 '92년 2월에 완공하였음	예산성립된 공사는 가능한한 조기착공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물품관리소홀	전산장비와 청소용구를 군에서 일괄구입, 읍면으로 배부하면서 물품관리 전환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품대장도 제때	물품관리관을 달리하는 읍면으로 물품을 배부할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에 의거 관리를 전환하고 읍면에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정리하지 않고 있음	서는 비품대장에 등재한 후 정확히 관리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출납사무검사 미실시	군수는 매년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출납사고 미연방지에 소홀히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이후부터는 출납사무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여야 할 것임.
일용인부 변칙 사역	예산과목 "재료비기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인부를 해당 사업장에 근무시키지 않고 실과소 사환으로 사역시키고 있는가 하면, 예산에 없는 인부를 임의로 사역한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음	실과소 사환으로 사역하는 사업인부는 해당사업에 사용되도록 즉시 사업장에 근무토록 조치하고 예산에 없는 인부를 임의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지정리환지 청산지연	경지정리 환지청산은 청산인가일로 부터 90일 이내 청산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3개지구(무등, 쌍계, 수리)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1년이상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시켰음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환지청산을 조속히 완료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나. 처리요구사항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지연	'92. 3. 27자로 준공되고 9월에 소속공무원 정수까지 승인된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관장 인사문제로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소속공무원을 조속히 발령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치법규집 정비소홀	달성군 사무내부위임규정에는 없어진 법령이나 조례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달성군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칙도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어도 구법이 아직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음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할 것임.
기금관리소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은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엄격한 회계절차에 의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가 개설되어 있지	관계규정에 의거 본 기금을 인출하여 달성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입금 조치하고, 보다 안전성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달성군농협지부에 예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않은 동양투자신탁에 예치하여 통장만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위탁영농회사 농기구 격납고 목적외 사용	현풍면 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 농기구격납고가 현지확인결과 직물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기가 설치되어 있음	조속히 직기를 철거하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토록 할것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각종위원회 정비소홀	각종 조례 및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 중 지도방문조정통제위원회, 지명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추천 심사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생산조정협의회, 영세농자립화추진협의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공업단지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또는 군정조정위원회로 흡수하는 등 위원회의 일제정비가 절실하다고 판단됨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립공원위원회, 수질감시위원회,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이상 16개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도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이나 유명무실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음	
자체감사미흡	심도있는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사전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온적임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관련자 문책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겠음

다. 건의요구사항

건 명	지 적 사 항	건 의 요 구 사 항
농지전용사후 관리	농업진흥구역 밖이나 상대농지의 경우, 농지전용 3년이 경과되면 전용목적외 타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축사 등으로 허가(신고)를 받아 공장이나 점포, 주택형태로 지어놓고 약간의 가축을 사육할 시 농지전용 목적 위배를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음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이 규제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본문내용 중 전용농지의 타목적사용 승인기간을 현행 3년 이내를 5년이내로 개정토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93 행정사무감사

□총 평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가 군민의 시각으로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위법부당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에 합리성과 합법성을 개진시켜 보다 향상된 군민복지와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었음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대의기관에 의한 감사였던 만큼, 감사대상업무는 행정내부사항보다 주민관심사항에 집중되어 실시되었고 감사의 방향도 잘못의 지적과 처벌보다는 그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케하고 제도적 모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게 하였음

또한 감사실시 이전에 65건의 감사자료 요구로 풍부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군정주요업무도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보고받아 감사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수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군정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 모두 감사가 되어 행정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집행부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발전적인 감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수감을 통하여 다듬어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빠져나가기식 회피성 답변으로 감사의 방향을 흐리게 한 점도 있었음

의회의 감사는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달리 군민의 입장에서 다소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사항이 감사되어지므로 지적사항 또한 근본적인 제도상 문제가 있거나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일부 지적되었지만, 정책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부기관 건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시켜 나가고, 여러가지 여건상

시책추진에 어려운 점들은 불가피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좀더 해결 가능한 사항들이 있었음

감사결과 주요문제점으로 일부 사무는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의회의 지적이 전년도의 반복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고, 감사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사무착오 또는 미스프린트 등으로 변명하고 있었으며, 수감태도도 억지논리나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등 자료제출과 수감상태에 다소 불성실한 점이 있어 의회의 감사가 자료검토와 질의에 대한 답변만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확한 자료와 불성실한 답변은 감사기능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었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고질 사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담당자 인책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부정확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여 허위 자료제출이나 자료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체 직원교육을 통하여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임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군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게 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부분에 대하여 주요사무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그리고 행정내부적인 사항과 시책적인 사업은 포괄적으로 사무의 경중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져 매우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됨

○ 부서별 감사실시현황

부 서 별	건 명
계	55건
기 획 실	○ 지방채 채무 ○ 소송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포상금 ○ 집중관리 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 4건
문화공보실	○ 충효선현문집 국역 발간 ○ 문화재 감시원의 책임한계 ○ 문화재 보수공사 편중 시행 ○ 충효제 행사경비 계 4건
내 무 과	○ 화원읍 인력보강 ○ 보건지소 근무자 및 읍면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 읍면장 및 부읍면장 관내 거주 ○ 세외수입계 설치 방안 계 5건
사회진흥과	○ 계획대비 사업물량 감소공사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괄발주 ○ 잠식농로 찾기사업 및 도로편입토지 군소유권 이전 ○ 미해결 토지보상민원 계 4건
재 무 과	○ 공유재산관리 ○ 세원관리 ○ 출납사무검사 ○ 관서당경비 집행 ○ 농지전용 지목변경토지 취득세부과 ○ 관급자재 수급 체제 계 6건

부 서 별	건 명	
지 적 과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 지목변경 미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 2건
사 회 과	○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계 2건
가정복지과	○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계 2건
환경보호과	○ 농업용수 수질오염 ○ 주요하천 오염상황	계 2건
산 업 과	○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위한 농한기 정의 ○ 농산물 피해조사 및 보상	계 2건
축 산 과	○ 공수의 보상금 지급 절차 ○ 축산 폐수 처리	계 2건
지역경제과	○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 택시 부당영업행위 단속 ○ 개인택시 양도시 문제점	계 3건
산 림 과	○ 산림사업의 산림조합 도급 ○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부담금	계 2건
건 설 과	○ 도로잠식 및 무단점유 ○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부실시공방지	계 2건

부 서 별	건 명
도 시 과	○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피해 대책 ○ 상수도 검침원 정수와 수도전수 계 2건
주 택 과	○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현실화 ○ 상수도 보호구역내 도로편입 철거주택이축허가 계 3건
민 방 위 과	○ 국가위임사무(병무) 수행에 대한 소요경비 ○ 요식업소 소방점검 계 2건
농 촌 지 도 소	○ 지도용 이륜차의 필요성 계 1건
보 건 소	○ 약품 수급 계획 계 1건
수 도 사 업 소	○ 활성탄여과기 설치공사 ○ 비상 급수전환 계 2건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 이용주민 현황 ○ 부대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계 2건

가. 처리요구사항

건 명	지 적 사 항	처리요구사항
화원읍 인력보강 지연	화원읍 인구가 12월 4일 현재 28,510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은 4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결원이 7명으로 현원 37명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어 대민업무 차질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결원은 즉시 보충하고 부족한 정원도 연말 내에 전원 확보조치
세원관리 소홀	대구 성서공단에 속해 있는 화원읍 구라리 일원 공업지역 42,000평에 대해서는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로 과세자료 통보 등 세원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자료파악되지 않고 있었음	이 지역은 공단관리와 세원관리가 대구시와 이원화되어 있는 세원 탈루 사각지대인 만큼, 과세대장 별도작성하여 관리
수시등급 조정 미실시로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가 그지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의거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한 과표증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분만 등급조정 할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및 준공자료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일 지라도 사실상 지목이 대지이므로 관련법에 의거 수시 등급조정하여 취득세 부

건 명	지 적 사 항	처리요구사항
	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하여야 하나, 농지전용으로 농지가 대지로 사실상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 조정을 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누락 되었으며, 지목변경 및 등급조정된 농지전용 토지도 취득세 부과누락되었음	과 누락된 농지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12월 중 세금부과조치 (621,550원)

과 세 물 건	비 고
하빈 봉촌 222 1,652㎡ 농산물가공공장	수시등급조정 미실시
가창 우륵 84 2,648㎡ 창고	〃
하빈 하산 1109-3외 3필 2,682㎡ 레미콘 공장	〃
하빈 하산 779-3외 2필 2,423㎡ 축사	〃
752, 753 2,281㎡ 축사	〃
구지 도동 170-2 3,098㎡ 축사	〃
옥포 김흥 966 2,631㎡ 축사	〃
하빈 봉촌 974-1외 1필 3,128㎡ 축사	〃
구지 내2리 659외 1필 2,360㎡ 축사	〃
옥포 김흥 1228, 128-2외 1필 2,212㎡ 저온창고	취득세 77,860원 미부과
하빈 하산 1130-43, 4,979㎡ 레미콘공장	〃 365,450원
구지 수리 523-3 2,628㎡ 벽돌공장	〃 29,950원
논공 노이 1282-2 1필 3,402㎡ 벽돌공장	〃 52,390원
유가 한정 321-2 2,013㎡ 저온창고	〃 45,890원
구지 목단 221 2,388㎡ 축사	〃 20,530원
구지 도동 198-40 2,680㎡ 축사	〃 29,480원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사회복지 시설 운영 미흡	구지 어린이집은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이나, 사업계획 소홀로 소요예산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만 예산확보하여 결국 사업 시행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풍 노인복지시설은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손색없는 시설이나 노인 이용소 등 전체 시설활용도가 낮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노후된 구지 어린이집은 조속한 예산 확보로 건물 신축하여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현풍 노인복지시설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
미해결 토지보상 민원방치	'77년 당시 현풍면 소도읍 가꾸기에 편입된 토지 33필(국유지 7필지, 사유지 26필지)가운데, 사유지 9필지에 대해 편입지주가 그당시 보상금을 미수령, 체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간 해결않고 방치하고 있음	당시 정황 및 자료조사로 보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조속히 예산 조치하여 보상금 지급조치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보상소홀	올해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를 전작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금후 피해보상 계획이 있을 경우 보상근거가 없으며 4월달 감자 서리피해와 7월 태풍피해는 피해보상금을 예산조치 않아 보상을 하지 못하였음	정확한 농정 통계자료 확보와 피해 보상 대책을 위해 전작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발생즉시 조사토록 시정하고, 감자 서리피해와 태풍피해는 금후 추경에 예산조치 하여 보상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도로관리 소홀	일부소도로가 주변상가에 의해 무단점유 당함으로써 노폭이 좁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곤란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를 현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점용신청분만 부과하고 있어 무단점용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마을 진입로 등 주변으로 부터 잠식당한 도로는 철거 등으로 되찾고, 도로점용사실 일제 조사로 점용료 및 무단점용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무단점용분은 계획을 세워 철거조치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미교부 부족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업무 수행에 연간 2억원이 소요되나, '93병사비 국고보조금은 1억5천만원만 교부되어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군비가 부담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요액 전액을 교부받도록 소요경비 재산출하여 추가교부 신청 조치
가창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안일한 업무처리	가창면 정대도로 확장공사에 편입, 철거된 가옥중 상수도법에 의거 대구시의 협의 불응으로 이축이 불허가 된 4세대에 대하여 군에서 조정 등 적극적인 피해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주민피해 발생	상수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건축 가능토록 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도로관리 소홀	일부소도로가 주변상가에 의해 무단점유 당함으로써 노폭이 좁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곤란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를 현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점용신청분만 부과하고 있어 무단점용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마을 진입로 등 주변으로 부터 잠식당한 도로는 철거 등으로 되찾고, 도로점용사실 일제 조사로 점용료 및 무단점용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무단점용분은 계획을 세워 철거조치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미교부 부족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업무 수행에 연간 2억원이 소요되나, '93병사비 국고보조금은 1억5천만원만 교부되어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군비가 부담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요액 전액을 교부받도록 소요경비 재산출하여 추가교부 신청 조치
가창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안일한 업무처리	가창면 정대도로 확장공사에 편입, 철거된 가옥중 상수도법에 의거 대구시의 협의 불응으로 이축이 불허가 된 4세대에 대하여 군에서 조정 등 적극적인 피해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주민피해 발생	상수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건축 가능토록 조치

나. 시정요구사항

건 명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현실과 부적합한 장비운용으로 예산낭비	농촌지도소에 업무용 이륜차가 30대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교통여건의 변화 및 원거리 출장과 도시근교 영농지도에 이륜차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아직도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어, 유지비로 연간 10,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지도업무 출장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노후하거나 내용연수 오래된 이륜차부터 연차적으로 보유대수를 줄여서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장비운용에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저가 낙찰로 부실공사 유발	낙찰률 85%이하의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된 공사가 연간 30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노임단가가 현실단가의 절반 수준임을 볼때, 예정가격 85%이하 공사 발주로 부실공사를 유발케 하고 있음	예정가격 85%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덤핑입찰로 보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에 의거 철저한 저가 심의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토록 시정
지방채 채무 부담사업 선정 불합리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하여야 하나 공익과 거리가 먼 읍면 청사건립에 지방채채무를 3억9천만원 부담하였음	지방재정 공제회로 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익과 무관한 읍면청사 건립보다, 노인회관, 어린이집, 복지회관, 체육관, 독서실 등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개선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택시 부당영업 행위 등 단속미흡	관내 77대의 택시가 구간요금 미준수, 합승, 불친절, 호객행위, 우천시 곱절요금 청구 등 각종 부당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개인택시 양도시에도 건강진단 조작 및 허위운전 경력등으로 불법사례가 빈발하나 단속이 미흡함	불법 영업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피해 방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시 법적요건을 철저히 검토후 조치
공수의 보상금 지급 불합리	공수의에 대한 월보상금 지급시에 공수의 가축질병 예찰활동상황을 확인없이 일괄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공수의 보상금 지급시 예찰활동상황을 첨부하되 예찰활동상황보고서의 농가명 옆에 축산농가의 확인날인을 받도록 조치
예산초과 집행	논공상수도 활성탄여과기 설치공사는 예산액 62,000천원보다 1,130천원이 더많은 63,130천원을 집행함으로 예산초과 집행하였음	금후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없도록 관계공무원 교육
관급자재수급체계미흡	봄철 일시에 다량의 공사 발주로 많은 레미콘이 소요되나 조달청에서는 2개업체만 선정하	조달청과 납품계약된 다수업체에서 레미콘이 공급되도록 조달청과 협의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여 본군 관내 각급 공사장에 레미콘을 공급함으로써 공사시간에 맞게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체육행사경비 낭비	'88년부터 군민체육대회와 충효제가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2개행사 모두 내용상 체육행사로서 경기종목이 상호 중복되어 예산낭비	중복되는 경기종목이 없도록 하여 예산절감토록 노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안정성확립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될때 마다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이 가감되기도 하고 투자우선 순위가 바뀌기도 하여 계획의 안정성을 잃어 중기재정운영에 혼란 초래. '93년 수정계획의 경우 당초계획에 있던 16건 239억5,800만원의 사업이 제외되고 그대신 10건 339억8,600만원의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중기 투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국가계획과 도계획의 변동에 따라 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 변경 될 수밖에 없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기계획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판단하에 계획 수립함으로써 빈번한 수정사례 없도록 운영 개선
농한기의 정의 개선	농지 일시전용은 농한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농지 일시전	수도작 위주로 결정된 농수산부의 농한기 정의는 특용작물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용허가 조건이 있으나, 농한기의 정의를 상부지시에 의거 11월 1일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본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특작농민의 농한기인 가을철에는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반면 특작농민이 바쁜 겨울철에 농지일시전용허가가 됨으로써 객토 등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의 경우는 농번기에 해당되므로, 농한기의 정의를 작목별로 구분 결정하여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가을철에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얻어 객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농한기의 정의를 작목별로 정하도록 중앙에 건의 또는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소관부서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개선
주택개량자금 지원 현실화	주택개량융자금이 가구당 13,000천원정도 지원되나 실제 60,000천원이 소요됨	주택개량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토록 건의

'94 행정사무감사

□ 총 평

'94行政事務監査는 初代議會의 네번째로 實施하는 監査로 그동안의 蓄積된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郡民의 날카로운 視覺으로 郡政全般에 對하여 詳細히 把握하여, 是正·處理토록 要求함으로써 보다 向上되고 發展된 監査가 實施되었다고 評價되며, 合理性에 主眼點을 두고 深度있고 폭넓게 實施한 結果, 郡民福利增進과 效率的인 郡政을 圖謀하는데 큰 成果를 擧揚하였음.

完全히 뿌리내린 地方自治時代에 발맞추어 住民의 代議機關에 依하여 實施된 監査로써 監査對象業務 또한 行政內部事項보다 住民便宜·懸案事項이 重點 實施되었으며, 指摘된 事項 또한 잘못의 原因을 分析하여 對策을 模索하는 한편, 制度的인 矛盾點을 찾아 發展的인 對案을 提示함으로써 豫防爲主의 監査가 되도록 하였음

그리고 今年 3月 16日과 7月 6日字로 地方自治法 및 同法施行令이 改正되어 3日以內의 짧은 監査期間을 7日로 延長함에 따라 豐富한 監査資料와 情報를 事前에 蒐集함은 勿論, 9個邑面과 事業場을 現地確認하여 現場監査에도 充實을 기하였음

事業場 確認에 있어서는 9個邑面의 21個 事業場을 無作爲 抽出하여 2日間에 걸쳐 郡에 保有中인 測定裝備를 活用하여 不實施工 與否를 精密하게 確認함으로써 建設業界에 新鮮한 衝擊과 새바람을 불어 넣는 한편, 今年을 不實工事 防止의 해로 정하고 있는 政府의 뜻과 視覺을 같이 하였음.

또한 行政事務監査 特委構成과 함께 71件의 監査資料를 監査期間 以前에 要求함으로써 充分한 資料를 確保하고, 今年度 主要業務推進狀況도 미리 報告받아 그동안 쌓은 議政經驗과 隨時로 收斂된 住民意見을 郡政全般에 對한 核心的이고 重要한

事項이 緻密하고, 詳細하게 監査되어 住民 欲求 充足은 勿論, 行政을 한 段階 發展시키는 契機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執行部의 낡은 官僚意識과 因習主意思想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所信이 缺如되고 대충 넘어 가기식의 回避性 答辯으로 神聖한 議會 監査의 焦點을 흐리게 한 點도 없지 않았음.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는 오로지 實績과 摘發을 爲하여 實施하는 上部機關의 業務監査와는 다른 角度로 多少 原論的이고 當爲性 있는 事項이 主要對象이 되어 制度上의 問題點 또는 地方行政 與件上 不可避한 事項이 指摘되는 境遇도 있지만, 政策이나 制度의 問題가 있는 事項은 上部機關의 強力한 建議를 通하여 改善·補完시켜 나가고 施策推進의 어려운 點들은 肯定的인 視覺에서 積極的인 關心과 推進力으로 業務를 隨行하면 解決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임.

監査結果 主要 問題點으로써는 一部業務는 每年 같은 內容이 指摘되고 있으나, 是正되지 않음으로써 議會의 指摘事項이 前年度의 反復이라는 나쁜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었고, 監査資料가 未洽하거나 漏落, 誤記事項이 發見되었지만 事務錯誤 또는 錯誤記載 等으로 辯明하고, 受監態度 또한 넘어 가기식 答辯이나 억지 論理를 主張하는 한편, 業務를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狀態에서 監査를 받는 等 多少 不誠實한 境遇도 없지 않아 行政事務監査가 質疑·答辯을 通하여 實施하는 點을 두고 볼 때, 監査機能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要因으로 作用하였음.

이러한 問題點에 對한 改善方案으로서,

첫째, 大幅強化된 行政事務監査權을 十分 活用하여 證人을 採擇 關係者의 證言을 要求하고, 證言 또는 陳述을 拒否할 時 過怠料를 賦課하는 等 強力한 對應策을 講究하고,

둘째, 每年 反復的으로 指摘되는 事務에 對하여는 徹底하게 原因을 糾明하여 關係者의 問責 等으로 再發을 防止토록 하는 한편,

세째, 불성실한 資料提出 또는 答辯은 執行部의 깊은 反省과 함께 自體 敎育을 通하여 早速히 是正해야 할 것임.

비록 行政事務監査 期間이 7日間으로 延長되었지만, 郡 行政全般監査하는 데는 多少 무리가 있어, 20日間으로 되어 있는 現行 國政 監査期間과 비슷한 期間으로 延長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郡政의 全般에 걸친 主要事務는 더욱 細密하고 深度있게 監査되었으며, 該當 部署 業務의 規模에 따라 包括的이고 集中的인 監査를 實施함으로써 보다 成熟되고 內實있는 監査가 이루어 졌다고 평가됨.

○ 부서별 감사실시현황

부 서 별	건 명
계	75건
기 획 실	○ 예산편성의 정확성 ○ 행정소송 업무 ○ 통계년보와 통계수첩의 차이점 ○ 풀보조 예산지원 계 4건
문화공보실	○ 문화재 관리 ○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현황 ○ 군민상 시상 ○ 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금 지급 ○ 면세용도 물품증명 타당성 계 5건
내 무 과	○ 공무원 연금제도 ○ 행정 참고도서 구입 ○ 대학생 부업알선 ○ 청원경찰 제복 구입 ○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조례 전환 ○ 민원창구직원의 일용직 근무자 배제 ○ 행정전산장비 보급 현황 ○ 읍면 감사결과 조치현황 계 8건

부 서 별	건 명
사회진흥과	○ 구간별 꽃길조성 현황 ○ 자전거 전용차선 실시 ○ 청소년업무의 다원화 ○ 시설부대비 집행상황 계 4건
재 무 과	○ 군 청사 도색내역 ○ 군청버스 운행실적 ○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 ○ 동절기 공사시행 계 4건
지 적 과	○ 지적공부관리 ○ 지적 불부합 토지현황 계 2건
사 회 과	○ 보훈 4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 ○ 장애자 재활대책 ○ 영세민 주택 개보수비 우선 선정방법 ○ 자동판매기 설치 및 관리실태 ○ 노동상담소 운영 계 5건
가정복지과	○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및 시설점검 실태 ○ 여성교육 강사 초빙 현황 ○ 합동결혼식 추진현황 ○ 어린이집 운영실태 계 4건

부 서 별	건 명
환경보호과	○ 쓰레기 종량제 홍보 ○ 환경정리원 사역 ○ 쓰레기 자원화 계 3건
지역경제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 ○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기금 출연금 계 2건
산 업 과	○ 농민후계자 관리 ○ 농어촌 가로등 점검 ○ 농어민후계자 대회 ○ 위원회 운영 ○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계 5건
축 산 과	○ 무허가 축산시설 ○ 가축 통계조사 계 2건
산 림 과	○ 임업협동조합과 도급사업 내역 ○ 산불감시원 고용 계 2건
건 설 과	○ 부실공사 방지대책 ○ 노상적치물 단속 ○ 도로굴착 사업 ○ 하천부지 관리 계 4건
도 시 과	○ 맑은물 공급대책 ○ 도시계획도 활용 ○ 달성공단 고지대 배수관 매설공사 계 3건

부 서 별	건 명
주 택 과	○ 농촌주거환경 개선대책 ○ 무허가 건축물 실태 ○ 건축물 온돌시공자의 한계 계 3건
민 방 위 과	○ 주유소 및 대형건물 소방점검 ○ 자율방범대 관리 계 2건
농 촌 지 도 소	○ 농촌지도 관련행사 개최 ○ 시범포 생산 농산물 처리실태 ○ 농기계 및 농기구 대여 ○ 이륜차 유지관리 ○ 4H후원회 및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 계 5건
보 건 소	○ 예방접종과 주사기 구입의 불합리 ○ 보건소 운영여비 편성 ○ 보건소 친절봉사 대책 ○ 적출물 처리 실태 계 4건
수 도 사 업 소	○ 정수약품 수급 ○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계 2건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의 예식장 활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 대책 계 2건

□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가. 처리요구사항(10건)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달성군민상 시상 이행	달성군민상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자랑스런 군민상」을 시상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은 물론 예산조차도 계상하지 않고 있음	조속히 시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군민상을 시상토록 조치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이중 지원	주택개량과 화장실 개량사업비를 2가구에 대하여 이중지원하였으며, 화장실 개량사업과, 입식부엌 · 목욕탕 개량사업에는 3가구에 중복지급하여, 지역주민에게 고른 수혜가 가도록 하지 않고 편중되게 지원하였음	해당 농가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하면 회수조치하고 농가에 고른 혜택이 가도록 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동절기 공사 과다 발주	'93년도 예산중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소요공기도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시설공사인 옥포면 기세리 안길포장공사 외 17건을 12월에 발주하여 동절기 시공 또는 연도 폐쇄기가 임박할 때까지 시행하였음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설공사를 조속히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조례 미전환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치
자전거 전용차선 미설치로 예산 사장	자전거 타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민간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당초예산에서 전용차선 설치비를 승인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 사장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 후보지를 조속히 물색하여 차선 설치토록 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무허가 축산 시설 실태조사	논공면 상리 등 군내에 무허가 축산시설이 산재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음	년말까지 무허가 축산시설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
농기계 및 농기구 대여실적 부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및 농기구 대여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불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구는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지 말고 보다 많은 농민이 농기계 및 농기구를 이용토록 조치
민원창구직원의 정규직 공무원 미배치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창구 직원을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의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용직 근무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민원봉사행정의 취지에 어긋남	조속히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

건 명	지 적 사 항	처 리 요 구 사 항
환경정리원 사역기준 불합리	달성군 환경정리원 복무규칙 제4조에 의하면 환경정리원의 사역기준은 "만25세이상 45세미만"이며, 청소감독원 및 청소인부는 "만25세이상 50세미만"으로 기준이 불일치할 뿐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환경정리원이 45세이상인 자가 상당수 있어 이를 제한하면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복무규칙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사역기준에 맞게 사역조치
체납처분 실적 저조	군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8명이나 있으나, 조치 실적이 "징수독려"가 21건으로 처분을 극히 미온적으로 실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체납세를 일소할 것

나. 시정요구사항(14건)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산림사업의 도급시행 불합리	산림행정에 있어 임도개설 각종 조림사업 등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5호 및 산림조합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의 적은 인력과 중장비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초래	산림사업시행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사업은 가급적 직영으로 실시하여 예산 절감토록 조치
정수약품수급 미흡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액체 황산 알루미늄을 10,630㎏, 치아염소산나트륨을 800㎏구입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수약품구입 잔액이 3,700만원 발생하여 정수약품수급에 소홀하였음	정수약품 수급에 철저를 기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정 소요액을 예산 반영토록 할것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자동판매기 관리 허술	군내에 수없이 설치되어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가 허술하여 군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년1회만 실시하고 있음	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월1회이상)실시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조치
지적공부 관리 소홀	지적공부 및 토지전산화 토지대장 정리 등 군민재산관리를 위한 업무를 일용인부에게 맡기고 있어 공부훼손 또는 전산입력 착오 등으로 민원피해 발생 우려	지적공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피해 발생사전 예방
교통안전시설비 사후관리미흡	교통안전시설비 등을 경찰서에 예산지원하고 있으나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사실이 없이 사후관리 소홀	예산지원 후 사업시행 여부와 계약내용 및 전도자금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전도자금 지출계산서를 징구토록 조치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이용저조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을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예식장으로 개수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편의제공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시상금 편중 과다 지급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폐품수집 장려금, 쓰레기자원화 우수마을, 단체, 기관에 대하여 시상금을 과다 편중되게 지급하고 있음	시상금 지원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쓰레기 자원화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
대학생 부업알선 미흡	대학생의 동계, 하계 방학기간중 부업알선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서류복사, 휴지통 비우기 등으로 사역하고 있어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타지역 대학생도 고용하고 있음	불필요한 대학생 부업알선을 폐지토록 조치
장애자 지원대책 소홀	장애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재활의지를 심어 주어야 함에도 장애자 재활전진 대회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예산에 250만원 계상하여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비에 15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급식비는 80만원으로 계상하여 전시행정을 초래하였음	장애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홍보물 설치 등을 지양하고 소외된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의지를 고취토록 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노상적치물 단속소홀	불법 노상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단속을 미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통행불편 초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여 한번 단속을 실시한 지역에는 재차 적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합동결혼식 장소 활용 미흡	불우한 군내 동거부부,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17쌍 부부에게 실시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들여 예식장으로 개수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을 활용하지 않고 사설 예식장을 사용하여 장소활용에 미흡하였음	앞으로 합동결혼식 주선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을 활용하여 주민홍보효과를 동시 거양토록 조치
포장공사 부실시공	9개읍면 사업장 중 21개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하였으며, 그중 가창면 주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9건의 공사에 대하여 포장 두께 측정 장비(굴착기)로 측정한 결과 일부는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처리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에 소홀하였음	감사 특위의 확인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서 자체 정밀조사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적법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건 명	지 적 사 항	시 정 요 구 사 항
당초예산 과다 편성	현풍휴게소 으뜸산품 판매점 예냉시설을 구입·설치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하여 150만원만 집행함으로써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시켰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금액만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
농촌지도용 이륜차, 컴퓨터 구입 대체 및 장비 유지비 과다 편성	농촌지도용 이륜차를 당초예산에 4대 구입토록 승인하였으나 농촌진흥원의 국고보조사업변경 승인만으로 예산변경 절차없이 사무용컴퓨터 2대를 구입하였으며 불필요한 이륜차에 대하여 장비유지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음	향후 예산 변경절차를 거친후 구입토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조치

다. 건의요구사항 (6건)

건 명	지 적 사 항	건 의 요 구 사 항
군청버스 운행	군청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자가용이 날로 늘어가는 이유가 주원인일 것이며,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35인승 버스를 거의 운행하지 않고 각종 행사 또는 산불진화에 따른 직원 수송시에만 사용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중형버스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군청과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버스운행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보유중인 군청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건축물 온돌 시공의 한계	달성군 건축조례 제4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단법인 온돌시공 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열관리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건의요구사항
	시공협회에서 가정주택 난방 즉 보일러와 온돌시공을 같이 하고 있어 이를 이원화 시켜 군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	내년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군민들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다각적인 홍보가 미흡함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생활 쓰레기 처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겨울철 화재 예방	겨울철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이 요구되고 있음	군내 대형건물과 주유소 등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화재 예방 철저
부실공사 방지 대책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해로 정하여 공사장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 사업현	공사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사감독에 간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치

건 명	지 적 사 항	건 의 요 구 사 항
	황과 공사감독자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주민홍보가 미흡함	
국고대여 장학금제도 불합리 예방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하며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대여는 연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 대상자에 대한 수혜 과정을 한단계 더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 관리공단의 운영미흡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요구

행 정 사 무 조 사

달성공단상수도암모니아성 질소 유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1. 조사목적

'94. 1. 3 ~ 1. 5에 달성공단 상수도에 유입된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의 출처와 유입경위를 파악하여, 해당 물질 유출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수원 오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조사범위

낙동강 수계에 있는 금호강, 달서천, 진천천, 대명천 등 주요 오염하천과 성서공단, 이현공단 등에 대한 해당 물질방류사실 확인과 이에 따른 주요 폐수처리시설의 미처리폐수 무단방류사실조사, 그리고 달성공단상수도 원수관리 및 정수실태

3. 조사기간

'94. 1. 10 ~ 1. 11 (2일간)

4. 조사방법

- 주민과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는 민 · 관 합동조사
- 현장중심의 심문조사 위주
- 수질검사 등 각종 자료에 의한 서류조사 병입
- 검증된 정보와 자료에 따라 해당 물질 방류가 의심 또는 인지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인 방문 정밀조사

5. 주요조사 실시내용

가. 하천별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조사

하 천 별	조 사 결 과	비 고 ('94. 1. 5 14 : 00현재 수 질 검 사 결 과)
관 내 하 천 (천내, 우경, 김포천)	성분발견 안됨	
금 호 강	다량검출	NH3-M 2,4㎎/ℓ
달 서 천	다량검출	
대 명 천	기준치 이상 검출	
진 천 천	기준치 이상 검출	

나. 암모니아성 질소 역류추적에 의한 시설별 조사

시 설 별	조 사 결 과	비 고
대구시 쓰레기매립장	암모니아성 질소 및 기타 물질방류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	암모니아성 질소 및 기타 물질방류	
대구시 분뇨종말처리장	암모니아성 질소 다량방류	
성 서 공 단	암모니아성 질소 다량방류	
이 현 공 단	암모니아성 질소 및 기타 물질방류	

다. 달성공단 상수도원수관리 및 정수실태

- 상수도 사고의 직접적인 관계없음

6. 조사결과 총평

금번 달성공단 상수도 원수오염사고는 조사결과 달성공단상수도 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호강과 달서천, 대명천, 진천천에서 고농도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겨울 가뭄속에 낙동강의 원수부족으로 자정능력이 희박함에도 금호강 수계에 위치한 대구시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과 달서천과 대명천에 위치한 이현공단 및 성서공단에서 신정연휴기간 중 고농도의 악성 폐수가 다량 방류되었다고 추정됨

따라서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 유입은 전적으로 대구직할시의 소홀한 폐수관리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조사 되었음

7. 조사결과 조치의견

— 별도 제출된 결의안 내용과 같음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한 결의안

제출년월일 : '94. 1. 11

제 출 자 : 조사특별위원회

1. 주 문

달성군의회는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환경처는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하여 환경감시 중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제2의 페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둘째, 대구직할시는 폐수관리 소홀로 금호강과 대명천, 진천천으로 고농도 악성 폐수를 다량방류, 낙동강으로 흘려보냄으로 하류에 위치한 달성공단 상수원에 '94. 1. 3부터 1. 5사이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사고를 유발시켜 이 지역주민 건강을 크게 해쳤음을 인정하고, 즉각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회에서 대명천 · 진천천 · 달서천 등 금호강에 유입되는 각종 하수실태를 조사한 바 성분분석 결과를 차치하고 육안에 의한 식별만으로도 극심한 오염상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에 의한 낙동강 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달성공단 상수도의 항구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를 원수오염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달성공단지역에 조기확대공급 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경상북도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구시 상수도의 달성군 공급을 대구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및 교섭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조기공급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상수도 조기공급에 필요한 급수시설비 부족분을 도비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가) 달성군은 군내 194.75㎢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구시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낙동강 수계의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에 폐수로 보답하고 있어, 대구시에 의한 수질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나) 금번 '94년 1월 3일부터 1월 5일사이에 발생한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 대량 오염사고에 대하여 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 그 원인이 대구시에서 금호강 등으로 고농도 악성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발생된 사고로 조사되었음

다) 따라서 대구시가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건강을 무시한채 수질오염방지에 소홀하고 있음은 이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으므로

라) 환경처에 환경감시 총괄기관으로서 낙동강에 대한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마) 대구시에는 철저한 폐수관리와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달성공단지역 조기공급을 건의하고자 하며

바)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달성공단지역 조기공급을 협의해 줄 것과 대구상수도 조기공급에 필요한 급수시설비 부족분을 도비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決　算　檢　査

결 산 검 사

'90 결 산 검 사

□ 1990년도 달성군의 결산결과는 세입결산액 42,122,779천원, 세출결산액 33,572,389천원으로써 예산액 45,959,390천원과 대비하면 세입은 91.6%, 세출은 73%이며, 세계잉여금은 8,550,390천원임

□ 재정운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그중 중요사항은 세입예산 부문에서 지방세 징수가 당해년도분은 99%의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킨 반면 과년도분은 27%에 불과하며,
세입판단 소홀로 지방세 473백만원, 세외수입 2,449백만원, 계 2,922백만원(총 수납액의 16%)을 예산편성에 누락시킴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시켰음

□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산업진흥 및 사회복지 향상에 중점투자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불용액이 일반회계 4,112백만원, 특별회계 1,059백만원, 계 5,172백만원(총 예산액의 11%)이 발생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으며,
각종 건설사업의 준공처리에 있어 30,000천원이상 공사 46건 중 32건(공사비 3,657백만원)을 같은 계에서 공사감독과 준공 검사를 함으로써 공사준공처리의 객관성을 상실케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는 9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의 미수금이 111백만원이나 되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17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에 계상치 않은 등 특별회계운영에 소홀하였음.

□ 이번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청됨.

□ 지 적 사 항

○ 불용액 과다 발생
○ 사업비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
○ 새마을사업 시행계획 소홀
○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
○ 세입금 관리 소홀
○ 자체 수입원 확보 미진
○ 세외수입 미수액 과다
○ 잡수입 과징 부적
○ 사용료수입의 미수액 발생 부당
○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과다
○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자금 사장
○ 도축장 폐수처리공사 추진 장기화

○ 보조금 관리 소홀

○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 편성 소홀

○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당

○ 가창도로(2차) 확장포장사업비 집행부진

○ 도로 교량사업 미진

○ 특별회계 세입재원 판단 소홀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소홀

○ 융자금 관리 부적

○ 대형사업 추진 부진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

○ 세입세출외현금 취급소홀

○ 과년도 지방세 징수 부진

○ 기타 재산임대수입 가산금 누락

○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 방치

'91 결 산 검 사

□ 결 산 총 괄

'9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액 51,861,000천원과 전년이월사업비 7,214,789천원을 포함한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 59,075,789천원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56,968,538천원, 세출결산액은 47,384,531천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9,584,007천원이며,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세입액 39,799,725천원, 세출액 31,963,493천원, 차인잔액 7,836,23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의 재정규모의 신장을 보였으나, 재정자립도는 55.5%로 '90년도 56%와 별 차이가 없음.

1인당 납세액은 103,270원으로 연간 가구당 389,02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음.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17,168,813천원, 세출은 15,421,03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70%, 세출은 103%의 신장을 보였으며, 이는 주로 골재판매량 증가로 인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급신장에 따른 것임.

□ 세 입 부 문

세입금 징수액은 56,968,538천원으로 예산현액 59,075,789천원 대비 96%의 징수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92%)보다 향상되었으며,

부과 대 징수실적도 99%로 재정력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과년도 징수 실적은 27%로 극히 저조함.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당해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양여금은 총 세입액의 1.7%인 684,701천원이 중앙으로 부터 양여되어, 군재정력향상에는 별로 기여치 못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90년 4,577,609천원

에서 '91년에는 3,085,939천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7% 밖에 되지 않아 의존재원이 지방재정기반 확충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

□ 세 출 부 문

예산현액 59,075,789천원 중 80%인 47,384,53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차액 11,691,258천원은 익년도 이월 5,292,558천원과 불용액 6,398,700천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집행잔액을 과다발생케 하였음.

특히 일반회계 중 경상비 집행 비율이 45%(전년도 42%)로 매년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보면 산업경비가 10% 감소된 반면('90년 23% → '91년 13%), 지역개발비가 11%나 높아지고 있어('90년 31% → '91년 42%), 대형공사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군세가 바뀌어 감을 알 수 있음

□ 주요지적 사항

1)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성립된 예산 중 연도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불용액 6,398,700천원, 명시이월액 711,280천원, 사고이월액 4,581,278천원, 계 11,691,258천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20%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을 발생케 하였음

이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에도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며, 명시·사고이월액 과다발생은 년도내 원인행위나 자금집행을 할 수 없음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많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구조물공사 부가 등의 이유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명시·사고이월 처리를 한 결과로 사료됨

2) 예산집행 소홀

총계예산주의원칙에 따라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또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목적외 사용을 해서는 아니되며,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결산결과, 예산에 없는 공사를 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사업발주를 하거나, 예산성립된 사업의 미집행, 예산초과 집행 등 임의적으로 예산집행한 사례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었으며, 일명 기관장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포괄사업비도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사업을 가급적 여러지역에 분산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다수 주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특정사업에 투자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3) 행정 편의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집행

대 주민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집행계획에 의하여, 년도내 적기에 자금집행하지 않고 사업완성후 연말이나 연도폐쇄기간 중에 일괄 자금 집행하는가 하면, 소규모공사나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사업은 읍면으로 전도경리하는 등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법상 행위제한 구역에 건축공사를 계획하는가 하면,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가 부지확보문제로 사업을 완료치 못한 사례나, 주민이나 차마의 통행이 별로 없는 곳에 소교량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선정과 사업계획수립 잘못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전과 사업계획수립 잘못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업도 있었음.

4) 기　　타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작성에 있어, 오기나 계산착오 부분이 많이 나타나 결산검사에 곤란과 지체를 가져왔으므로, 차후 결산서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임

개별 지적사항은 별첨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음

□ 제도 개선사항

1) 특별회계설치 억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들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전출금이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 26,259,000천원의 3.5%인 927,156천원으로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특별회계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특별회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즉, 골재판매수입의 증가로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수입 7,156,540천원(미수령 징수교부금 포함), 지출 6,331,046천원, 수지 825,494천원〕을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수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간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 100,000천원〕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을 합리화 함으로써 일반회계 자금의존도를 낮추어 나가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자금융자실적이 전혀 없거나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성질이 유사한 이들 2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1개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빈번한 추경지양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단일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급적 본예산에 충실을 기하여 빈번한 추경은 지양해야 할 것임.

일반회계의 경우 3차례의 추경으로 증가된 예산액이 모두 8,075,117천원(순세계잉여금 제외)으로 최종예산 38,557,000천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케 하였음.

앞으로 추경예산 회수를 가급적 연1회정도 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과 낭비적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임.

3) 지시위주의 국도비보조금 교부

국·도비 보조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이의 적정수준 확보는 현행 지방재정상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의무로 사실상 자체재원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에 의한 보조가 원칙임에도 현재의 보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것 보다 동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상부지시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국비보조 119건 중 지시보조 105건)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상급관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국도비보조사업 시행을 지양토록 정책건의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임.

□ 결　　론

예산운영에 있어 아직도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정개선할 분야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것은 조속히 시정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사항은 상부건의 등으로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예산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 적 사 항

○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사장
○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부실운영
○ 군영주택건립 차질
○ 포괄사업비 부당집행
○ 읍면포괄사업비 지연집행
○ 특별회계융자금 회수소홀
○ 전출금 소요판단 부적
○ 사업장 선정소홀
○ 예산초과집행
○ 보조금관리소홀
○ 경지정리주민부담금 징수소홀
○ 사업장선정 잘못으로 공사부실준공
○ 농공지구조성사업비 집행부적
○ 사업비전액 미집행
○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당
○ 공사설계변경 과다

'92 결 산 검 사

□ 총 괄 부 문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순계 예산액 56,271,000천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액 5,292,554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61,563,554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1,700,024천원, 세출결산액은 50,884,470천원이며, 잉여금 5,691,644천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세입 42,677,847천원, 세출 36,991,94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7%, 세출은 15%의 신장을 보였으며, 세출신장율이 높은 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재정자립도는 63.9%로 '91년도 55.5%보다 8.4포인트 높아 졌으나, 재정자립도 63.9%중에는 해당사업에만 사용되는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금 4,514,765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지방채 10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자립재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 재원을 제외시키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53.1%정도임.

9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19,022,177천원, 세출은 13,972,53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11%신장되었으나 세출은 오히려 9% 감소하였음

특별회계 세출의 감소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미집행, 익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임.

□ 세 입 부 문

세입금 징수액은 61,700,024천원으로 예산현액 61,563,554천원 대비 100.2%의 징수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 96%보다 향상되었으며, 부과 대 징수실적도 99%로

좋은 징수실적을 보였음.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월금, 지방채 등 부과징수과정 없이 수납되는 세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부과 대 징수실적은 98% 수준이며, 현년도 징수실적은 좋은 반면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31%로 매우 저조하여 납기내 또는 당년도내 완전징수가 중요시 되고 있음.

지방세가 전년에 비하여 2,336,793천원이 더 징수되어 2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기반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90년 4,577,609천원, '91년 3,083,939천원, '92년에는 2,547,321천원으로 매년 20~30%씩 줄어들고 있으며 도세징수 호조로 징수교부금은 매년 증가하여 전체 세입액의 11%를 차지, 재정자립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작년수준인 전체 세입액의 23%가 교부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늘어나고 있어 자주재원으로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세 출 부 문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액 56,271,000천원 중 45,591,817천원 집행함으로써 80%의 집행 실적을 보였으며, 미집행된 예산은 명시·사고이월액 5,123,910천원과 불용액 5,555,173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세출액에 경상경비인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90년의 9%와 '91년의 11%와 비교할 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년과 '91년의 52%에 비하여 '92년은 46%로 크게 낮아지고 있어 경상비의 증가가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투자비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능별로 볼때도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3%증가한 반면 지역개발비는 3%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별회계는 세출은 예산액 18,607,000천원 중 75%인 13,972,529천원만이 집행되는 부진을 보였는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년중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 사업량감소로 자금융자가 줄어 들었는데 그 원인이 있었음.

□ 주요지적사항

1) 미집행 예산 과다발생

예산은 한해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금전으로 표시한 계획서로서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에 불과하지만 세출예산은 예산의 목적, 금액, 시기를 의회로부터 구속받는 공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은 그 목적대로 소요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나 '92년도 세출예산 56,271,000천원 중 연도내 집행된 전체의 80%인 45,591,917천원에 불과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불용액 5,555,173천원, 명시이월액 180,000천원, 사고이월액 4,943,910천원, 계 10,679,083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집행하였음.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한 원인과 집행과정에서도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자금집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 시키게 된 것으로 검사되었음.

2) 자금 및 예산운영 미흡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월과 수입증가로 추가

적인 재정지원이 불필요함에도 일반회계에서 560,000천원의 자금을 전출하여 자금 전입된 특별회계는 이를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자금사장 시킨 사실이 있으며, 예산편성을 정확한 추계로 의하지 않아 당초 및 두차례 추경에서 예산 과잉편성하여 이를 연말 제3회 추경에서 2,703,707천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었음.

3) 예산집행 소홀

예산의 집행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나 정수장 부지매입 등 일부사업은 예산 집행하지 않거나 새마을교육 여비와 같이 예산초과 집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묘포장 파종상 설치비를 묘포장 관리 인부임으로 변칙 지출한 건이나, 우록지 보수공사를 추경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시켜 사업발주한 사례, 포괄사업비를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숙원사업에 사용치 않고, 다수주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진지보수 등 특정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여러곳에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사업인 주민소득사업자금융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세출예산 126,000천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고, 폐품수집운동 예산 9,050천원도 전액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 방치된 사실도 있었음.

4)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수입 수납질서 문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보다 높아 전체 세입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관심부족과 업무소홀로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하지 않고 대부분 수납분만 사후징수결정하고 있

어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세외수입미수금 정리도 시효 완성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소홀히 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납분만 사후 조정함으로써 실제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징수부상 미납액이 나타나지 않아 미수납금 정리를 징수부에 의하지 않고 별도대장에 의하고 있어 세입금 수납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었음.

특별회계도 각종 융자금회수를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 고지수납하지 않고, 자진 수납분만 사후 조정하고 있어 미수금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납액 35,687천원을 '92년도로 연도이월 결정하지 않아 과년도 수입이 현년도로 수납되고 있었으며, 또한 현년도로 잘못 수납된 과년도 수입을 현년도에서 다시 사후징수 결정하여 이중 징수결정하는 등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수입 모두 세입금 수납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음.

5) 기 타

그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군비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에 많은 군비를 부담하여 자체재원을 잠식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세출과목 해소에 맞지 않는 지출, 종료된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계상, 세입금 및 세출금 단수절사 미실시 등 다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읍면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한 사업을 출납폐쇄기간 중에 원인행위하여 지출하는 등 읍면회계사무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많았음.

개별 지적사항은 별첨 결산결과 지적사항과 같음

□ 제도개선사항

1) 계속사업에 대한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지원의 계속성 보장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사고이월제도는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년도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를 계속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전체사업을 일정 규모로 수회 분할해서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또한 매년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한해에 50억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자금이 1년간 사장되는 불합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는 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이 일정치 못하여 장기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계속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보조신청된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을 상급관서에서 일정액 계속 보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계속비로 매년 년부액만 당초예산에 계상·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익년도로 재차이월 사용함으로써 계속사업을 단년도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의 사고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정리 및 운영개선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요소로 잡다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들 수 있지만 '92년도에 9개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재정규모가 빈약한 이들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자금전출이 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성격인 치수사업특별

회계 전출금을 제외하고 연간 1,406,11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90년의 253,675천원과 '91년의 154,000천원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특별회계의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특별회계도 정리 내지 운영합리화로 일반회계 자금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야 할 것임.

'92년중 사업실적이 전무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동 특별회계사업과 유사한 농촌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농정사업과 영세민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점차 심해가는 수질의 오염으로 맑은물 공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수지불균형이 예상되지만, 현재 상수도사업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가 전혀 없으나 사업자체는 지방사무이지만 수질의 오염은 국가적인 사항인 만큼,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개선해서 군비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3) 결산부속서류 작성 충실

'92년 결산부터 결산부속서류가 종전의 26가지 서식에서 16가지 서식으로 대폭 줄어 시설비 집행조서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조서, 융자금 관리상황, 자금운영상황, 포괄사업비 등 중요한 서식이 누락되었으며, 그나마 작성대상 사업도 1억원 이상으로 국한시켜 결산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결산부속서류의 간략화로 세밀한 결산검사가 곤란하였음.

내무부가 결산부속서류의 작성을 간략화하게 한 것은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기능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대로 결산부속서류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할 것임.

4) 기타 건의사항

'91년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건의된 적이 있는 빈번한 추경 지양과 지시위주의 국도비보조 근절은 '92년에도 개선되지 않았음.

우리나라는 예산단일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추경제도가 있으나, 추경제도가 없는 일본은 당초예산에 충실을 기하여 예산대로 사업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앞으로 추경회수를 가급적 연1회정도로 줄여서 빈번한 추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야 할 것임.

그리고 보조기관 지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는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보조할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여 자체재원을 잠식시킬 수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 결　　론

지금까지 잦은 회계감사로 세출부문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대체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음.

그러나 세입부문은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관심부족으로 아직까지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부과징수와 수납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원발굴에도 등한시 하는 등 앞으로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분야임.

그동안 오랜 행정관행으로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개선 할 사항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올바른 재정운영으로 잘못된 점은 하루빨리 시정하고 제도적 모순사항은 상부 건의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 목 록 〉

1. 포괄사업비 집행부적
2. 사업발주 지연
3. 특별회계 전출금 소요판단 소홀
4. 전년도 미수납액 연도이월 징수결정 미실시
5. 예산 미집행
6. 예산 사장
7.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미준수
8.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미실시
9. 예산과목 경정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10. 인부임 변칙지출
11. 세출예산 지출과목 부적
12. 세외수입 미수액 정리소홀
13. 세외수입 수납절차 미비
14.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미흡
15. 폐품수집운동 예산 미집행
16. 예산초과 집행
17. 사업계획 소홀로 미집행 예산과다 발생
18. 수입금 및 지출금 단수절사 미실시
19. 공사설계변경과다
20. 예산과잉편성
21. 예산성립전 지출원인 행위
22. 사고이월제도 편법사용

'93결 산 검 사

□ 총 괄 부 문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74,658,000천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액 4,986,180천원을 포함한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 79,644,180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0,474,035천원, 세출결산액은 64,110,739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907,235천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세입액 50,686,224천원, 세출액 40,701,795천원, 차인잔액 9,984,42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 각각 27.3%의 신장을 보였으며, 세입세출 신장율이 높은 것은 지방양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재정자립도는 58.8%로 '92년도 63.9%보다 5.1% 낮아졌으나, '92회계년도의 재정자립도 중에는 자립재원으로 볼 수 없는 명시 및 사고 이월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재정자립도는 '92년의 53.1%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총 세입은 29,787,811천원, 세출 23,408,94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56%, 세출은 67%의 신장을 보였으며, 이는 골재 판매량 증가로 인한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급신장에 따른 것임.

□ 세 입 부 문

세입금 징수액은 80,474,035천원으로 예산액 79,644,180천원 대비 101%의 징수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100.2%)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부과 대 징수실적도 99%로 재정력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33%로

극히 저조하여 납기내 또는 당해년도내 완전 징수가 요구되고 있음.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2,833,445천원이 더 징수되어 22.3%의 신장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도 전년도 보다 30% 이상 늘어 났으며 도비보조금도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 재정자립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1.5% 증가한 전체 세입액의 24.2%가 교부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세 출 부 문

세출예산현액 74,658,000천원 중 79%인 59,124,559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된 예산은 명시이월액 224,000천원, 사고이월액 8,232,061천원과 불용액 7,077,380천원 등 많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7,830,000천원 중 81.7%인 39,084,46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경비인 물건비 집행 비율이 15%로 '91년 11%, '92년 14%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투자비의 비율은 41%로 '91년 52%, '92년 46%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경상비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인 투자비 감소로 지역개발 확충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은 예산액 26,810,000천원 중 74.6%인 20,022,09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낮은 집행율(18%)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5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47%)의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과다한 사고이월사업비(3,996,294천원)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집행 실적을 보였음.

□ 주요지적사항

1)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 의회로부터 예산의 목적·금액·시기를 승인 받아야 하는 공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소요되는 금액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93년도 세출예산 74,658,000천원 중 당해년도내 집행한 예산은 59,124,559천원으로 79%에 불과하고 불용액 7,077,380천원, 명시이월액 224,000천원, 사고이월액 8,232,061천원 계 15,533,441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음.

이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되며,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의 과다 발생은 당해년도내 원인행위 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연도내에 많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무리하게 편성 하여 공사기간 절대부족, 동절기 구조물 공사 불가 등의 이유로 많은 예산을 명시·사고이월 시킨 결과로 판단됨.

2) 미흡한 예산운영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회계는 과년도 수입액이 전혀 없으며, 융자금 회수금도 미수납이 예상됨에도 수납분만 사후 징수결의하여 예산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시 과년도수입 중 익년도 이월액 보다 적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여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많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 등 추가 재정지원이 불필요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14,942천원을 전출하

여 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되었음.

3) 행정 편의적인 예산 집행

일용인부를 사역함에 있어 상용인부를 제외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연 300일 이상 고용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상시 고용함에도 사역인원과 횟수를 증가시켜 편의적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들이 사업장 현지 근무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아 상대적인 소외감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4) 예산집행 소홀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당해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또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 의회의 승인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발주하거나 예산 성립된 사업의 미집행, 초과집행 등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사례가 여러곳에서 지적되었음.

특히 포괄사업비는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여러 지역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다수주민의 수혜와 거리가 먼 자연 휴양림내 소나무 이식비, 문화재 담장보수공사 등 특정사업에 사용한 건이나, 설계용 서식 인쇄비를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과목에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건, 각종 통신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로 집중 지출한건, 민원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을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가 기수단 양복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례,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사장 시킨 사례, 초지 대리 관리자 지정 신문 공고료를 전액 집행하지 않고 각종 서식을 유인해서 변칙 지출한 건, 화원 천내 하수관리 준설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승인예산 보다

초과 집행한 사례등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많았으며, 홍보위원 강사수당은 '91년도부터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경시에 전액 삭감 조치한 사항, 여론 모니터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토지등급 조정 위원회 수당 등의 각종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시켜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도 있었음.

5) 세외수입 · 특별회계수입의 수납질서 문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세수입에 버금가는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심부족과 세원발굴 노력의 미흡으로 대부분 수납분만 사후 징수결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었음.

특별회계 또한 각종 융자금 회수에 있어 부과 징수방법에 의한 고지 · 수납을 하지 않고 자진 수납분만 사후 징수결의 하여 징수부상의 미수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납금 징수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이월액을 현년도에 적게 편성하여 세입금 수납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었음.

6) 기　　타

그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고액의 도비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세출과목 해소에 맞지 않는 지출, 시설부대비 중 과다한 여비지출 사례,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계수 착오나 오기부분이 많이 나타나 결산검사의 혼란과 지연을 가져온 사례, 국 · 도비 관련사업 및 부대비의 전액 지출, 공공요금을 납기 경과후 지출한 사례 등 업무지식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음.

한편, 읍면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회계업무 미숙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크게 요구되었음.

주요 지적사항은

가창면의 경우, 면장 포괄사업비를 면청사 마당 포장비로 집행한 건

다사면, 이천리 관정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발주를 동절기에 실시한 건

하빈면, 봉촌2리 간이상수도 공사의 계약보증금을 부족 징수한 건과 관급자재 수급을 지연한 건

옥포면, 차량수리를 허가된 업체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업체에 수리한 건

논공면, 남1리 간이상수도사업이 '93.6.14 준공되었음에도 '93.10.23에 공사비를 늦게 지출한 건

유가면, 유가사 공중변소 수거비를 품의서 없이 과다 지출한 건

구지면, '93회계년도 예산임에도 '94.1.10 원인행위하여 지출한 건 등 여러곳에서 회계질서가 문란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물품 구입시 관내구입 가능함에도 관외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음

□ 제도개선사항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집행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계약은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 제76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의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건에 대한 공종별 기술적 여건과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일반 경쟁과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법을 적용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전체를 수의계약하여 1,163,000천원의 98.6%인 1,146,740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일반경쟁에 의한 대규모사업에 비하

여 단 한건의 설계 변경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경쟁보다 도급액을 높게 지출함으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일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계약방법을 채택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도 효과가 클것으로 사료됨.

2) 명시 · 사고이월사업 사전예방

각종 사업에 있어 매년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명시 · 사고이월은 국도비 보조금을 상급관서에서 뒤 늦게 지원함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도로확장 등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주민수혜가 높은 숙원사업이 당해년도내 시행되지 못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

이는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사업부서에서 보상 · 공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촉박한 동절기에 불가피한 명시사고이월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오고 있으며, 적법한 수용절차를 갖추지 못함에 따른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그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대비하고, 보상금 지급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한다거나, 상부 건의 등을 통하여 국 · 도비 보조사업비를 상반기에 전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사전 방지하여야 할 것임.

3)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계속적 보장

사고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임에도 국도비 보조나 교부세 지원 규모에 따라 전체사업을 분할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연간 80억원의 막대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여 1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앞으로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상급관서에 건의하여 보조신청된 사업은 일정액을 계속 보조토록 하고 집행잔액은 익년도로 이월사용함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어 발생되는 사고이월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4) 지시 일변도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 수준 확보는 지방재정상 바람직한 사항이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의무는 사실상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보조가 원칙임에도 현행 보조금 교부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지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양토록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기타 건의사항

'92년 결산검사시에도 건의된 바 있는 결산 부속서류 작성에 있어 축소시킨 서식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포괄사업비, 자금운영상황등 중요한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단일사업에 수차의 추경으로 사업비 증감이 빈번히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계상 함으로써 빈번한 추경을 지양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근절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편성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를 늘려 나가야 하겠으며 사업은 예산성립시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여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결　　론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4년째를 맞아 결산검사 부분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되고 세밀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입·세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그러나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부과징수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분야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고, 제도적 모순점은 상부건의 등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잘못된 행정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 목 록 〉

1. 미집행 예산 과다발생
2. 상습적인 예산삭감으로 회계질서 문란
3. 예산초과 집행
4.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사장
5. 피복비 부당집행
6. 세출예산 변칙지출
7. 예산 목적외 부당집행
8.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부당
9. 공사분할 발주
10. 포괄사업비 집행부적
11. 예산지출과목 부당
12. 공사설계 과다변경
13. 계속비 사용 미이행
14. 사업계획 미흡으로 세출예산 이월
15. 사고이월비 과다 발생
16. 시설부대비 집행부당
17. 공공요금 납기일 미준수
18.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 미흡
19. 실적없는 경상경비 지출낭비
20. 특별회계 예산편성 소홀
21. 예비비 확보 부적정
22.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소홀

主要 決議・建議文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달성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2

달 성 군 의 회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국세중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여 재정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세제상 국세 보통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을 목적세로 전환을 검토, 계획함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것임으로 목적세 신설을 반대한다.

둘째, 빈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앞으로 더 늘려야함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나,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줄이게 되는 경제기획원의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계획은 지방자치제실시를 저해하므로 지방재정의 보진없는 목적세 신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고려하지 않고 고속도, 국도 등 도로사업과 도시 철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으로 보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1993. 5. 19

달 성 군 의 회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은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93년도 추곡수매 결정을 즉각 재고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매가 13.9%이상, 수매량 1,100만석 이상 수매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3. 11. 25

달 성 군 의 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거부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건설부의 도시계획고시에 의하여 대구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달성군 관할구역내에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는 달성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은 지극히 부당하며, 관리는 개발제한 구역을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달성군이 하되 관리비는 수혜자 경비 부담원칙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는 대구시가 부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건설부가 행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 및 국가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사권으로서 '94년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 · 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1993. 12. 20

달 성 군 의 회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 오염에 관한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환경처는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하여 환경감시 중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제2의 페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보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둘째, 대구직할시는 폐수관리 소홀로 금호강과 대명천, 진천천으로 고농도 악성폐수를 다량방류, 낙동강으로 흘려보냄으로 하류에 위치한 달성공단상수도원에 '94. 1. 3부터 1. 5사이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사고를 유발시켜 이 지역주민 건강을 크게 해쳤음을 인정하고, 즉각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본의회에서 대명천 · 진천천 · 달서천 등 금호강에 유입되는 각종 하수 실태를 조사한 바 성분분석 결과를 차치하고 육안에 의한 식별만으로도 극심한 오염상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에 의한 낙동강 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달성공단상수도의 항구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를 원수오염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달성공단지역에 조기확대공급 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경상북도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구시 상수도의 달성군 공급을 대구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및 교섭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조기공급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상수도 조기공급에 필요한 급수시설비 부족을 도비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994. 1. 12

달 성 군 의 회

경상북도 · 대구직할시 행정구역통합 촉구 건의문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불필요하게 분리되었던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를 1981년 7월 1일 이전 상태로 행정구역 통합함으로써 현재의 두 광역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발전과 시역확장 등 현안문제를 상호해결하여 궁극적인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며, 시역확장이라는 대구직할시 일방만을 위한 경상북도 일부지역의 선별적 대구직할시 부분 편입은, 일부편입된 경상북도 해당 시군에게 막대한 재정적 결손과 함께 시군세의 위축을 가져올것이므로 자치단체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건의한다.

1994. 5. 24

달 성 군 의 회

달성제2지방 공단조성 촉구 결의문

지방공단조성을 위하여 결정된 논공도시계획 구역에 달성 제2지방공단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공단조성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만큼, 국토의 개발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공단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에 있을 경우, 염색공단이 아닌 일반공단으로 전환하여 조기에 공단지정 및 조성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1994. 5. 24

달 성 군 의 회

학군제 폐지요구 결의문

현행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군제 실시는 국민의 자유로운 입학의 제한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군제 실시목적인 교육평준화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 학군간의 교육수준격차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들의 국민평등권을 저해하고 있어, 학군제 실시는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받을 권리와 거주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법정신에 어긋나고, 학군선택을 위한 불필요한 거주 이전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장전출과 이농 및 농촌인구 도시집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현행 중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학군제 실시를 폐지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1994. 5. 28

달 성 군 의 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개선대책 촉구 건의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가 행하는 도시계획"이며, 국가가 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제62조에 의거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가 행한 도시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하면서, 관리경비일절을 국고가 부담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정"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으며, 개발제한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해당 도시가 수혜자 경비부담원칙에 의거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이치이다.

이에따라 본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부담실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첫째,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등 부처간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부담없이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경제기획원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시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94년도 하반기분부터 예산 조치바라며

셋째,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산하 시·군이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모순을 직시하고 대구직할시 및 건설부·내무부 등과 다각 교섭하여, 개발제한의 피해에 추가하여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피해가 없도록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넷째, 대구직할시는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를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성실한 개선 노력 의지를 보일것을 요구한다.

1994. 7. 6

달 성 군 의 회

개발부담금 제도개선 건의문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있음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하면, 부과대상사업에 있어 대상 면적을 규정할 뿐아니라, 동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농촌지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해당됨으로 개발이익의 정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미도시화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유휴농지 활용의 불가로 말미암아 이농현상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본 제도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 · 건의한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을 규정면적 초과분부터 적용하여 개발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둘째, 본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군형태의 부과대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셋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 동법 제5조제1항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1995. 2. 27

달 성 군 의 회

지하철노선 연장 및 상수도확대공급 촉구 건의문

달성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함은 물론, 달성군 전역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해당 주민에게 고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최남단에 위치한 구지면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하철 1호선의 노선연장과 대구시 상수도를 조속히 공급토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82만평의 구지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향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구지면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철1호선 노선을 현행 현풍면에서 구지면까지 연장하고,

둘째, 탁도와 오염도가 심한 농업용수를 여과시켜 구지면민의 식수로 공급함으로써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조속한 상수도 여과시설의 보완대책 마련과 대구시 상수도를 구지면까지 확대 공급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1995. 4. 15

달 성 군 의 회

主要議政活動　日誌

주요의정활동일지

[1991. 4. 15 ~ 1995. 6. 30]

1991. 4. 15	□ **의장 · 부의장 선출(제1회임시회)** 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 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에 석진후씨, 부의장에 고용덕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4. 16	□ **군정보고청취** 부군수로부터 실과소장의 소개를 받고 실과소별 업무를 보고 받았다
4. 29	□ **간담회 개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하는 등,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매주 금요일에 의원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5. 3	□ **세미나 참석** 대구은행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세미나에 참석,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5. 6	□ **면 방 문** 5 ·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가창면, 다사면, 하빈면, 화원면, 옥포면, 논공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순으로 방문하여 면 현황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5. 29	□ **제2회 임시회 개최** 제2회 군의회 임시회를 5.29~30(2일간)열어 중기재정 계획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의(25건)를 하고, 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과 논공도시계획안 의견을 채택하였다
6. 25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 경주코오롱호텔에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34명)이 모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을 합의하였다
7. 6	□ **국민학교 도서전달** 의회는 아동도서 10,000권을 도서출판 예림당(대표 나춘호 : 한국청소년 아동출판 협의회장)으로 부터 기증받아 가창 정대분교 등 군내 10개 국민학교에 전달하였다
7. 8	□ **결 산 검 사** '90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용덕 부의장, 정우석 달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재명 대호산업 감사를 선임하여 7.8~8.2까지 결산검사를 하였다
7. 19	□ **제3회 임시회 개회** 제3회 임시회를 7.19~23(5일간)까지 개회하여 군정질문 11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군의원 2명(송태환의원, 이경식의원)을 선임하고, 교육위원 후보자 2명(서창수씨, 하구룡씨)을 선출하였다
8. 9	□ **6.25 참전용사 동지회 하계수련대회 참석**

주요의정활동일지

【 1991. 4. 15 ~ 1995. 6. 30 】

1991. 4. 15	□ **의장 · 부의장 선출(제1회임시회)** 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 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에 석진후씨, 부의장에 고용덕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4. 16	□ **군정보고청취** 부군수로부터 실과소장의 소개를 받고 실과소별 업무를 보고 받았다
4. 29	□ **간담회 개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하는 등,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매주 금요일에 의원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5. 3	□ **세미나 참석** 대구은행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세미나에 참석,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5. 6	□ **면 방 문** 5 ·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가창면, 다사면, 하빈면, 화원면, 옥포면, 논공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순으로 방문하여 면 현황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5. 29	□ **제2회 임시회 개최** 제2회 군의회 임시회를 5.29~30(2일간)열어 중기재정 계획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의(25건)를 하고, 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과 논공도시계획안 의견을 채택하였다
6. 25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 경주코오롱호텔에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34명)이 모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을 합의하였다
7. 6	□ **국민학교 도서전달** 의회는 아동도서 10,000권을 도서출판 예림당(대표 나춘호 : 한국청소년 아동출판 협의회장)으로 부터 기증받아 가창 정대분교 등 군내 10개 국민학교에 전달하였다
7. 8	□ **결 산 검 사** '90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용덕 부의장, 정우석 달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재명 대호산업 감사를 선임하여 7.8~8.2까지 결산검사를 하였다
7. 19	□ **제3회 임시회 개회** 제3회 임시회를 7.19~23(5일간)까지 개회하여 군정질문 11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군의원 2명(송태환의원, 이경식의원)을 선임하고, 교육위원 후보자 2명(서창수씨, 하구룡씨)을 선출하였다
8. 9	□ **6.25 참전용사 동지회 하계수련대회 참석**

	6.25참전용사 달성군동지회의 정기총회 및 하계수련대회에서 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8. 13	□ **농민후계자대회 참석** 제2회 달성군 농민후계자 대회에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8. 23	□ **그린벨트완화 추진간담회 참석** 달성군 그린벨트완화추진 간담회에 군의원이 초청되어 이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피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 7	□ **의회청사준공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의회청사(연면적 163.34평, 2층)준공을 계기로 군내 각계각층 인사 100여명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보고회와 다과회를 가졌다
10. 2	□ **제4회 임시회 개회** 제4회 임시회를 10.2~8까지 열어 35건의 군정질문을 하고, 조례안 5건을 의결하였으며, 대구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다
10. 11	□ **의원비교시찰 견학** 한전달성지점 초청으로 울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고 원자력발전의 중요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10. 21	□ **경찰의날 행사 참석** 경찰의날을 맞아 달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치안 관계관을 격려하였다
10. 25	□ **군민체육대회 참석** 현풍중고등학교에서 있은 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은 출신지역 읍면선수단과 하루를 보냈다
10. 29	□ **제5회 임시회 개회** 10.29 ~ 11.5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의 추경요구액 84억3천만원 중 경상경비 2억8천만원을 삭감한 81억5천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의결하였다
11. 9	□ **불조심대회 참석** 화원동산에서 있은 '91불조심대회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 270명과 주민화합의 자리를 함께 하였다
11. 15	□ **의원연수활동** 군의원 10명 전원이 구미노동청소년회관에서 국회사무처 서우선 서기관을 초청하여 개최된 의원연수에 참가하였다
11. 18	□ **제6회 임시회 개회** 11.18 ~ 22까지 개회하여 달성 제2지방공단지정에 관하여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고, 현지출장하여 주민의견도 수렴하였다

12. 2	□ **'91년 정기회 개회** 12.12 ~ 30까지 '91년 정기회를 개회하여, '90년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예산안의결,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그리고 조례안 14건과 청원1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12. 27	□ **연말위문** 가창면소재 신일양로원을 방문하여 무의탁 불우노인들을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1992. 1. 4	□ **신년교례회 참석** 달성군신년교례회에 전의원이 참석, 지역지도층 인사와 신년하례를 가졌다
1. 22	□ **제8회 임시회 개회** 1.22 ~ 24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였으며, 화원읍 설치조례를 비롯, 조례안 3건을 의결하였다
1. 31	□ **불우시설 방문** 신일양로원을 방문하여 구정을 앞두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2. 15	□ **도지사와의 대화** 초두순시차 군을 방문한 이판석 경북도지사와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가졌다

2. 21	□ **제9회 임시회 개회** 2.21 ~ 22양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하고, '91년도 정기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듣고 질의했다
2. 25	□ **지체장애자협의회 창립대회**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있은 한국지체장애자협의회 달성군지회 창립대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자의 사회적 지원 보장에 관심을 보였다
3. 2	□ **화원읍사무소 개청식 참석** '92.3.1자로 화원이 읍으로 승격되어 개청식을 가졌으며,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3. 3	□ **산불조심 캠페인** 유가사주차장에서 범군민 산불조심 캠페인에 참가하였다
3. 28	□ **상공회의소 창립 기념행사 참석** 창립3주년을 맞은 달성상공회의소 창립기념행사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상공인과 대화를 가졌다. 이날 현풍 성하에서 고령 개진을 잇는 박석진교 기공식에도 참가하였다
3. 30	□ **도종합개발계획수립 의견수렴간담회 참석**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 군의원 2명이 참석하여 의견교환하였다

4. 13	□ **제10회 임시회 개회** 4. 13 하루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장협의없이 임명된 의회 전문위원 임명철회 권고결의안을 의결하였다
4. 15	□ **의회개원1주년기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개회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군내 기관단체장, 지도층인사 내빈 150여명을 초청하여 각의원별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고, 다과회를 가졌다
4. 15	□ **제11회 임시회 개최** 4. 15~16양일간 개원기념 행사와 조례안 6건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도시계획안 3건에 대하여는 의견채택 유보하였다
4. 24	□ **의장 청와대초청 오찬 참석** 전국 시군의회 의장초청 청와대오찬에 석진후의장이 참석하였다
4. 28	□ **달성 J. C회관 기공식 참석** 논공면 금포2리 달성J. C회관 기공식에 의원 4명이 참석하였다
4. 30	□ **자율방범대 발대식 참석** 달성경찰서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부의장 외 3명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경을 위문하였다
5. 9	□ **담양군민의날 행사 참석** 달성군과 자매결연군인 전남 담양군의 군민의날 행사에 부의장과 4명의원이 참석하여 담양군의회의원과 대화를 가졌다

5. 12	□ **구마고속도로확장 현지확인** 대구 및 현풍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현지 확인차 구마고속도로 확장 실황과 지하통로 실태를 확인하였다. (도로공사 현장소장 개황설명 및 안내)
5. 13	□ **다사 서제도로확장 현지확인** 대구도시계획변경안에 의한 서제도로확장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5. 15	□ **군민경로잔치 참석, 격려**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군민경로잔치에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5. 19	□ **제12회 임시회 개회** 5.19 당일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견채택 유보한 도시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고, 조례안도 1건 의결하였다
5. 25	□ **성주군민의날 전야행사 참여** 인근 군인 성주군의 군민의 날 전야행사에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군 의원과 정보교환 및 지방의회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27	□ **제13회 임시회 개회** 5.27 ~ 29까지 3일간 개회하여 현재까지의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하였다(19개 실과소)

6. 3	□ **도민체육대회 참석** 경주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달성군 선수단 격려를 위하여 의장 외 4명 의원이 참석하였다
6. 6	□ **현충일행사 참석** 현충일을 맞아 현풍면 소재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에 헌화, 참배하였다
6. 25	□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달성군민대회 참석** 6.25자유수호 42주년을 맞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군민 결의대회에서 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전몰군경 유가족을 위로하였다(군민체육관)
7. 4	□ **홍복근 군수 취임인사 참석** 제27대 달성군수에 취임한 홍복근 군수 취임인사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7. 5	□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서울에서 있은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의원 3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7. 8	□ **도의회 개원1주년 기념세미나 참석** 광역자치단체 도의회의 개원1주년기념 세미나에 의장, 부의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7. 9	□ **제14회 임시회 개회** 7.19 ~ 7.14까지 6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의 추경요구액 43억8백만원중 2억2천2백만원을 삭감한 40억8천6백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의결하였으며, '92~'96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도 보고받았다. 그외 쇠고기수입쿼타제동결 청원과 일반안건 2건도 의결하였다
7. 9	□ **산불진화 주민, 공무원 격려** 논공 금포1리 뒷산 산불진화에 동원된 주민과 공무원에게 빵과 우유 및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7. 28	□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격려** 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합천 용문정)에 군의원이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하였다
8. 26	□ **지방의회개원1주년 평가회 및 의원연수참석** 8.26 ~ 27 이틀간 서울중앙정치교육원에서 있은 지방의회 개원 1주년 평가회 및 의원연수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연수를 받았다
9. 29	□ **우리농산물애용 경북고향장터 "달성군의날"참석**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 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있은 고향장터 달성군의날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군의 우수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에 참가하였다
10. 1	□ **국군의날 행사 참석** 건국 44주년 기념행사에 의원 8명이 참석하여 군장병을 위문하였다(798관리대대)

10. 2	□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화원동산에서 개최된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농민후계자 등 농촌지도자를 격려하였다
10. 5	□ **자연보호헌장선포 14주년 기념행사 참석** 옥포용연사에서 도지사 및 기관단체장 등 2천여명이 참석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가을철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였다
10. 7	□ **'9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원 3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10.7 ~ 26(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10. 10	□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제7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대구시민운동장)에 군의원이 초청되어 참석하였다
10. 17	□ **달성충효제 참석** 현풍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달성충효제에 각의원은 출신지역 선수, 임원을 찾아 격려하였다
10. 18	□ **재경향우회 임시총회 참석**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재경향우회 임시총회겸 체육대회에 군의원 7명이 참석하였다
11. 2	□ **제17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11.2 ~ 11.6(5일간)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의 추경요구액 12억2천4백만원 중 4천6백

	만원을 삭감하여 11억7천8백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안 1건, 청원 1건, 조례안 2건도 의결하였다
11. 3	□ **대구도시계획안 현지확인** 대구 신천고속도로의 가창면 대한중석 앞까지 연장을 내용으로하는 대구도시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11. 3	□ **하빈면 청사준공식 참석** 하빈면 청사가 새로이 준공되어 의원일동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11. 11	□ **의원비교시찰** 11.11 ~ 11.13(3일간) 춘천, 속초시 의회를 비교시찰 하였다
11. 19	□ **제18회 임시회 개회** 11.19~11.21(3일간) 개회하여 사업비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장 58개소를 현지확인 실시하였다(미진사업 독려 16건, 부실사업시정촉구 2건)
11. 26	□ **제19회 정기회 개회** 11.26~12.24(30일간) 정기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91년도 결산, '93년도 본예산, '92년도 3회추경, 조례안 3건, 결의안, 동의안, 일반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11. 26	□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정기회 기간중 11.25 ~ 12.15까지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구성 운영되어 12.9 ~ 12.11, 3일간 감사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6건, 모두 1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다
1993. 1. 1	□ **충혼탑 참배** 계유년 새해아침을 맞아 충혼탑에 헌화, 참배하였다
1. 4	□ **신년교례회 참석** 군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지도층인사와 신년하례를 가졌다
1. 13	□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참석** 대구경북 개발연구원 주관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공청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여 자료발표 및 토론하였다
1. 13	□ **겨울철 영농교육 강연** 옥포면 회의실과 금계국교에서 있은 영농교육장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여 강연을 하였다
1. 20	□ **불우이웃 위문** 관내 경로당, 양로원, 소년소녀가장을 설날을 기하여 각 의원별로 방문 위로하였다
1. 25	□ **의원회의개최** 지금까지 매월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온 의원 간담회를 '93년부터 "의원회의"로 회의명칭을 바꾸어 임시회, 정기회 회의운영사항 협의와 의안시 사전검토 및 주요군정

	에 대한 집행부와 업무조정 등 상임위원회기능을 대신하기로 했다
1. 28	□ **제20회 임시회개회** 1.8 ~ 30까지 3일간 개회하여 실과소별 '93년도 군정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였다
2. 16	□ **제21회 임시회 개회** 2.16 ~ 18까지 3일간 임시회 회기중 화원읍을 제외한 8개면을 방문하여 지도층인사 접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건의사항 70건)
2. 23	□ **의원연수** 성주군에서 있은 인근 4개군의회 의원 연수에서 김진복 교수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2. 25	□ **대통령취임행사 참석** 제14대 대통령취임행사(여의도광장)에 전의원이 참석하였다
3. 6	□ **제22회 임시회 개회** 제21회 임시회 읍면방문때 마치지 못한 화원읍을 방문하여 초청인사 접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건의사항 24건)
3. 20	□ **화원읍승격 1주년 경축행사 참석** 화원읍승격 1주년 경축행사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행사후 용연사에서 있은 자연보호 범군민대회에 참석하여 자연정화활동을 하였다

3. 27	□ **군정보고대회 및 청사준공식 참석**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기하여 '93년도 군정보고대회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어 전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군정보고대회 후에는 현풍노인복지회관 준공식에도 참석하였다
4. 1	□ **의장, 부의장 선거(제23회 임시회)** 제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4. 1)에서 제2기 의장, 부의장선거가 실시되어 의장에 석진후 전임 의장이 연임되었고 부의장도 고용덕의원이 연임되었다
4. 7	□ **도지사와 대화** 신임 이의근 경상북도지사가 초두 순시차 군을 방문한뒤 군의원과 지역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4. 8	□ **달성J.C창립기념 및 회관준공식 참석** 달성J.C 창립 5주년을 맞아 준공한 회관(논공면 금포리 소재)준공식에 의장 외 4명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4. 12	□ **의원회의** 4. 15개최될 개원 2주년 기념행사계획을 협의하고 도민체전 참가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다
4. 15	□ **개원2주년기념 의정보고회 개최**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지도층인사 130여명을 초청하여 개원이후 2년간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하고, 94페이지 분

	량의 의정보고서와 의회소식지도 배부하였다
4. 23	□ **의원회의** 학산건설 부도에 따른 현풍학산아파트 임대입주자 피해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제출된 4가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4. 23	□ **의원회의** 공람 공고중인 제6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의원간 정보교환하였다
5. 10	□ **담양군민의날 참석** 달성군과 자매결연군인 전남 담양군의 군민의날 행사에 의원 5명이 참석하였다
5. 12	□ **도민체전 입장식 참석** 점촌시에서 있은 제31회 도민체전 입장식에 의장 외 6명이 참석하여 선수와 임원을 격려하였다
5. 17	□ **제24회 임시회 개회**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1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5. 26	□ **도청이전 추진간담회 참석**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은 남부지역 7개 시군 도청이전 추진간담회에 군의원대표가 참석, 의견발표하였다

5. 27	□ **의원회의** 새정부 출범이후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6개부문의 당면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였다
6. 6	□ **현충일행사 참석** 제38회 현충일을 맞아 군의원 전원이 충혼탑에 헌화하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6. 8	□ **충효경로잔치 참석** 관내 65세이상 노인 900여명을 초청하여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충효경로잔치에 의원 8명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접대하였다
6. 18	□ **의원회의** 군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중간보고를 받고 집단취락지로 조사될 경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민기대가 있는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6. 25	□ **을지연습참관 및 위문** 6.21 ~ 6.26까지 실시되는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음료 등을 전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6. 30	□ **면장퇴임식 참석** 6.30일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가창, 다사, 옥포, 현풍면장 퇴임식에 각지역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 및 기념품 전달하였다

7. 2	□ **제25회 임시회 개회** 7.2 ~ 7.4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2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달성군 리장정수조례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7. 20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 7월정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 개정을 건의하고 의견교환하였다
7. 20	□ **신경제 5개년계획 설명회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군내기관단체장, 기업인, 주민대표 등 250여명 초청하여 개최된 신경제 5개년계획 설명회에 군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신정부의 경제정책 설명을 들었다
7. 23	□ **달성농지개량조합 청사신축 축하** 현 농지개량조합 위치에 새로이 신축한 청사(지하1, 지상5, 연건평 901평) 준공식에 전체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농지개량조합 대의원들과 농정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 6	□ **의원회의** 오랜 장마로 치수사업에 소홀함이 없는지 하천관련공사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26회 임시회 회기와 결산검사위원선임 관계를 협의하였다
8. 10	□ **제26회 임시회 개회** 8월 10일과 11일 이틀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공직

	자윤리위원회 조례를 비롯,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8. 13	□ **토지초과이득세 설명회 참석** 남대구세무서에서 있은 토초세설명회에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이 참석하였다
	□ **의원하계연수회 참석** 8.18~21까지 4일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지방의원하계연수회에 전의원이 참석, 수료하였다
8. 31	□ **신농정발진대회 참석** 경주에서 있은 농수산부 주관 신농정발진대회에 이철웅 의원이 군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9. 7	□ **제27회 임시회 개회** 9.7~1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질의하였으며, 8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도 실시하였다
9. 23	□ **대전엑스포 경북의날 참석** 군단위 기관단체장과 방위협의회위원과 함께 대전엑스포 경북의날에 전의원이 참석하였다
9. 24	□ **건군 제45주년 기념행사 참석** 798관리대대에서 있은 건군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이수환, 송태환 의원이 참석하여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10. 4	□ **충혼탑 참배** 보훈3단체 회원과 함께 전의원이 충혼탑을 참배하였다

10. 8	□ **군민체육대회 참석** 제10회 군민체육대회(장소 : 달성중학교)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선수 임원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하루를 보냈다
10. 8	□ **의원 재산 공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등록된 의원 재산이 경상북도에 공개되었다
10. 11	□ **결산검사 실시** '92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이철웅 의원, 송태환 의원, 이수환 의원에 의하여 10. 30까지 20일간 실시되었다
10. 21	□ **제48회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달성경찰서에서 있은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의무경찰과 방범대원 및 지·파출소 직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10. 24	□ **제3회 한국노총 달성지부 체육대회 참석** 현풍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 의장 외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10. 25	□ **제28회 임시회 개회** 10.25 ~ 28까지 4일간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와 19건의 군정질문을 하였다

10. 29	□ **농어촌 개발계획공청회 참석** 2000년대 선진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94 ~ '98년까지 5년간의 군단위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토록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새롭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11. 16	□ **제29회 임시회 개회** 11.16 ~ 19까지 4일간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11. 17	□ **통일안보정세보고회 참석** 경주 보문단지(육부촌) 경주국제회의장에서 있은 '93년도 통일안보정세보고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졌다
11. 20	□ **공무원 등반대회 참여** 산불예방과 국토대청결운동을 겸해서 실시된 공무원 등반대회에 전의원이 참여하여 하루를 같이하고 사기앙양 하였다(용연사 약수터 뒷산)
11. 25	□ **제30회 정기회 개회** 개원후 세번째 갖는 제30회 정기회가 11.25 ~ 12.24까지 한달간의 회기로 개회되어,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결의안, 조례안, 일반안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12. 6 ~ 8	□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구성되어, 12. 6 ~ 12. 8까지 3일간 감사로 시정 요구 1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다
12. 10	□ **달성로타리클럽 창립총회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은 달성로타리클럽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창립을 축하하였다 초대 회장에 하영태씨가 선출되었다
12. 24	□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93년도 정기회 폐회식에서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도층인사 내빈을 초청하여 '93년도 1년간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1994. 1. 1	□ **충혼탑 참배** 갑술년 새해아침을 맞아 의원일동이 호국영령이 모셔진 충혼탑에 헌화, 참배하였다
1. 3	□ **군수 이 · 취임식 참석** 전임 홍복근 군수의 이임과 신임 최윤섭 달성군수의 취임에 의원이 참석, 환송 및 접견하였다
1. 4	□ **신년 인사회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관단체장 및 지역 지도층인사와 신년하례를 가졌으며, 이어 현풍우회도로 개통식에도 참석, 축하하였다

1. 10	□ **제31회 임시회 개회(긴급)**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 유입으로 발생된 상수도 사고 진상조사를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였다
1. 13	□ **경상북도지사 접견** 초두 순시차 본군을 방문한 우명규 경북지사를 접견하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1. 19	□ **할머니노인대학 의장특강** 관내 노인 600여명이 참석한 노인대학에서 석진후 의장이 "달성군을 알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1. 24	□ **낙동강 수질오염감시단 발대식 참석** 논공면 위천리 고령교 밑, 달성·고령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낙동강 수질오염감시단 발대식에 의장 외 3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1. 27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경산군에서 있은 올해 첫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 28	□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 '93. 12. 31을 기준으로 한 의원재산등록 변동사항이 신고되었다

2. 18	□ **의원회의** 제32회 임시회 개회일정과 읍면방문계획을 협의하고 낙동강 수질감시단을 방문 격려하였다
2. 22	□ **문화원 정기총회참석** 현풍면 회의실에서 있은 문화원 정기총회에 의장·부의장이 참석하여 향토문화진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23	□ **제32회 임시회 개회** 2.23 ~ 2.26까지 4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실과소별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군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3. 2	□ **읍면방문(제33회 임시회)** 3.2 ~ 3.4까지 3일간 9개 읍면을 방문하여 지역지도층 인사와 대화하고 170건의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3. 16	□ **군정보고회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은 '94군정보고회에 전 의원이참석하여 작년도 군정추진 성과와 금년도 군정계획을 보고 받았다
3. 17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여 새로이 재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12	□ **제34회 임시회 개회** 4.12 ~ 16까지 5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논공 도시계획안 등을 처리하였다
4. 15	□ **개원 3주년 기념식** 의회 개원3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정 보고회로 개원기념식을 대신하고, 206페이지 분량의 "의정 보고"를 발간 배포하였다
4. 19	□ **도시 농촌간 자매결연식 참석**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도농간 자매결연식에 참석하여, 상호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당부하였다
4. 22	□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식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은 이날 행사에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4. 30	□ **우리농산물 큰잔치 참석** 달성군 J·C에서 주관한 우리 농산물 큰잔치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운동에 동참하였다
5. 8	□ **범군민 자전거타기 대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있은 이날 대회에 의장 등 6명의 의원이 기관장, 일반인, 학생 등 500명과 함께 자전거타기 대회에 참여하였다

5. 10	□ **담양군민의날 참석** 본군과 자매결연군인 전남 담양군민의 날에 의원 3명이 참석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5. 11	□ **제32회 도민체전 참석** 영주시 외 4개지역에서 분산 개최된 도민체전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선수, 임원을 격려하고 이틀간의 경기를 관전하였다
5. 14	□ **농산물직판장(달성군의날)참석** 서울 농산물직판장 「달성군의날」에 전 의원이 상경하여 군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동참하였다
5. 16	□ **기세리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옥포면 기세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의장이 참석하여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 24	□ **제35회임시회 개회** 5.24 ~ 5.28(5일간) 개회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통합 촉구 결의안과 학군제 폐지요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한편 조례안 7건 등을 의결하였다
5. 27	□ **제6회 달성충효경로잔치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관내 65세이상 노인 550여명이 초청된 경로잔치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황혼의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6. 3	□ **의정 간담회**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온 의원회의를 '94년 6월부터 「의정간담회」로 회의명칭을 바꾸어 임시회, 정기회 회의운영사항 협의와 의안의 사전검토 및 주요군정에 대한 집행부와 업무조정 등 상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기로 했다
6. 5	□ **논공마을 유허비 제막식 참석** 석진후 의장은 달성공단내 논공마을 유허비 제막식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잊혀져가는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6. 6	□ **제3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제39회 현충일을 맞아 전 의원이 참석하여 헌화하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6. 14	□ **평통 제6차 경북지역 협의회 참석** 경주 육부촌에서 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차 협의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통일안보 의지를 굳혔다
6. 21	□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군청 회의실에서 있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의원 3명이 참석하여 공공요금(상수도, 오수, 분뇨, 폐수 등)조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다
6. 30	□ **제36회 임시회 개회** 6.30 ~ 7.6(7일간) 개회하여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지난 제30회 정기회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개선대책 촉구건의안을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7. 27	□ **제24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불합리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건의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였다
7. 28	□ **가뭄피해 농민격려** 군의회 의원 전원은 가뭄피해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는 한편, 피해가 심한 논공면 상리, 유가면 본말리 등 가뭄극복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격려하였다
8. 5	□ **평통 월례회 참석** 군의회 의원 전원은 평통 월례회에 참석하여 「이산가족 북한주민 접촉신청 접수처」현판식을 갖고 군민 홍보에 나섰다
8. 10	□ **제2회 달성여성취미클럽 작품전시회 참석** 화원읍민회관에서 있은 달성여성취미클럽 작품전시회에 석진후 의장이 도지사 및 군내 기관단체장과 함께 참석하여 작품을 관람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8. 11	□ '93 회계년도 결산검사 '94. 8. 11부터 20일간 의회소의회실에서 결산검사위원(서칠수, 김수영, 이팔호 의원)으로 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등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8. 18	□ '94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석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도내 시·군선수단을 격려하고 경기를 참관하였다
8. 23	□ '94 을지연습 참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시되는 '94을지연습 훈련에 군의회 의원 모두가 참관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
8. 27	□ 6.25 참전기념비 건립 추진사업비 현판식 참석 석진후 의장은 옥포 농협회의실에서 있은 6.25 참전 기념비 건립추진 사업회 현판식에 참석하여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9. 1	□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거창 가북 용산숲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한편, 석진후 의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새마을 운동을 국민 정신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길 강조하였다

9. 2	□ **제37회 임시회** 9.2 ~ 9.10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조례를 비롯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군정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틀간의 활발한 군정 질문을 펼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9. 3	□ **택지개발 예정지구 현지확인** 화원 본리, 명곡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현지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소유자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다
9. 13	□ **21세기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설명회 참석**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있은 21세기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 설명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였다
9. 16	□ **행정구역개편 간담회 참석** 화원읍 회의실에서 있은 행정구역개편 간담회에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군단위기관단체장, 주민등과 함께 제반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9. 24	□ **행정구역개편 읍면 지역 간담회 개최** 옥포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간담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제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전의원들이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9. 27	□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의회사무과 기구확대 및 직원증원의 건과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건의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점촌시 세재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였다
9. 29	□ **구지 여성대학 특강** 구지농협회의실에서 개강된 제10기 여성대학에서 석진후 의장이 "달성군을 알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지고 달성군의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다
10. 1	□ **달성충효제 참석** 현풍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7회 달성충효제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출신지역 주민들을 찾아 격려하고 특히 석진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충효사상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 5	□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 군내기관단체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유가사계곡 자연정화 활동에 동참하여 자연환경 보호의식을 고취시켰다
10. 6	□ **제46주년 국군의날 민·관 친선행사참석** 관내 798관리대대에서 개최된 제4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
10. 7	□ **주민의견 조사 집계 참관**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우편조사에서 고용덕, 김수영, 이팔호 의원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공정한 집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다
10. 12	□ **제38회 임시회** 10월 12일부터 6일간 제38회 임시회를 열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농업분야, 교통분야, 학구조정, 혐오시설 집중 반대 등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개발과 주민에게 고른 수혜가 가도록 하는 의회의견을 채택하였다
10. 18	□ **논공면 공단출장소 준공식 참석** 공단출장소 준공식에 3명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석진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10. 23	□ **제1회 달성군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참석** 현풍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에 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11. 15	□ **제39회 임시회**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94년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난 20회 임시회에서 의결유보된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11. 22	□ **어머니합창단 연주회 참석**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달성문화원 합창단 연주회에 석진후 의장과 김수영,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마음과 소리가 조화된 건전한 음악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11. 25	□ **제40회 정기회**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40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95년도 예산안, '94년도 제3회 추경안, 조례안, 일반안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12월 6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12. 6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제40회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이팔호)를 구성하여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6건 등 총 30건을 지적하여 집행부를 독려하였다

12. 13	□ **새마을운동추진 평가보고회 참석** 군의회 의원일동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94새마을운동추진 평가보고회에 참석하여 각읍면 지도자를 격려하였으며, 특히 석진후 의장은 축사를 통하여 물질적인 것 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안겨 줄 수 있도록 인정을 베풀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였다
12. 29	□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94년도 정기회 폐회식에서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도층인사 내빈을 초청하여 '94년도 1년간의 원내·원외로 나누어 의정활동 상황을 소상히 군민들에게 보고하였다
1995. 1. 1	□ **충혼탑 참배**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의원이 호국영령이 모셔진 충혼탑에 헌화·참배하였다
1. 3	□ **신임군수 접견** '95년 1월1일자로 취임한 이병무 군수와 접견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1. 4	□ **1995년도 신년 인사회 참석** 논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95년도 신년 인사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지도층인사와 신년인사를 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1. 13	□ **의정간담회 개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1회 임시회 운영계획과 '95상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협의하였다
1. 21	□ **제41회 임시회 개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41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3일간에 걸쳐 9개 읍면방문을 실시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1. 23	□ **읍면방문** 1월 23일부터 3일간 9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읍면장 건의 20건, 주민건의 158건 등 180여건의 건의사항을 상세히 파악하여 이를 모든 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1. 27	□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성주군 가야산 국민호텔에서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석진후 의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3	□ **의정간담회 개최** 군의회는 예비비 집행내역 보고청취와 제42회 임시회 일정협의를 위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2. 8	□ **의정간담회 개최**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한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2. 8	□ **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 달성경찰서 상황실에서 개최된 치안행정 간담회에 의장 외 9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치안행정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2. 23	□ **제42회 임시회 개회** 군의회는 '95. 2. 23 ~ 27까지 5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대구시 편입에 따른 제반 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특히 농촌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2. 25	□ **달성군편입에 따른 대중교통대책보고회 참석** 대구광역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달성군 편입에 따른 대중교통대책 보고회에 이수환,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편입지역의 버스, 택시 운영방법 및 체계와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2. 27	□ **대구광역시 대중교통대책 건의요구** 대구광역시 부시장실에서 대중교통대책 회의를 갖고 달성군 시내버스의 대구시내 주요지점을 경유하여 운행, 대구

	시내버스의 달성군 관내 운행연장 및 증차, 편입지역 요금 조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부의장, 이경식, 이철웅,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였다
3. 2	□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 참석** 석진후 의장 외 9명의 의원은 달성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에 참석하여 군내 기관단체장 및 대구시 기관단체장들과 축하와 환담을 나누었다
3. 2	□ **대구지방경찰청장 달성경찰서 초도순시 접견** 초도 순시차 달성경찰서를 방문한 대구지방경찰청장과의 환담에 석진후 의장 외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치안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3. 10	□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운동 달성군 지회장 이·취임식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고, 지회 임원들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14	□ **대구광역시장 순방접견**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이 달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장 외 9명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리증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3. 17	□ **의정간담회 개최** 군의회 의원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간담회

	를 개최하여 두성주택 부도에 따른 현황설명과 제42회 임시회때 건의한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대책 건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설명들었다
3. 27	□ **제43회 임시회 개회** 군의회는 3월 27일 제4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화원읍 구라리 일부를 달서구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달성군 면적이 기존 429.40㎢에서 427.05㎢로 줄어들게 되었다
3. 28	□ **달성상공회의소 창립 6주년 기념식 참석** 달성상공회의소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하였다 이날 석진후 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경제도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자고 강조하고, 회원업체 대표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22	□ **'95 통일정책추진보고회 참석**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95통일정책 추진보고회에 석진후 의장 외 7명 의원이 참석하여 경북대 한점수 교수로부터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역할에 대하여 특강을 들었다
4. 26	□ **한·영 지방자치제도 강연회 참석**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영 지방자

	치제도 강연회에 서칠수, 이팔호 의원이 참석하여 영국 버밍대학교 ALAN MUREI 교수로부터 양국간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4. 28	□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사상자 위문** 대구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위문을 위해 석진후 의장은 카톨릭 병원과 보강병원을 방문하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였다
5. 9	□ **평통 상임위원 연석회의 참석** 석진후 의장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평통상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통일안보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5. 12	□ **의정간담회 개최** 군의회는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실에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두성한빛아파트 부도에 따른 추진현황설명과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기타 조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5. 29	□ **제45회 임시회** 달성군의회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45

	회 임시회를 열어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이 달서구로 변경됨에 따라 달성군 리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6. 6	□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제40회 현충일을 맞아 의장 외 전의원은 현풍 충혼탑에서 군단위 기관단체장 및 보훈유가족과 함께 나라를 지키다 의롭게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6. 30	□ **제46회 임시회** 제1대 달성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내 기관단체장, 지역 지도층인사와 내빈들을 초청하여 개원 이후 4년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원내·원외로 나누어 상세히 보고하고 폐원하였다